

Q&A로 알아보는
저작권
상담사례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Q&A로 알아보는

저작권 상담사례

저작권 매뉴얼 08

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 22
(2016. 3. 22.)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01	저작물의 창작성	28
02	아이디어와 표현	29
03	드라마 속 유행어	31
04	쪽지글 등의 단문	32
05	제품사진의 저작물성	34
06	음란물	36
07	SI가 작성한 저작물	38
08	데이터베이스	40
09	올림픽 관련 콘텐츠	42
10	코스프레 (코스튬 플레이 Costume Play)	43
1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작성한 자료	45

저작자와 저작권의 귀속

01	무방식주의와 © 표시의 효력	50
02	공동작업 작품의 저작권	52
03	웹툰의 스토리작가와 만화가	54
04	후발적 공동저작권	56
05	업무상 작성된 저작물	58
06	위탁계약으로 작성된 저작물	60
07	우리 회사에 대한 뉴스보도자료	62
08	제품 및 장소협찬 제품으로 만들어진 방송영상물	64

저작인격권

01	공표의 의미와 그 법적 효력	68
02	시험문제의 복원과 공표권	70
03	저작물 유형에 따른 동일성유지권 침해여부 판단방법	72
04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74

저작권재산권의 제한

01	정치인들의 연설이나 토론 영상 공유	78
02	저작물의 인용	80
0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법 제29조 제1항)	82
04	교내 장기자료에서의 노래와 춤	83
05	상업용 음반의 이용(법 제29조 제2항)	85
06	대북 방송을 위한 공연	88
07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영화상영	90
08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93
09	개인적 이용을 위해 책을 스캔(북 스캔)한 후 재판매 하는 경우	95
10	개방된 장소에 향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의 이용	97
11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이용	98
12	저작물의 공정이용	101
13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패러디	103

도서관과 저작권

01	도서관에서의 개인 스캐너 이용	108
02	도서관 DVD 관외대출	109
03	도서관 소장 자료의 디지털 복제	111
04	도서관 내에서 자동 복사기기를 이용한 복제	113

교육목적 이용과 저작권

01	학교 교육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116
02	수업목적 보상금 지급과 학교 교육목적에의 이용	119
03	수업지원 교육기관의 범위	122
04	기출문제의 이용	124

저작권의 보호기간

01	오래된 영화의 이용과 저작권 보호기간	128
02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이용	130
03	생일축하노래(Happy Birthday To You)	131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양도

01	저작물의 이용허락 계약	136
02	추후 저작권료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한 후 이용	138
03	공모전과 저작권의 양도	139
04	CCL표시와 저작물의 이용	141

출판과 저작권

01	사망한 저작자의 권리	146
02	출판권 계약	148
03	배타적발행권	150

저작인접권

01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특례	154
02	영상저작물 출연자의 권리	155

프로그램과 저작권

01	무료폰트	160
02	프로그램 번들로 제공되는 폰트	162
03	용역개발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발주처의 소스코드 요구	163
04	중고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프로그램	165
05	정품 프로그램의 시리얼 번호를 온라인 카페에 게시	167
06	프로그램 설치 파일의 복제	169
07	프로그램코드역분석	170

인터넷과 저작권

01	웹하드와 P2P	174
02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의 이용	176
03	인터넷상의 사진이미지 이용	179
04	불펌과 저작권 침해	181
05	링크와 저작권	183
06	UCC 제작 시 음원 이용과 저작권의 문제	185
07	유튜브 동영상의 이용	187
08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189

저작권 등록

01	저작권 등록의 효과	194
02	저작권 등록의 종류	196
03	권리등록과 권리변동등록의 차이	198
04	저작권재산권 양도등록의 효력	200

저작권 침해와 구제

01	저작권 침해의 구제 방안	204
02	저작물의 무단이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206
03	저작권 침해와 친고죄	208
0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의 작성의무	210
05	표절과 저작권 침해	212
06	동일한 소재의 두 드라마	214
07	유명 캐릭터의 나노 블록 상품화	216
08	방송드라마나 영화에서의 소품	218
09	게임저작권 침해	221
10	‘Be The Reds!’ 의 글자도안	224
11	병행수입과 저작권	226
12	공개된 특허공보 내용의 제3자 이용	228
13	공익목적으로 비석에 새긴 시(詩)	229
14	해외기사를 이용한 교재 제작	230
15	국외에서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의 준거법	232

퍼블리시티권

01	광고에 이용하는 유행어	236
02	드라마 캐릭터를 이용한 광고	238
03	인물사진의 홍보목적 이용	240

부록

I.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244
II.	폰트 저작권 바로 알기	250
III.	상업용 음반 바로 알기	256
IV.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 안내('18.8.23. 시행)	266



○ 저작권 매뉴얼

저작권 매뉴얼

◆ 지식재산권과 저작권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며, 문학, 학술 또는 예술적 저작물로 대표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과 산업 및 경제 활동과 관련된 창작물이나 창작방법을 인정해주는 산업재산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 저작권접권
- **산업재산권** |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 기타 지식재산권

◆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저작권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제1조).

◆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로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성됨.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고,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임.

◆ 저작재산권

종류	저작재산권(제16~제22조) 내용
복제권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권리
공연권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
공중송신권	저작물 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 또는 이용에 제공할 권리
	방송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
전송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 포함

	디지털 음성송신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전송제외)
전시권	미술·사진·건축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	
배포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대여·양도하는 권리	
대여권	상업용 음반이나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	
2차적저작물 작성권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 제작 등의 방법에 의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는 권리	

◆ 저작인격권

종류	저작인격권(제11조~제13조) 내용
공표권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표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
성명표시권	저작물 등에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제목·형식 또는 내용에 대한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데 자본 투자와 창의적인 기여를 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이며,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가 이에 해당함.

종류	저작인접권(제66조~제85조의2) 내용
실연자	- 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 (생실연)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 상업용음반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상업용음반공연보상청구권
음반제작자	-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 상업용음반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상업용음반공연보상청구권
방송사업자	-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 공연권(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한함)

◆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납본, 기탁, 등록 등)을 요구하지 않음.

◆ 저작권의 보호기간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자동적으로 발생하지만 영구적으로 존속하는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목적의 영리성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구분	보호기간
저작권재산권 (제39조)	- 저작자 생존 및 사후 70년 - 공동저작물의 경우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 사후 70년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제40조)	-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이 기간 내에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 때 소멸함) -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이내에 실명 또는 이명이 밝혀진 경우 및 실명으로 저작권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후 70년 규정 적용
업무상저작물 (제41조)	- 공표한 때로부터 70년 (창작한 때로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 창작한 때부터 70년)
영상저작물 (제42조)	- 공표한 때로부터 70년 (창작한 때로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 창작한 때부터 70년)
계속적간행물 (제43조)	- 책, 호,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 매책, 매호, 매회를 공표 시로 함 -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경우 최종부분을 공표한 때를 공표 시로 함 -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이 최근 공표 시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공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맨 뒤의 부분이 공표된 때를 공표 시로 함
저작인접권 (제86조)	- 실연을 한 때,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년 -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 - 실연을 한 때로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년 -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로부터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로부터 70년
데이터베이스 (제95조)	- 제작을 완료한 때로부터 5년 - 갱신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갱신을 한 때로부터 5년
보호기간의 기산 (제44조)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망 또는 저작물 창작,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함
외국인 저작물 (제3조)	-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상호주의에 따라 제한 가능) -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국내에서도 보호하지 않음

◆ 저작권의 법적 성질

저작권은 배타적인 권리로서 준물권적 성질을 가짐.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저작권자에게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제46조 제1항 및 제2항). 한편 저작권재산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음(제45조 제1항). 다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음(제14조).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제2조 제1호)

◆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제2조 제2호)로서 자연인이나 법인, 단체 그밖의 사용자

◆ 무방식주의

저작권의 발생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저작권 표시 ©, 등록, 납본, 기탁 등 일체의 절차나 형식을 요하지 않음(제10조 제2항). 따라서 저작물이 창작만 되었다면 등록이라는 별도의 특별한 절차 없이도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저작물의 종류

- ① 소설·사·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② 음악저작물
- ③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 ④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⑤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 ⑥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 ⑦ 영상저작물
- ⑧ 지도·도표·설계도·악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⑨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제7조)

- ①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 제1호에서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

◆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법은 저작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제한 범위 안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제23조)
- ▶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제24조)
-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제24조의2)
- ▶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 ▶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
-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 ▶ 도서관에서의 복제 등(제31조)
-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제33조)
- ▶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제33조의2)
-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제34조)
- ▶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 ▶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제35조의2)
-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3)
- ▶ 번역 등에 의한 이용(제36조)
- ▶ 출처의 명시(제37조)
- ▶ 저작재산권자의 제한 규정에 기초한 저작권접권의 제한(제87조)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한(제94조)
- ▶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제101조의3)
- ▶ 프로그램코드역분석(제101조의4)
- ▶ 프로그램의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제101조의5)

◆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

◆ 저작권 등록의 효과

◆ 추정력

저작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와 저작물의 창작연월일과 공표연월일 등을 등록하면 해당 등록사실에 대해 법적인 추정력을 받음(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음). 아울러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대항력

권리 변동의 사실을 등록하면 제3자가 권리변동사실을 다투는 경우에 변동행위 사실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받을 수 있음.

◆ 법정 손해배상 청구 가능

침해 행위가 일어났을 때 원고가 실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저작물마다 1천만 원,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의 경우 5천만 원 이하)을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저작권 등록기관

저작권법 제55조에서 저작권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30조, 동시행령 제68조에 의해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위탁받아 수행함.

◆ 법적 구제

저작권을 침해하면 민사 및 형사 각각 별도의 책임이 발생함.

민사는 재산적/인격적 피해를 보전할 책임을 말하며, 침해예방청구, 침해정지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정지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음. 형사의 경우는 법질서 위반에 따른 사회적 책임으로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등의 형벌이 내려짐.

저작권법 위반자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함. 저작재산권 등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처벌을 받게 됨.

◆ 저작권위탁관리업

권리자로부터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을 신탁받거나 저작권 행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업(저작권신탁관리업, 저작권대리중개업)

구분	권리신탁단체명(13곳)	전화번호	신탁 범위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www.komca.or.kr	02-2660-0400	음악저작자(작곡·작사)의 권리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www.koscap.or.kr	02-333-8766	음악저작자(작곡, 작사)의 권리
	한국음반산업협회 www.riak.or.kr	02-3270-5900	음반제작자의 권리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www.fkmp.kr	02-745-8286	음악실연자(가수, 연주자 등)의 권리
영화	한국영화배급협회 www.mdak.or.kr	02-3452-1001	영상제작자의 권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www.kfpa.net	02-2267-9983	영상제작자의 권리
어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www.korra.kr	02-2608-2800	어문저작물의 복사, 전송의 권리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www.copyrightkorea.or.kr	02-508-0440	어문, 연극, 영상, 미술, 사진 등의 권리

어문	한국방송작가협회 www.ktrwa.or.kr	02-782-1696	방송작가의 권리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www.scenario.or.kr	02-2275-0566	영화시나리오작가의 권리
방송/ 언론	한국방송실연자협회 www.kbpa.co.kr	02-784-7802	방송 실연자(탤런트, 성우 등)의 권리
	한국언론진흥재단 www.kpf.or.kr	02-2004-7114	뉴스 제작자의 권리
공공 저작물	한국문화정보원 www.kcisa.kr	02-3153-2820	공공저작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CCL(Creative Commons License, <http://ckkorea.org>)

CCL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라이선스	이용조건	문자표기
	저작자표시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CC BY
	저작자표시 - 비영리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CC BY-NC
	저작자표시 - 변경금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CC BY-ND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2차적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CC BY-SA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를 밝히면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2차적저작물에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CC BY-NC-SA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CC BY-NC-ND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지 않은 저작물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유형	표시방법	이용허락 범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처 표시 • 상업적 용도로 이용 가능 • 내용변경 등 2차적저작물작성 가능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용도로만 이용 가능 • 내용변경 등 2차적저작물작성 가능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처 표시 • 상업적 용도로 이용 가능 • 내용변경 등 2차적저작물작성 불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용도로만 이용 가능 • 내용변경 등 2차적저작물작성 불가

◆ 예술인 신문고 관련기관

장르	신고처	문의	비고
방송실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www.kbau.co.kr)	02-784-3411	신고처 신고 후 한국예술 복지재단 사실조사 및 소송지원
대중음악	대한가수협회(www.singer.or.kr)	02-780-2783	
	한국연극협회(www.ktheater.or.kr)	02-744-8045	
연극	서울연극협회(www.stheater.or.kr)	02-765-7500	
뮤지컬	K뮤지컬아카데미(www.kmacademy.kr)	02-765-5598	
영화	영화인신문고(www.sinmungo.kr)	02-2272-1505	영화인신문고 자체 지원
모든 장르	예술인신문고(www.kawfartist.kr)	02-3668-0200	

◆ 저작물 이용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어떤 저작물을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 저작물이 보호받는 것인지 확인한다.	저작물 이용 방식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방식인지 확인한다.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제목과 이용하려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알리고 허락을 받는다.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한다.
	보호기간이 지났는지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지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허락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의 조건에 맞는지	허락을 도와주는 단체 저작권신탁관리 단체 저작권 대리중개업체	
어떤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할 것인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경우는 이용가능	허용되는 방식이면 이용가능	허락을 받고 다음단계로 이동	저작자표시, 출처표시 명확히 하고 이용

◆ 생활 속 저작권 침해 사례

◆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 그림, 사진 퍼서 내 홈페이지 옮기기

'저작자 표시도 없고 남들도 다 쓰는데, 뭐' 하고 함부로 가져다 쓰면 안 됩니다.

표시는 없어도 저작권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표시가 없는 저작물은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어려우니 오히려 더욱 위험합니다.

◆ 공유사이트·웹하드 등에서 자료 주고받기

내 것도 아닌 저작물을 함부로 올려서 공유하면 안 됩니다. 함께 나누는 것은 좋지만, 내 것을 나누는 때에만 미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라면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영화·음악파일 게시판 자료로 올리기

직접 만든 영화, 직접 만든 음악이라면 모를까, 대부분의 영화와 음악 파일을 올릴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컴퓨터프로그램, CD로 구워서 친구들에게 나눠주기

컴퓨터프로그램도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입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멋진 음악, 내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배경 음악으로 쓰기**

미니홈피나 블로그 자체에서 제공되는 음원을 이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음악 파일을 변환해서 배경 음악으로 이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 **인기 드라마, 쇼 프로 등 방송 프로그램 캡처하여 인터넷에 올리기**

드라마의 멋진 장면, 쇼 프로의 재미있는 장면을 캡처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비록 한 장면이라도 저작권이 있는 원래 드라마나 쇼 프로의 일부로서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습니다.

◆ **좋아하는 가수 팬클럽 카페에 음악 올리기**

좋아하는 가수 팬클럽 카페나 블로그에 노래를 올리려면 그 노래의 작사와 작곡가 그리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 **문제집, 참고서 등 학습 자료 스캔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기**

학습자료도 모두 저작권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함부로 자료를 공유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정품 콘텐츠 구매 후, 인터넷에 공유하기**

음악이나 영화 또는 컴퓨터 게임 등 일상생활 속 저작물들은 대부분 정품 구입의 형태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이용해야 합니다. 한편 정품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장소인 미니홈피나 블로그를 꾸미는데 사용한다면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 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
(2016. 3. 22.)

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 (2016. 3. 22.)

2016년 저작권법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판매용 음반'의 해석을 둘러싼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내용,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 확대를 위한 개정,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을 위한 관련 규정의 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1.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규정

종전 저작권법에서는 '음반'을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정의하고, '판매용 음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기술변화 등으로 음악의 유통 및 이용방식이 변화하면서 '판매용 음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예를 들면 과거 음악시장은 LP, CD, 테이프 등의 유형의 음반이 중심이 되었었지만, 오늘날 음악시장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한 디지털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시장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판매용 음반'의 해석과 적용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였다. 특히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디지털음원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경우에도 공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음반'을 CD 등 유형의 매체에 한정해서 해석하거나, '판매용'의 범위에 대해 서로 엇갈리는 판결이 나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관련 판례

①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스타벅스 판결]

스타벅스는 국내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플레이네트웍스(이하 'PN사')가 제공한 플레이어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CD를 재생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라 함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보면서, 이 사건 CD는 PN사의 스타벅스 본사에 대한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스타벅스 본사의 주문에 따라 피고 등 세계 각국의 스타벅스 지사에게만 공급하기 위하여 제작된 불대체물일 뿐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②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 [현대백화점 판결]

현대백화점은 KT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제공받고 스트리밍 방식을 통하여 매장에 틀어 놓았는데,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판매된 음반이 통상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공연에 사용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실연자의 실연 기회 및 음반제작자의 음반판매 기회가 부당하게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보상해 주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면서,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되고, '사용'에는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사용뿐만 아니라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

③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 [하이마트 판결]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근저에는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그 음반이 시중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당해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음반제작자는 물론 음반의 복제·배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당해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능을 가지는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라 함은 그와 같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판매용 음반'을 둘러싼 이상과 같은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 개정 저작권법은 음악 산업이 유형의 매체 구매에서 다운로드·스트리밍 서비스로 재편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음반'의 범위에 디지털 음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다. 개정 저작권법상 '음반'이란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하여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카세트테이프, CD, 디지털 저장장치 등 매체를 불문하고 고정된 음 자체를 의미한다. 즉, 음반이란 CD 등 유형적 매체가 아니라, 디지털 음원을 포함한 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카세트테이프, CD 등으로 발매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다운로드·스트리밍 형태로 서비스되는 음악저작물 그 자체가 음반이 된다.

개정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의 해석에 대한 시장에서의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국제조약과의 정합성을 기하기 위하여 '판매용 음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으로 개정하였다. 이때 저작권법상 '공표'란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것으로, 음반을 온라인에 공개하거나 CD 등의 형태로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 기록의 목적 또는 특정 대상만을 위해 제작하는 음반, 예를 들어 국악연주모임, 재즈동호회 등 사교모임이나 동호회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음반의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개정저작권법상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즉 '상업용 음반'이란 '공중에게 음반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하거나, 해당 음반의 판매와 관련된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업용 음반'을 구입해서 이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거나 편집하여 다른 매체에 저장하더라도 '상업용 음반'으로서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2.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 확대를 위한 개정

우리나라는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저작권자 등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도입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조항을 도입하였다. 그런데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활성화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도입했었던 공정이용 일반조항은 그 목적 및 고려 사항이 제한적이어서 입법 당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개정법에서는 공정이용의 목적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으로 제한하고 있던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사항으로 포함되었던 '영리 또는 비영리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다.

3.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을 위한 관련 규정의 정비

2016년 저작권법 개정사항에는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업무를 통합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함으로써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갖추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근거 및 업무 규정 등을 마련하였고(제122조의2부터 제122조의5까지), 저작권보호 심의위원회의를 구성하는 한편(제122조의6),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 등을 위한 심의 및 시정권고의 주체를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01	저작물의 창작성	28
02	아이디어와 표현	29
03	드라마 속 유행어	31
04	쪽지글 등의 단문	32
05	제품사진의 저작물성	34
06	음란물	36
07	시가 작성한 저작물	38
08	데이터베이스	40
09	올림픽 관련 콘텐츠	42
10	코스프레(코스튬 플레이 Costume Play)	43
1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작성한 자료	45

Q

저작물의 창작성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이때 창작성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창작성이란 수준 높은 예술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즉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이 부여되어 있으며,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의 정도는 최소한의 정도로서 저작자의 개성이 저작물 중에 반영되면 족할 것이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저작권법상 보호 받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여행책자를 발간·배포함에 있어서 기존 여행책자 내용의 배열이나 단어를 일부 바꾸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저작물의 창작성이라 함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편집물의 경우에는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는 등의 작성행위에 편집 저작물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는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여행지의 역사, 교통, 숙박 등의 정보나 인문적 현상은 객관적 사실이나 정보를 별다른 특색 없이 그대로 기술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종래의 통상적인 방식과의 차이가 없어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전제로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각 여행책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Q

아이디어와 표현

새로운 기술의 고안, 사업 아이템, 방송프로그램의 포맷, 지방자치단체의 축제 개요 등이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될 수 있는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여기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보호대상이 아니라 그 '표현'임을 주목해야 한다. 즉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로는 보호가 되지 아니하고 외부적으로 표현된 결과물만이 저작물로 보호된다.

이를 저작권법에서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구분을 두는 이유는 저작물에 내재된 사상, 관념에서 여러 가지 표현 형태를 가진 수많은 창작물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를 특정인에게 배타적인 권리로 부여하게 된다면 다양한 창작물의 생성을 가로막음으로써 저작권법에서 본래 목적하고 있는 학문, 문학, 예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녀의 삼각관계라는 아이디어만으로도 말할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한 소설, 영화, 음악 등이 제작된다. 이러한 아이디어나 소재를 누군가가 독점하게 된다면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할 때보다 문화 콘텐츠의 생성 파급력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술한 제안서가 보호받는다는 것은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서술된 문장, 설계도, 사진, 그림 등)에 대한 보호에 그친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새로운 기술에 대해 설명된 책을 구입하였다고 할 때, 그 책에 서술된 글의 문장을 그대로 베껴 다시 책을 출간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것이지만, 그 책을 보고 기술만을 구현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되지 않는다. 이와 동일하게 사업제안서를 보고 거기에 있는 아이디어만을 차용하여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제안서의 주요 내용인 서비스 방식이 신규성, 진보성 등의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특허법에 의한 보호를 받거나 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 등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방송프로그램 포맷의 경우 역시,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서는 정도의 구체화된 특징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그 특징이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정도의 표현, 즉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창작물로 보기에 명확하지 않아 아이디어와 표현의 '중간 영역(gray area)'에 해당한다 보고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¹⁾ 따라서 방송 포맷이 도용된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를 떠나 포맷 개발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방지의 법리로 오리지널 포맷의 보호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가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명확한 계약이나 약정이 존재한다면 저작권 침해와는 별개로 민법상 계약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6264 판결.

한글교육 교재의 소재로 공통적으로 글자교육카드를 사용하는 출판사들 사이에 해당 한글교육 교재가 채택하고 있는 순차적 교육방식의 저작물성이 다투어진 사안에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은 순차적 교육방식이라는 것은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제5판 재무관리' 및 '제5판 재무관리 해답집'과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일부가 기존의 관련 저작물과의 관계에서 복제권 등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학술적 저작물의 경우에 학술적 내용 자체는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이른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고,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그러한 내용을 담은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한정되므로, 학술적 저작물에 담겨 있는 학술적 내용을 이용하더라도 창작성이 드러나 있는 구체적인 표현까지 베끼지 않는 한 복제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1) "방송프로그램 포맷의 보호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41쪽.

Q

드라마 속 유행어

TV 드라마로 인기가 있었던 <태양의 후예>에 나온 대사를 소재로 해서 회사 홍보에 이용하려고 한다. 해당 영상을 이용하지 않고, 드라마 이름도 언급하지 않을 경우, “~이지 말입니다”라는 문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가?

A

KBS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수많은 기사에 등장하였고,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시중에서는 이러한 인기로 힘입어 해당 드라마의 소재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들이 실제로 있었는데, 그 중 드라마 대사의 일부로서 “~이지 말입니다”를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예로 ‘무한도전’이라는 방송프로그램에서 인기가 있었던 L 가수의 <백세인생> 노래가사의 일부인, “~라고 전해라”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같은 맥락일 것이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²⁾을 말한다. 과연 이렇게 동사 어미 내지 짧은 어구가 저작물이 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라고 전해라”나 “~이지 말입니다”는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누구나 쓸 수 있다. 글이나 문장 등이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든지 여부와 관련하여 문장이 비교적 짧고 표현방식에 창작의 여지가 없거나, 단순히 사실을 소개한 것으로서 다른 표현을 상정할 수 없는 것 또는 표현이 매우 흔한 것 등은 저작자의 개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³⁾ 위와 같은 대상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6가합83852 판결.

Q

쪽지글 등의 단문

사회적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거리 한 편에 시민들이 남겨 놓은 ‘포스트잇 쪽지글’을 모아 책을 만든다면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을까?



다양한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해당 장소에 포스트잇 쪽지글을 게시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포스트잇 쪽지글’들을 모아 책으로 펴내거나 SNS에 게시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짧은 글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포스트잇 쪽지글’ 또한 저작권법상 보호하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하겠지만, 일상생활에서 평이하게 쓰는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라면 저작권법으로의 보호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저작권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몇 개의 단어 등으로 조합된 단문들 역시 그 표현에 있어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하다. 하지만 보통 몇 개의 단어 등으로 조합된 간략한 문장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이다.⁴⁾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아주 적은 수의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문들에 있어서 표현의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여 저작권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문화의 향상·발전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까지 지나친 제약을 가하는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설가 이외수씨의 트위터 글 관련 판례를 통해 우리 법원은 “짧은 글귀 속에서 삶의 본질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표현이나 시대와 현실을 풍자하고 약자들의 아픔을 해학으로 풀어내는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각 글귀마다 이외수 특유의 함축적이면서도 역설적인 문체가 사용되어 그의 개성을 드러내기엔 충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외수의 트윗글은 전체적으로 이외수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글로서 저작물이라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여 글의 분량이 짧더라도 그 안

4)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90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7. 7. 선고 97나1522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11. 14.자 2006라 503 결정.

에 저작권법상 보호하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성 표현'이 이루어졌다면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 판시하였으므로,⁵⁾ 이를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정4449 판결.

Q

제품사진의 저작물성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동종 업자가 찍어 놓은 제품사진을 이용하고자 한다. 예술가가 찍은 작품사진이 아닌데 그러한 제품사진도 저작권법상 보호가 되는가?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다만, 사진은 사람이 그리는 그림과는 달리 카메라기기를 이용하여 사물의 모습을 복제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진이 저작물로 보호되는지부터 검토한 다음 위와 같은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의 침해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사진의 저작물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원은, 제품 자체의 모습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 사진은 사물의 복제에 불과할 뿐, 별도의 창작적 표현이 부가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부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제품사진 이외에도 상점의 실내사진을 촬영하여 광고 전단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저작권 침해 사안에서도 한정된 공간에서 촬영되어 누가 찍어도 동일한 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⁶⁾

다만, 사진저작물로 성립하지 않아 저작권법상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용형태에 따라 민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는 유의하여야 한다.⁷⁾

6)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7가합16095 판결. 경쟁 병원의 모발이식수술 사진을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하여 영업에 이용한 사건에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사진작가인 원고가 촬영한 햄 제품의 광고 사진을 피고 회사의 광고용으로만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상품 가이드북에도 무단 이용함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주장된 사안에서, 법원은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는 확립된 판례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원고가 촬영한 사진 중 ① 피고 회사가 제작, 판매하는 햄 제품을 단순히 우드락이라는 흰 상자 속에 넣고 촬영하여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은 ‘제품사진’으로, ② 피고 회사의 햄 제품을 다른 장식물이나 과일, 술병 등과 조화롭게 배치하여 촬영함으로써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진은 ‘이미지사진’으로 각 구별한 다음, ‘제품사진’은 그 피사체인 햄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의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미지사진’에 대하여는 저작물성을 인정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Q

음란물

해외 성인용 영상물 제작업체들이 국내에서 음란물을 공유한 네티즌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유통 자체가 금지된 음란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미국과 일본의 성인용 영상물 제작업체들이 국내에서 음란물을 공유한 네티즌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는 기사가 전해지면서 음란물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그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으면 저작물로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작품성의 높고 낮음이나 윤리성 등은 저작물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며, 마찬가지로 특정한 저작물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이냐의 여부 역시 저작물성 판단과는 무관하다.

우리 법원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상표법이나 특허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나 발명을 권리보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저작권법이 공서양속에 부합되지 않는 저작물에 대한 보호 배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 역시, 윤리성이나 음란성 여부를 저작물의 보호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일을 제재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그 제재수단으로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저작권은 특정한 이념이나 사상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서 윤리성이나 창작성의 정도를 따지게 된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윤리성 자체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므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 변화할 것이다. 따라서 자칫 지금 저작물로서 보호를 배제하여 무단으로 이용되도록 방치한다면, 후대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배제시켜 버릴 수도 있다.

결국 음란물이라도 창작성을 갖추고 있는 한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음란물의 제작 및 유통을 막는 것은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1노4697 판결.

P2P 사이트에 음란물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음란물을 복제 또는 공중송신한 행위와 관련한 저작권법 위반죄의 성립여부 및 그 죄수관계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① 저작권법은 단지 표현된 형태를 보호할 뿐이지 아이디어나 사상의 내용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점, ② 저작권법에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서와 같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지적재산권은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음란성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역사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데 이러한 유동적·상대적 개념을 저작권 보호범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④ 저작권법을 통해 창작물과 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더라도 형법 등을 통해 음란물의 제작이나 유통을 처벌하여 사회적 해악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란물 역시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Q

시가 작성한 저작물

알파고와 바둑기사 이세돌의 바둑대결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을 가진 시들은 바둑뿐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새로운 창작물 등을 만들어 내고 있다. 과연 시가 작성한 창작물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일까?

A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기반의 기술 발전은 새로운 저작물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세돌-알파고 바둑대결 등을 계기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은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창작물을 만들어 내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위하여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나 최근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사회·문화의 다변화로 새로운 형태의 창작물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은 현행 제도에서 권리의 대상으로 포섭하는 것이 어렵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주어지는 배타적 권리로 정의하고 있어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학습하여 스스로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권리 부여가 어렵다. 또한 인공지능이 창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침해의 문제에 있어서도 인간이 아니므로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딥러닝(Deep Learning) 기반의 창작활동으로 인한 책임을 인공지능을 설계한 자에게 묻기도 명확하지 않다.

다만, 현재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유용한 창작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막연한 걱정의 대상이 되는 강한 인공지능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기술이며, 더욱이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보호와 산업의 진흥을 위한 방안으로써 저작권 보호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과 유럽 주요국은 저작권법에 의한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을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도 일리가 있으므로 저작권법 본연의 목적이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방향으로 그 보호의 범위

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행과 같은 무방식주의 하에서 장기간의 저작권 보호를 인공지능에게 부여할 경우 문화의 향상 발전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으므로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Q

데이터베이스

내가 작성한 데이터베이스 자료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⁸⁾ 여기서 소재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를 의미한다.

즉, 사전이나 전화번호부에서부터 증권정보 데이터베이스, 물가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이르기까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이고,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한 사람(이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란 소재의 수집, 배열, 구성, 갱신, 검증, 보충 등에 상당한 투자를 한 사람을 의미하며,⁹⁾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또는 전송할 권리를 갖게 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창작성이 없는 소재(데이터)는 보호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부를 제작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배열, 구성 등을 하였다면 전화번호부라는 결과물은 보호받을 수 있겠지만 전화번호 하나 하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소재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이라면 데이터베이스와는 별개로 해당 소재는 보호받을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8)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9) 저작권법 제2조 제20호.

해부터 시작하여 5년 동안 존속한다.¹⁰⁾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 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그 갱신된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갱신 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시작하여 5년간 존속하게 된다.¹¹⁾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서는 ‘편집저작물’이라 하여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보호하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재가 선택되고 배열·구성되는 것에 창작성이 있다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본래 가지게 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와는 별개로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또한 가지게 되며 이 경우 다른 저작물과 동일한 권리의 보호를 받게 된다.

10) 저작권법 제95조 제1항.

11) 저작권법 제95조 제2항.

Q

올림픽 관련 콘텐츠

‘올림픽’이라는 명칭이나, 로고, 마스코트, 엠블럼 등을 이용해도 되는가?



‘OLYMPIC’, ‘Rio2016’ 등 올림픽 관련 명칭 자체는 상표권 등으로의 제약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명칭의 로고타입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대상일 수 있으므로 이용에 주의해야 한다.

즉 올림픽 관련 엠블럼 · 마스코트 · 로고타입 · 영상 · 사진 등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한다.

만일 저작권자가 비영리 목적으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올림픽 관련 명칭, 명칭의 로고타입, 브랜드 등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나 각국의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상표로 등록한 경우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받기 때문에 다른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하는 것에 주의해야 하고, 유사한 명칭이나 명칭의 로고타입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을 일으킬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이용에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올림픽 관련 상징물, 명칭 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또는 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코스프레(코스튬 플레이 Costume Play)

코스프레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다. 요즘 매달 개최되는 ‘코믹월드’에서 코스프레(코스튬 플레이 costume play)로 참가하려는 ‘코스어(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캐릭터 관련 물품들을 제작하여 소액의 돈을 받고 판매하고 싶은데, 저작권 문제가 없을까?



우리 나라의 ‘코믹월드’는 현재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코믹’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축제문화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실 코스프레는 용어의 낯설음이 있을 따름이지, 어린 시절 한 번쯤은 TV 속 슈퍼맨을 따라하기 위해 집안에 있던 빨간 보자기를 두르고, 하늘을 향해 오른팔을 내밀며 신나게 내달려 봤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꿈을 현실 속으로 가져와 구체적인 놀이문화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코스프레일 것이다.

이처럼 유명 게임이나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모방해서 같은 의상을 입고 분장을 하며 그들의 행동을 흉내 내는 놀이인 코스프레는 ‘코믹월드’ 행사의 중심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 동호회 사이트 등에서 개인적인 취미활동을 넘어 코스프레 관련 물품들을 직접 제작·판매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판례는 게임이나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에 등장하는 시각적 캐릭터는 캐릭터 성격 등의 본질적 측면 등을 따지기 보다는 그 시각적 표현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거기에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로서의]창작성이 있으면 저작물로서의 독자적 보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²⁾

따라서 보호받는 캐릭터저작물과 관련한 물품 제작(각종 팬시제품, 동인지, 코스프레 의상 및 소품 등)은 엄밀히 말해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캐릭터를 좋아하는 팬들이 비영리 동호회 활동으로 만든 물품 등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할 경우, 공정이용으로

12)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일명 ‘실황야구’ 사건.

해석될 여지는 있다. 하지만 누군가가 영리적인 목적을 갖고 별도로 제작·판매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다면 이는 해당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는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¹³⁾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코스프레의 여러 표현 형태 가운데 캐릭터 실제 의상의 경우는, 해당 의상 모두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치어리더 의상’ 사건에서도 의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회화나 그래픽, 혹은 조각적인 특징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런 특징이 물품의 실용적 기능과 분리될 경우’¹⁴⁾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캐릭터 실제 의상 역시 실용적 기능과 분리된 독자적인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축제문화로 자리 잡은 ‘코믹월드’가 캐릭터를 사랑하는 팬심으로서 축제를 향유하며,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공정한 이용의 장이 될 수 있어야 우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상 소기의 목적을 보다 손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13)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14) 미국저작권법 제101조.

Q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작성한 자료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는 국민들을 위하여 제작된 것이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A

국가기관은 각종 정보의 제공자로서 여러 가지 자료집이나 연감, 백서, 통계자료, 정책연구자료, 연구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기관의 저작물은 다른 매체가 발간한 저작물에 비하여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다. 또한 국가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개별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 저작권법은 정부저작물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지 않고, ①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앞서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 5가지 유형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¹⁵⁾ 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열거되지 않은 유형의 저작물은 국가기관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다.

물론 국가기관이 국민의 비영리적인 이용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할 것인가라는 점은 고려될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정부가 발간한 정책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배포하거나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 등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것이며,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기관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국가기관의 발간물이나 홈페이지에 수록된 저작물이라고 하여 모두 저작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관 홍보물을 만들면서 이용한 사진은 국가기관 역시 사진작가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15) 저작권법 제7조.

사진을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진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 결국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열거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의 민간 이용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2년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를 도입하여 ‘공공누리’ 로 칭하면서, 공공저작물을 번거로운 절차 없이 일정한 조건에 따라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점차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공공저작물 이용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한편 2014. 7. 1.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허락절차를 거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자유로운 이용의 가능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질의하지 않고서도 각 저작물에 아래와 같은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표시에서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다.

유형	표시방법	이용허락 범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처 표시 상업적 용도로 이용 가능 내용변경 등 2차저작물작성 가능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처 표시 비상업적 용도로만 이용 가능 내용변경 등 2차저작물작성 가능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처 표시 상업적 용도로 이용 가능 내용변경 등 2차저작물작성 불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처 표시 비상업적 용도로만 이용 가능 내용변경 등 2차저작물작성 불가

○ 저작자와 저작권의 귀속

- | | |
|---------------------------------|----|
| 01 무방식주의와
© 표시의 효력 | 50 |
| 02 공동작업 작품의 저작권 | 52 |
| 03 웹툰의 스토리작가와 만화가 | 54 |
| 04 후발적 공동저작권 | 56 |
| 05 업무상 작성된 저작물 | 58 |
| 06 위탁계약으로 작성된 저작물 | 60 |
| 07 우리 회사에 대한
뉴스보도자료 | 62 |
| 08 제품 및 장소협찬 제공으로
만들어진 방송영상물 | 64 |

Q

무방식주의와 © 표시의 효력

홈페이지나 도서 등에 © 표시와 함께 “All rights reserved”라고 명시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만일 이러한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창작한 때로부터 저작권이 발생하고 등록이나 출판 등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다.¹⁶⁾ 이러한 점에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과 구별된다. 무방식주의는 베른협약에 따른 것으로서,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베른협약 등 국제조약에 따라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 표시는 과거 저작권의 발생에 관해 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던 미국이 주축이 된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에 의한 것인데, © 표시는 Copyright의 첫 글자이다. 당시 UCC 조약은 저작물의 복제물에 © 기호와 저작권자의 성명, 그리고 저작물의 최초 발행연도를 표시한 경우에는 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형식을 만족시킨 것으로 보았다.¹⁷⁾

그러나 미국이 1989년 무방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베른협약에 가입하여 외국 저작물에 대하여 무방식주의를 취하게 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그 역할이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고, 오늘날 이러한 © 표시가 저작권법상의 보호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다. 흔히 © 표시와 함께 “All rights reserved[모든 권리 유보]”라고 표기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표기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16)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17) 세계저작권협약 제3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5노3421 판결.**

미술저작물로 등록된 목주반지를 복제·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결론적으로 목주반지 자체에 대한 저작물성은 부정되었으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등록이 저작권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목주반지 디자인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함이 옳다'고 판시하였다.

Q

공동작업 작품의 저작권

친구와 공동작업 한 시나리오가 공모전에서 당선되었다. 당선작에 대한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저작물의 작성은 혼자서 하기도 하지만,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그 창작행위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창작행위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 그 저작물은 유형에 따라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로 구분되는데, 양자는 권리행사의 방법에 있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작권법상의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가 창작에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¹⁸⁾ 이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창작행위에 참여했어야 하며, 그러한 창작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저작물을 작성한다는 ‘공동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친구와 시나리오 공모전을 위해 처음부터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함께 창작행위에 참여했다면 해당 시나리오는 공동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공동저작물로 성립하게 되면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¹⁹⁾ 따라서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이용허락이나 양도,²⁰⁾ 출판권 설정 등은 효력이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한편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가 전원의 합의를 요함에 비하여,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권리구제 행위를 할 수 있다.²¹⁾

18)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19)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5.자 2012카합2882 결정. 이 사건 저작물을 A와 B의 공동저작물로 보는 이상, A가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단독으로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저작물을 양도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1) 저작권법 제129조.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특약이 없다면 공동저작자가 개별적으로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되는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²²⁾ 그리고 공동저작물은 공동저작자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²³⁾

한편 이와는 달리, 창작에 여러 사람이 관여하여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한 경우에도 창작에 관여한 저작자 사이에 공동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각자의 창작부분이 분리되어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결합저작물로 본다. 이러한 결합저작물은 각자의 창작부분이 개별적으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창작부분에 대해 각각 저작권을 가진다. 예를 들어 음악저작물은 곡과 가사가 분리되어 이용 가능한 결합저작물이며 뮤지컬 역시 각본, 악곡, 가사, 안무, 무대미술 등이 결합된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된 경우이기는 하나, 그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이 분리되어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이 아닌 결합저작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질의사안과 같이 시나리오를 함께 작성했을 경우 이를 각각 작성한 부분별로 나누어 이용할 수 있다면 결합저작물로서, 분리가 가능하지 않는다면 공동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22) 저작권법 제48조 제2항.

23) 저작권법 제39조 제2항.

Q

웹툰의 스토리작가와 만화가

인기 스토리작가 A씨는 유명만화가 B씨와 합의하여 웹툰을 연재하기로 하였고, A씨의 콘티²⁴⁾를 바탕으로 B씨가 그린 웹툰이 유명 포털 사이트에 성황리에 연재중이다. 영화제작사 C에서는 이 웹툰을 영화화 하려고 하는데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

A

웹툰이란 인터넷을 뜻하는 ‘웹(web)’과 만화를 의미하는 ‘카툰(cartoon)’이 합쳐져 만들어진 신조어²⁵⁾로서 인터넷에서 연재되는 만화를 말한다. 웹툰은 단순히 만화콘텐츠를 넘어 드라마 및 영화로도 활발하게 리메이크 되고 있어 가히 웹툰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웹툰은 보통 만화가가 이야기를 구상하고 연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최근 들어 별도의 스토리작가가 구성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화가가 만화를 그리는 형태의 웹툰 창작이 늘어나고 있다. 이 경우에 웹툰을 기반으로 드라마·영화 등 2차적저작물을 만들 때 스토리작가의 이용허락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만화가의 허락도 함께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저작권법상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고 하며²⁶⁾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면 강학상 ‘결합저작물’이라고 부른다.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전원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이용할 수 있고, 결합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이용허락만 얻으면 이용할 수 있다.

만일 웹툰의 스토리작가가 만화가와 기획 의도나 전개 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없이 독자적인 시나리오 내지 소설 형식으로 스토리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웹툰은 스토리작가와 만화가의 공동저작물로 보기 힘들고, 만화를 원작에 대한 2차적저작물로 보게 되므로, 영화사가 웹툰의 표현 내지 인물·배경설정 등을 참고하지 않고 스토리 원작에만 기초하여 영화를 만들 경우에는 스토리작가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이용허락만 얻으면 된다.

24) 만화를 그리기에 앞서 전체적인 작화와 연출을 미리 그려놓거나 텍스트로 표현한 것.

25) 김기림/최기호, 대중문화사전, 현실문화연구, 2009.

26)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하지만 A씨와 B씨의 사례처럼 웹툰을 창작할 당시에 스토리작가와 만화가 사이에 웹툰의 전체적인 주제, 캐릭터 설정 등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다면 공동저작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 영화사는 스토리작가와 만화가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웹툰을 영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이 사건은 만화의 스토리작가들이 스토리를 독자적으로 창작하여 시나리오 또는 콘티 형식으로 만화가에게 제공하였고, 만화가는 이를 기초로 그림 작업을 하여 만화가 완성되었는데, 만화가가 출판사와 독자적으로 출판계약을 하고 스토리작가들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된 사안으로, 법원은 “스토리작가와 만화가가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맡은 부분의 창작을 함으로써 주제, 스토리와 그 연출방법, 그림 등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완성되어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행사에 있어 만화가가 만화스토리작가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저작권 침해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Q

후발적 공동저작권

정부기관(이하 “공동저작권자A”)이 발주한 사업에서 공동저작권을 전제로 개발한 SW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공동저작권자A가 공동저작권자인 개발업체(이하 “공동저작권자B”)와 합의하지 않고 유지보수를 하는 다른 업체(이하 “현사업수행업체”)에게 소스코드를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고 하고, 이때의 저작자를 ‘공동저작자’라고 하며, 이러한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행사는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²⁷⁾

현행 저작권법상으로는 공동저작자가 아니면서 후발적으로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각 지분권자의 자유로운 이용 및 처분이 가능한 민법상 공유규정 또는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합유물을 처분할 수 없는 합유규정이 준용된다고 보는 견해와 저작권법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우리 법원은 저작재산권을 후발적으로 공동 보유하는 경우 특약에 의하여 배제하거나 공동보유자 상호간에 저작물 행사 등에 관하여 협의할 만한 인적 결합관계가 없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저작재산권 공동 보유자 사이의 저작재산권 행사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48조를 유추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²⁸⁾

저작권법 제48조 규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저작물을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저작권 행사 방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²⁹⁾ 개별 사안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다.

27)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28) 서울고등법원 2008. 7. 22. 선고 2007나67809 판결.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2고정565 판결.

다만, 이 경우 저작권법 제48조가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거부할 수 없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일부 기능을 추가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기존 SW를 보완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정이나 변경이라면 이에 합의하지 않는 것이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동저작권자A가 공동저작권자B와 합의 없이 현사업수행 업체에게 소스코드를 제공하여 이용도록 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8. 7. 22. 선고 2007나67809 판결.

이 사건은 영화 제작을 위하여 투자금과 영화의 제작이라는 노무를 각자 출자하고, 영화제작계약을 통해 수익의 배분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그중 어느 한쪽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함에 있어 다른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으로 저작재산권을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공동 보유하는 경우 특약에 의하여 배제하거나 공동보유자 상호간에 저작물의 행사 등에 관하여 협의할만한 인적결합관계가 없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저작재산권의 공동보유자 사이의 저작재산권 행사 등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저작권법 제48조를 유추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Q

업무상 작성된 저작물

회사를 다니면서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에 대해, 직원이었던 자신이 직접 창작한 것이므로 퇴사한 후에도 이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을까?

A

저작물의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나, 예외적으로 업무상 저작물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가 저작자가 된다.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첫째,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였어야 한다. 이러한 법인 등의 기획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대해 기획하고 그 직원 등에게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작성하게 하였다면 족하고, 반드시 사용자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저작물의 작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적으로 기획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³⁰⁾

둘째,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어야 한다. 규정에 단순히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만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관계에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사용관계를 넓게 해석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위탁·도급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한다.³¹⁾ 직원이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업무범위가 아닌 때에는 업무상저작물로 성립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30)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 '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 위 법 규정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하는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인 만큼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피고인 개발자가 원고회사의 일반근로자와는 다르게 근무하였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교수와 개발을 상의하였고 개발자가 법 규정을 잘 알고 있는데도 원고회사가 다른 회사에 계약서 초안을 보낸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개발자가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받지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창작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을 뿐 법인의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1)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넷째,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또한 작성자의 명의를 법인의 명의로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것이 단순한 업무 분담을 밝히는 차원에서 기재된 것이라면 여전히 업무상 저작물이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어야 한다.³²⁾ 법인 등과 직원 사이에 실제 작성자를 저작자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이에 따라 작성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될 것이다.

일단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상저작물로 성립하게 되면,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고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은 원시적으로 법인 등에 귀속된다. 따라서 법인 등과의 사이에 실제 작성자를 저작자로 하는 특약이 없음에도 퇴사 이후 이직하면서 경력 기술서에 자신이 저작권자라고 기재하거나, 포트폴리오 전부를 외부에 공개하는 방법 등으로 계속 이용하는 것은 법인 등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목적과 이용의 범위 등을 그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자인 법인 등에게 밝힌 뒤 이용허락을 받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 저작권법 제9조.

Q

위탁계약으로 작성된 저작물

외부업체에 기관의 홍보책자 제작을 위탁하였다. 위탁계약 당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대해서는 약정한 바가 없었지만, 제작비용 일체를 기관에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홍보물에 이용될 사진도 직접 제공하였다. 추후에 우리 기관이 해당 결과물을 변형하여 이용하거나 다른 업체에게 추가제작을 의뢰하는 것이 가능한가?



외부업체에 홍보책자나 홈페이지 등을 위탁하여 제작하는 경우, 의뢰자 혹은 발주처가 제작비용을 지불하였고 제작을 의뢰하였기에 해당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훗날 해당 결과물을 변형하여 이용하거나 다른 업체를 통하여 추가제작을 의뢰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위탁계약 시 저작권 귀속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된다. 위탁계약에 의해 작성된 결과물이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어 그 제작을 의뢰한 쪽이 저작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업무상저작물의 성립요건 중 '법인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것'의 요건과 관련이 있다. 법에는 단순히 '업무에 종사하는 자'³³⁾로만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관계에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일반적인 위탁·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독립적 지위에서 자신의 재량에 의하여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업무상저작물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저작권 귀속에 관한 특약이나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위탁계약에 의한 결과물의 저작자는 직접 창작행위를 한 외부업체가 될 것이고, 의뢰자는 계약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권리 혹은 그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만을 가진다고 해석함이 바람직하다.

간혹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용역계약에 의한 결과물은 갑의 소유로 한

33)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다'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된 계약서를 접하게 된다. 명시적으로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재산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위와 같이 기술한 경우에는 해당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이 아닌 소유권만이 의뢰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Q

우리 회사에 대한 뉴스보도자료

우리 회사에 대해서 보도한 기사를 복제해서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고 싶은데 괜찮은가?



가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크고 작은 기업 등(이하 “단체 등”)이라고 한다. 에서 무단으로 뉴스 기사를 복제하여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가 있다. 자사에 대한 기사여서 단체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뉴스 기사는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어문저작물이다. 따라서 자사에 대한 뉴스 기사 이더라도 단체 등이 그것을 복제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려면 해당 언론사의 사전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사가 단체 등이 배포한 보도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만약 기자가 단체 등이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특정 사실만을 발췌하여 자신의 생각을 담아 기사화한 것이라면 이러한 기사의 저작권은 언론사에게 있겠지만, 보도 자료에서 토씨 정도만 바꾸어 기사화한 것이라면 그러한 기사의 저작권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 단체 등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사는 언론사의 허락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다만, 보도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기사일지라도 기자의 주관적인 사상이나 감정 또는 창조적 개성이 투영되는 것이 보편적이므로, 단체 등에 대한 기사를 복제하여 자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언론사의 사전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짧고 간결하게 작성된 시사 보도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라 함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을 정도로 최소한의 창작성조차 인정되지 않는 경우,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사발령기

사, 부고기사, 주식시세,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 하였는가'라는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간단한 사건·사고기사(화재·교통사고 등)와 같이 단일한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하고 있어 그 자체로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³⁴⁾을 말한다.

우리 대법원은 “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기상 정보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을 사실의 정도에 불과한 시사보도라고 판결하였다.³⁵⁾ 따라서 단체 등이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짧고 간결하게 작성된 자사에 대한 기사는 언론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복제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지만,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수준을 넘어선 기사는 언론사의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단체 등이 자사에 대한 뉴스기사에 대하여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판단이 모호할 때는 언론사의 허락을 받고 이용하는 것이 법적 분쟁의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길이다.

3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나334 판결.

35)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Q

제품 및 장소협찬 제공으로 만들어진 방송영상물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드라마 제작사에서 장소협찬 요청이 와서 이곳을 촬영장소로 제공하였다. 해당 드라마가 방송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레스토랑을 홍보하고 싶다. 이 드라마 영상을 자사 홈페이지에 올려도 될까?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 주인공들이 소지하고 다니는 소품이나, 특정 유명 장소들이 적지 않은 시간동안 노출되는 장면들을 볼 수 있다. 이는 영화나 드라마 속에 브랜드가 보이는 상품이나 영업장을 등장시켜 해당 브랜드를 대중에게 홍보하는 PPL(Product Placement)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자사 브랜드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 때 많은 기업들은 “우리가 제품이나 장소를 제공하였으니 해당 영상을 당연히 자사의 홍보에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사의 제품이나 장소가 노출된 영상일지라도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상물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제시된 상황과 같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기업 홍보를 위해 해당 영상을 무단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한다면, 저작권자의 복제권,³⁶⁾ 공중송신권³⁷⁾을 침해하게 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한 기업의 경우는 제작협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영상을 홍보나 마케팅에 별도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쉬운 일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라마나 영화의 스틸, 영상에 대한 이용 가능 여부와 더불어, 작품에 출연하는 배우의 초상권에 대한 법적 문제까지 고려하여 제품의 홍보나 마케팅에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36) 저작권법 제16조.

37) 저작권법 제18조.

○ 저작인격권

- 01 공표의 의미와 그 법적 효력 68
- 02 시험문제의 복원과 공표권 70
- 03 저작물 유형에 따른
동일성유지권
침해여부 판단방법 72
- 04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74

Q

공표의 의미와 그 법적 효력

내 저작물을 공표한다는 것의 의미와 그 효과는 무엇일까?



저작권법의 주요한 목적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아울러 국민들이 저작물을 폭넓게 공유하고 창달시킬 수 있게 한다는 점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술의 발달은 저작자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에도 일조하게 되면서 자신의 저작물을 미공표 상태에서 보호하려는 추세가 점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방송 프로그램이나 공연기획 등 저작물의 공표가 곧장 다른 저작물의 소재나 구성으로 전환됨을 통하여 원래의 창작자가 사업상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저작권법상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공표권이라 한다.³⁸⁾ 구체적으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결국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과 등록절차 측면에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다.

먼저 공표된 저작물이 아니라면 일반인들이 예외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인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된다. 우리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만 이와 같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일반인들이 해당 저작물을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으므로 미공표 저작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반인의 해당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과 접근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저작재산권자 불명의 저작물을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법정허락제도도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뿐만 아니라 공표 여부에 따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기산점도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는 저작자 사망 후, 미

38) 저작권법 제11조 제1항.

공표 저작물의 경우는 공표 후로서 서로 다르다.

등록절차에 있어서도 양자 간의 차이는 나타난다. 미공표 상태로 등록된 저작물의 경우 일반인들은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할 수 없으며, 공표되지 않은 업무상저작물의 경우는 등록 실무상 업무상저작물확인서라는 별도의 양식을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단, 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는 예외). 또한 원래 미공표저작물이었던 등록사항을 공표저작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여 공표된 저작물로서 새롭게 등록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Q

시험문제의 복원과 공표권

외국어의 능력평가나 대학의 입시, 회사의 입사시험 등은 비공개로 진행 되는 경우가 많다. 시험에 응시한 응모자들은 자신들이 응시하였던 문제를 기억하고 나와 인터넷 카페 등에 시험문제를 복원하여 공유한다. 또한 이를 정리하여 기출문제집 등으로 발간한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까?



시험문제는 개별 문제의 저작물성에 따라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고, 저작물로 보호 가능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하거나 온라인상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 다만, 이 사례에서는 비공개 문제의 공표권 문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지는데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³⁹⁾ 여기에서 ‘공표’라 함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⁴⁰⁾ 이때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는 저작자만이 가지며 공표권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 즉 미공표저작물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비공개하는 경우에 이를 공표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인데, 우리나라 법원은 공표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저작자가 미공표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기증하거나, 출판권이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저작자가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⁴¹⁾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저작자와 이용자가 공표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추정의 효과가 반복된다.

39) 저작권법 제11조 제1항.

40)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41) 저작권법 제11조 제2항 내지 제5항.

**서울고등법원 1995. 5. 4. 선고 93나47372 판결.**

이 사건은 원고인 토플시험 시행사가 토플시험 문제를 복원한 기출 문제집을 출판하는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공표권 및 저작재산권 침해를 주장한 사안으로, 법원은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방송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원고가 토플시험 응시생들에게 문제지의 소지, 유출을 허용하지 아니하고서 그대로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제한된 범위의 응시생들이 토플시험을 치르는 행위만으로는 이를 공표라 할 수 없고, 이와 달리 토플문제가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었다거나 발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 다만, 이 판결 이후인 2007년, 저작권법 전부 개정을 통해 공중의 개념에 불특정 다수 및 특정 다수가 포함되었으므로 현재는 공표된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저작물 유형에 따른 동일성유지권 침해여부 판단방법

인터넷상에서 음악저작물의 일부만을 미리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음악저작물 이용 관련 마케팅을 하는 경우, 음악저작물 전부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사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성립할까?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인격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동일성유지권이다. 이 권리는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사례에서와 같이 음악저작물의 일부만을 이용한다면 전체로서의 음악저작물의 온전성이 손상된 경우로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영상저작물 등의 일부만을 이용하더라도, ① 그 부분적 이용이 저작물 중 일부를 발췌하여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이용되는 부분 자체는 아무런 변경이 없고, ② 이용방법도 그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방법을 따른 것이며, ③ 그 저작물의 이용 관행에 비추어 일반 대중이나 당해 저작물의 수요자가 그 부분적 이용이 전체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저작물 중 부분적으로 이용된 부분이 그 저작물의 전부인 것으로 오인되거나, 그 부분적 이용으로 그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사상·감정이 왜곡되거나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오인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적 이용은 그 저작물 전부를 이용하는 것과 분량 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심지어 그 부분적 이용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한 바 있다.⁴²⁾

따라서 사례에서도 음악저작물의 일부이용으로 인하여 그 이용된 부분 자체에 아무런 변경이 없고, 통상적인 음악저작물 미리듣기 서비스와 다를 바가 없다면, 일반 대중이나 음악저작물의 수요자로서는 일부 이용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저작자의 사상·감정의 왜곡 또는 저작물의 내용·형식의 오인 우려가 없으므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42)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다101148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09798 판결.

그러나 이와 같은 법리는 저작물의 일부 이용이라는 점을 수요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영상저작물 등에 대해서만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모든 저작물에 대해서 일반화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부득이 일부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와 향후 이용방식에 관하여 명확한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다101148 판결.

음악저작물의 권리자로부터 그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다음 인터넷상 음악저작물의 이용거래에서 해당 저작물의 홍보나 유료 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음원 중 약 30초 내지 1분 정도의 분량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하는 형태의 ‘미리듣기’ 서비스 제공행위가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영상저작물 등의 일부만을 이용하더라도, 그 부분적 이용이 저작물 중 일부를 발체하여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이용되는 부분 자체는 아무런 변경이 없고, 이용방법도 그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방법을 따른 것이며, 그 저작물의 이용 관행에 비추어 일반 대중이나 당해 저작물의 수요자가 그 부분적 이용이 전체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저작물 중 부분적으로 이용된 부분이 그 저작물의 전부인 것으로 오인되거나, 그 부분적 이용으로 그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사상·감정이 왜곡되거나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오인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적 이용은 그 저작물 전부를 이용하는 것과 이용하는 분량 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는 그 부분적 이용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다.

Q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공모전에 당선된 공모 작품에 대해 저작권 양도계약을 작성하려는데, 저작권 가운데 저작인격권도 양도가 가능한 것인가?



저작인격권이라 함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를 말하며, 경제적 권리인 저작재산권과 함께 저작권의 내용을 이루는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저작물에는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재산권과는 다른 저작인격권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으며,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하게 된다.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사후에도 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만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저작자의 유족이나 유언집행인에게 침해정지나 명예회복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⁴³⁾

또한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은 자연인뿐 아니라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인 법인 등 단체에게도 인정된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저작인격권도 양도하기로 약정했는지라도 이는 무효이며 저작자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다.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가 인정될 경우, 저작자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사상 고소를 할 수 있다.⁴⁴⁾ 이 경우에는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다.⁴⁵⁾

43) 저작권법 제14조, 저작권법 제128조.

44)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45) 저작권법 제127조.

**대법원 1995. 10. 2.자 94마2217 결정.**

이 사건은 교재를 출판하면서 집필자들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성명표시권 침해 분쟁이 발생한 사안으로, 출판사 측은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았기에 성명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그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이를 대리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고, 저작인격권 자체는 저작권자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 저작재산권의 제한

01 정치인들의 연설이나 토론 영상 공유	78
02 저작물의 인용	80
0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법 제29조 제1항)	82
04 교내 장기자랑에서의 노래와 춤	83
05 상업용 음반의 이용 (법 제29조 제2항)	85
06 대북 방송을 위한 공연	88
07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영화상영	90
08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93
09 개인적 이용을 위해 책을 스캔 (북 스캔)한 후 재판매 하는 경우	95
10 개방된 장소에 향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의 이용	97
11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이용	98
12 저작물의 공정이용	101
13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패러디	103

Q

정치인들의 연설이나 토론 영상 공유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에 무제한 토론제도가 도입된 후, 테러 방지법 반대를 위해 재등장한 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이하 '필리버스터')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러한 필리버스터 영상이 인터넷에서 영상이나 캡처 화면으로 공유되고 있는데,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



저작권법은 책이나 테이프 등에 고정되지 않은 강연이나 연설 등 구술 형태의 창작물도 그것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서 보호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한 연설의 경우에도 책이나 법조문을 그대로 낭독하는 등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4조에서는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인 공개 연설 등을 그 이용방법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정치적 의견의 공유와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⁴⁶⁾

따라서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에 해당하는 필리버스터 영상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내용을 요약하거나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질의의 경우 직접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방송에서 중계한 영상을 캡처하거나 녹화하여 이용하는 상황이므로, 필리버스터 중계방송이 창작성 있는 영상물인 경우에는 이용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가 국회방송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반면, 이 중계방송이 일정한 위치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기계적으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46) 다만 저작권법 제24조의 단서에서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인의 연설만을 골라서 '홍길동 연설문 모음집' 등을 제작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필리버스터 영상이 저작물이나 아니냐는 허락 없이 인터넷에 공유한 이용자 입장에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필리버스터 영상에 관한 문의가 많아 국회방송에 직접 질의하였더니 국회법에서는 영상을 정치적이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⁴⁷⁾ 개인적인 목적으로 블로그에 업로드 하거나, 이른바 ‘악마의 편집’을 통해 특정인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경우가 아니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따라서 국회방송의 필리버스터 영상이 저작물이든 아니든 간에 정치적·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인터넷에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히 공유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자유롭게 토론을 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47) 국회법 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① 국회는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그 밖의 국회 및 의원의 입법 활동 등을 음성 또는 영상으로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정치적·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Q

저작물의 인용

영화비평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최근 감상한 영화에 대한 감상글을 작성하면서 영화의 일부분을 캡처한 것이나 포스터를 함께 업로드 하고 싶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창작활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선인들의 문화유산을 통해 새로운 저작물을 탄생시키게 되며, 저작권법의 목적이 저작물의 보호를 통해 창작활동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달성하려 함에 있음을 고려할 때, 창작행위를 할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창작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저작권법 제28조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인용규정의 대표적인 예는 논문 등을 저술하면서 타인의 저작물 일부를 이용하고 각주로 그 출처를 밝히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인용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한 질문 가운데 “몇 페이지 정도가 인용 가능한가?”, “출판되는 책이나 유료로 제공되는 교육 등에 있어서는 적용될 수 없는가?”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인용에 있어 저작물의 구체적인 분량이 아닌 ‘부종적 성질’, 즉 인용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주(主)가 아니라 종(從)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영리적인 목적에 있어서는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라고 판단하고 있다.⁴⁸⁾ 즉 영리적인 이용이라 하여 인용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고, 다만 인용의 요건인 ‘정당한 범위’나 ‘공정한 관행’을 판단함에 있어 비영리적 이용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일반 수요자

48)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들의 시장수요를 상당히 대체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고려될 것이다.

그러므로 영화비평의 글을 쓰기 위하여 영화의 한 장면이나 포스터 등을 함께 업로드 하는 것은 위의 인용규정에 따라 이용 가능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1996. 7. 12. 선고 95나41279 판결.

이 사건은 대학입시 준비에 도움이 되는 소설 감상집을 발간하면서 한국 대표 소설들의 작가를 소개하고, 작품의 주제, 줄거리 등을 수록하여 소설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주장된 사안으로, 법원은 “저작권법 제28조에 인용의 범위는 표현형식이나 인용목적 등에서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인용의 정도에 있어서도 피인용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거나 전부 인용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등 인용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할 것인데 본 사안의 도서는 각 작품 자체를 읽을 수 있도록 단편의 경우에는 전문을, 중·장편의 경우에도 상당한 분량을 인용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그 인용부분이 주가 되고 있고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라 공정한 이용이나 정당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Q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법 제29조 제1항)

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연극 동아리가 교내 학우들을 대상으로 불우 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위해 외국 유명 뮤지컬을 공연하고자 하는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원칙적으로 공연을 함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할 것이지만, 우리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및 방송에 대해서는 저작권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공연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아야 하고,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해서도 안 된다.⁴⁹⁾

특히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공연의 경우 직접적인 입장료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상품 홍보 등의 목적이 있다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연으로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또한 실연자에게 공연에 대한 통상적 보수가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는 실연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공연이라면 저작권자의 저작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해야 할 이유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그 목적이 불우이웃돕기에 있다 하더라도 성금 모금 역시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될 수 있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성금을 내지 않아도 공연에 입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9)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

Q

교내 장기자랑에서의 노래와 춤

학교소풍 시즌이 다가오면, 학생들은 벌써부터 장기자랑 준비에 여념이 없다. 그런데 장기자랑에 기존 음악이나 안무를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는 걸까?



학교 소풍 장기자랑 시간에 학생들이 음반을 틀어 놓고 걸그룹의 안무를 따라 춤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저작권자 등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음반을 재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저작물을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⁵⁰⁾할 수 있다. 또한 안무가에 의하여 창작적으로 만들어진 안무는 저작권법 제4조 제3호의 연극저작물로 저작권법상 보호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이하 '저작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이하 '저작권자 등'이라 한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예외적인 경우 저작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등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행위의 경우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저작권법 제29조⁵¹⁾가 적용될 수 있으며, 저작권법 제87조 제1항 저작인접권의 제한에도 그대로 준용된다.

따라서 학교 소풍 장기자랑 시간에 음악을 틀어놓고 공연을 하는 경우 장기자랑의 성격상 공연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무료 공연이고, 공연을 관람하는 다른 학생들

50) 저작권법 제2조 제3호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51)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시행일 : 2016.9.23.]

이나 교사 등으로부터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으며, 제3자로부터 일체의 지원이나 후원이 없이 춤을 추면서 보수를 받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9조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저작인접권자(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를 촬영하여 블로그 등 인터넷에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Q

상업용 음반의 이용(법 제29조 제2항)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너무 적적하여 음악을 틀어 놓으려고 한다. 인터넷에서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하여 음식점 손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음악을 틀어도 괜찮은가?



다른 사람의 음악을 음식점에서 틀어주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 행위에 해당한다.⁵²⁾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공연의 방법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또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용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그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규정(이하 '비영리 공연')하고 있다.⁵³⁾

중전의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비영리 공연을 규정하면서 판매용 음반에 대한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아, 법원에서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⁵⁴⁾하거나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된다'⁵⁵⁾고 하는 등 해석이 엇갈려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였다.

그리하여 2016. 9. 23.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불식시키고자 음반의 범위에 디지털 음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으며,⁵⁶⁾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개정하였다.⁵⁷⁾

52) 저작권법 제2조 제3호.

53)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54)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55)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

5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2013. 12. 9.) 회의록 35쪽에서도 같은 취지.

5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23회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 제1차(2014. 4. 16.) 회의록 40쪽, 제337회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 제1차(2015. 11. 26.) 회의록 46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근현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7쪽 이하 참조.

이에 따라 상업적 목적, 즉 공중에게 음반을 판매의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해당 음반의 판매와 관련된 간접적 이익을 얻고자 의도하는 목적(무료로 배포하는 홍보용 CD 등으로 공표된 모든 음반을 비영리 공연의 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소규모 음식점에서 구매한 CD를 재생하거나, mp3 파일을 구매하여 다운 받아 재생하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결제하여 음악을 재생하는 등의 경우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비영리 공연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다만,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염려가 있는 특정 장소(단란주점, 골프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는 비영리 공연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업용 음반을 이용한 비영리 공연에 대해서는 부록으로 첨부한 '상업용 음반 바로 알기'를 통해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일명 '스타벅스' 판례)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근저에는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음반이 시중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당해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음반 제작자는 물론 음반의 복제·배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당해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능을 가지는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란 그와 같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 (일명 '현대백화점' 판례)

법원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판매된 음반이 통상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공연에 사용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실연자의 실연 기회 및 음반제작자의 음반판매 기회가 부당하게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보상해 주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되고, '사용'에는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사용뿐만 아니라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 (일명 '하이마트' 판례)

법원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근거에는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그 음반이 시중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당해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음반제작자는 물론 음반의 복제·배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당해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능을 가지는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라 함은 그와 같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Q

대북 방송을 위한 공연

한때 대북 심리전 수단으로 이용한 확성기 방송이 저작권법상의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이 방송에서 인기 아이돌 등의 최신 가요가 이용되어서 더욱 화제가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음악 저작권 이용료를 지불해야 할까?

A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상태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대체로 '자유민주주의 우월성, 대한민국 발전상, 민족동질성 회복, 북한 사회의 실상' 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방송되는데, 우리 민족이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가요로 북한 군인과 주민들의 마음을 흔들기도 한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인기 있는 가요 이외에도 아이유, 빅뱅, 소녀시대와 같이 젊은이들이 즐겨 듣는 아이돌 음악이 이용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많이 되었는데, 확성기 방송을 통해 음반을 틀어줄 경우 저작권자 등에게 저작권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하지 않아도 된다'이다.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 등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며,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⁵⁸⁾ 이러한 경우 저작권자 등은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의 조건으로 이용료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공중파, 라디오 또는 인터넷 방송이나 공연장에서 공연을 함에 있어서 음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 등에게 저작물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예외적인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등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음반을 틀 다음 단순히 확성기로 소리를 증폭시켜 북한의 군인 및 주민들에게 음악이 들리도록 했을 뿐이라면, 저작권법상 재생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저작물을 공개하는 '공연'에 해당할 수 있다.⁵⁹⁾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같은 항 단서 및 대통령령⁶⁰⁾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58) 저작권법 제46조.

59) 저작권법 제2조 제3호.

60)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따라서 전방에서 북한 군인과 주민을 상대로 확성기를 통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저작권자 등에게 저작권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공연할 수 있다.

Q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영화상영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영화상영 행사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주민센터 내에 있는 다목적실에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영화제작사나 배급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시민들에 대한 복지차원으로 무료 영화상영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다.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저작물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 행위에 해당한다.⁶¹⁾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공연의 방법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저작권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그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규정(이하 '비영리 공연')하고 있다.⁶²⁾

비영리 공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하므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DVD, 블루레이(Blu-ray) 등을 구매하여 이용하면 된다.

한편 비영리 공연을 핑계로 저작물의 이용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일정 조건 하에서 비영리 공연을 제한하고 있다.⁶³⁾

이 규정에 따라 저작권법 시행령에서는 비영리 공연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장소에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정 시설에서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이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즉, 발행

61) 저작권법 제2조 제3호.

62)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63)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단서.

된 지 오래되지 않은 최신 영상저작물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⁶⁴⁾

주민센터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 가목의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민센터에서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이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아도 무료 영화상영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참고로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4.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 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 「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64)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 나무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사.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사 박물관
 -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 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Q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운로드 한 이미지를 친구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싶은데, 저작권 침해가 될까?



우리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적 복제 규정을 두고 있다.⁶⁵⁾ 이처럼 사적 복제를 허용하는 이유는 가정과 같이 한정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이용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적고, 이에 대해 일일이 저작권자가 규제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개인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지털 복제기술이 발달한 현실에서 이러한 조항을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너무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사적 복제에 해당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⁶⁶⁾ 또한, 저작권법 제2조 제32호는 '공중'의 의미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인은 물론 '특정' 다수인까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30조를 근거로 저작물을 사적으로만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부서에 소속된 임직원만 사용하는 복사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사적 복제가 허용되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란 복제행위가 상호간에 강한 인적 결합관계가 있는 소수의 인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가령 친한 친구들 10명 내외가 모여서 취미활동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이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이나 여러 명의 대화 참여가 가능한 스마트폰 등과 같은 통신기기를 통한 저작물의 공유는 이러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 인원이 소수에 그친다 할지라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저작물을 업로드 하여 이용하는 것은 사적 복

65) 저작권법 제30조.

66) 저작권법 제30조 단서.

제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저장(복제)하여 친구 한두 명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될 것이지만,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상 카페, 스마트폰 채팅방,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거나 인적 유대관계가 없는 카페회원 전체에게 메일링 하는 등의 이용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판매되는 저작물을 구입하거나, 일시적 무료 체험판으로 제공되는 저작물을 다운로드하여, 다수의 사람들과 공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법상 사적 복제에 해당되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이 사건은 논문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식약청에 제출한 행위와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홈페이지나 신문 등에 게재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문제 제기한 사안으로, 법원은 저작권법 제30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으나,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Q

개인적 이용을 위해 책을 스캔(북 스캔)한 후 재판매 하는 경우

서점에서 구매한 새 책을 들고 다니면서 보는 것이 무겁고 불편하여, 북 스캔 전문업체에 스캔을 맡기거나 집에서 직접 스캔한 후 스마트폰 등에 파일을 옮겨서 읽으려고 한다. 스캔이 끝난 책은 중고서점 등에 다시 되팔아도 문제는 없을까?

A

최근 도서를 전문적으로 스캔하여 전자책 형태로 제공하는 소위 북 스캔 전문 업체들이 늘고 있다. 또한 일반 스캐너보다 상대적으로 고가였던 북 스캐너(도서 전용 스캐너)의 가격이 많이 낮아져 가정에 보급이 확산되고 있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간단한 촬영만으로도 북 스캐너를 이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도 하여 북 스캔이 더 이상 전문 업체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상황이 되었다.

휴대나 보관의 용이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서를 스캔하여 각종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독서를 즐기고 있는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스캔을 대행해 주는 북 스캔 업체의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로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다만, 구매한 도서를 가정에서 구비하고 있는 북 스캐너를 이용하여 직접 스캔하고, 스캔한 전자책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배포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이용할 경우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매한 도서를 스캔한 후 다시 중고시장에 되파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이러한 행위도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에 따라 저작재산권 제한사유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와 같은 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는 저작자의 정당한 권리와외의 관계에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여러 국가가 가입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베른협약,⁶⁷⁾ WTO/TRIPS⁶⁸⁾에서는 복제권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설정함에 있어서, ① 특별한 경우에 ②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③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

67) 베른협약 제9조 제2항.

68) WTO/TRIPS(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13조.

당하게 해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는 이른바 3단계 테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3단계 테스트에 비추어 사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휴대와 보관의 용이성이라는 북 스캔의 목적이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기 어렵고, 도서와 같은 어문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며, 스캔이 끝난 책을 중고시장에 되파는 경우에는 현재 또는 잠재적인 도서시장에 영향을 미쳐 출판업자 또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수 있다. 즉 3단계 테스트에 따르면 북 스캔을 하는 것은 복제권에 대한 제한과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 책을 스캔한 후에 중고시장에 되파는 행위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의 이용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을 방문하여 세종대왕 동상의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내 블로그에 게시하였는데, 혹시 세종대왕 동상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는 아닐까?

A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 등)이 일반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경우, 즉 사례처럼 일반 공중이 언제나 접근 가능한 장소인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을 배경으로 사진촬영을 하는 등의 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이를 저작권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 등이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①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②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③ 해당 미술저작물 등을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④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등과 같은 4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⁶⁹⁾

따라서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 하는 행위는 해당 조항에 의거하여 허용된다. 다만,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으므로 세종대왕 동상과 같은 미술저작물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복제하여 엽서나 캘린더 등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69)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Q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이용

사회복지관에서 시·청각장애 어린이들을 위해 명작동화들을 점자와 수화로 변환하고자 한다.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 전용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⁷⁰⁾ 여기서 시각장애인이란 단순히 시력이 낮거나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도 포함된다.⁷¹⁾ 이러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영리·비영리의 목적과 상관없이 누구나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로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조항은 디지털기기의 보급에 발맞추어 점자방식만이 아닌 녹음이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기록방식으로의 복제나 배포 또는 전송도 허용하고 있는데, 디지털 파일은 쉽게 점자나 오디오로 변환이 가능하기에 시각장애인들에게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파일의 특성상 쉽게 유출되어 저작권자에게 손실이 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러한 복제가 가능한 시설⁷²⁾과 일반인들이 이를 습득하더라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기술적 조치 등이 적용된 정보기록방식에 의하도록 하여 필요한 제한을 두고 있다.⁷³⁾

70) 저작권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71)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

72)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73)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 점자로 나타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
2.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 음성정보기록방식
4.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

한편 공표된 저작물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수화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수화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⁷⁴⁾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 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다.⁷⁵⁾ 여기서 청각장애인이란 단순히 청력이 낮아 들을 수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평형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⁷⁶⁾도 포함된다.⁷⁷⁾

따라서 사례의 공공기관이 각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명작동화들을 시·청각장애 어린이들을 위해서 점자와 수화로 변환할 수 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생활시설
 -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 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 학교
3. 국가·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

74)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2.

75) 저작권법 제33조의2 제2항.

7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77)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2 (복제 등이 허용된 청각장애인 등의 시설)

1.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 학교
3. 국가·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청각장애인 등의 교육·학술 또는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

Q

저작물의 공정이용

회사 내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책자에, 최신 문화이슈 관련 다양한 콘텐츠의 정보를 소개하면서 소재가 되는 책의 표지나 드라마 및 영화 장면의 스틸컷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이용해야 공정이용 일반 조항에 적용될 수 있는가?

A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또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부분인 것이다.

그럼 과연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위해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저작물의 공정이용⁷⁸⁾이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비평 목적의 글에서 타인의 이미지 저작물을 이용한 사건에 대해 공정이용 규정을 적용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부차적인 이용으로서, 게시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도 크지 않고, 원 저작물의 시장수요를 대체하지 않으며, 이용자들에게 공익적 가치가 인정되어 문화의 다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이는 공정이용으로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침해를 부정한 해당 판례는, 공정이용을 적용하여 판단할 근거로서 의의가 클 것이다. 다만, 이는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저작권법 제1조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어서는 저작자 등 권리자와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조화 속에서 찾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78)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본조신설 2011.1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5가소308746 판결.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한 목적 및 성격이 영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진이 피고의 게시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한 것이 이 사건 사진의 관련 시장 및 가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진의 크기 및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사진 이용은 피고가 비평 활동을 함에 있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저작권법 제35조의3이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Q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패러디

특정 영화 포스터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자신이 의도한 상황에 맞도록 제목이나 문구를 수정하고 주인공의 얼굴을 바꾸어 정치인 등을 풍자한 패러디들이 SNS 등 인터넷상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패러디물이 과연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패러디라고 볼 수 있을까?

A

패러디(Parody)란 사전적 의미로 특정 작품의 소재나 작가의 문체를 흉내 내어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수법을 말한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원저작물에 단순히 변형을 가하기만 하면 패러디라고 한다. 과연 이러한 패러디가 저작권법에서 허용되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변형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패러디 역시 이러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범위 내에 들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하다. 다만,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패러디이기 위해서는 원작의 비평 또는 풍자라는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⁷⁹⁾

따라서 특정 영화 포스터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자신이 의도한 상황에 맞도록 제목이나 문구를 수정하고 주인공의 얼굴을 바꾸어 원작 자체를 비평, 풍자하기보다는 특정 정치인이나 사회 현실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패러디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패러디가 되기 위해서는 원작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원저작물과는 다른 기능을 해야 하며, 원작을 떠올리게 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동일성유지권·복제권·2차적저작물작성권⁸⁰⁾ 등의 침해가 될 수 있다.

79) 서울지방법원 2001. 11. 1.자 2001카합1837 결정. 원작 자체를 비평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직접패러디'라고 하고, 정치나 사회 현상 등 사회 현실을 풍자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패러디를 '매개 패러디'라고 한다. '서태지의 컴백홀' 사건에서는 '패러디로서 보호되는 것은 해당 저작물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인 것이지 해당 저작물이 아닌 사회 현실에 대한 것까지 패러디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80) 저작권법 제13조, 저작권법 제16조, 저작권법 제22조.

결론적으로 원작 자체를 비평, 풍자하는 패러디는 재창작으로써 저작권법상 허용되고 장려되어야 할 것이지만, 단순히 흥미를 유발하거나 원저작물을 연상시켜 관심을 끌기 위한 패러디는 모방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서울지방법원 2001. 11. 1.자 2001카합1837 결정.

이 사건은 패러디한 노래를 만들어 음반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데 대하여 원곡 가수 측에서 가처분신청을 한 사건인데, 법원은 “이 사건 개사곡은 원곡에 나타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흉내 내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일 뿐, 원곡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 사건의 원곡을 이용하였으며, 원곡을 인용한 정도가 패러디로서 의도하는 바를 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곡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저하나 잠재적 수요의 하락이 전혀 없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패러디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해당 패러디를 공정한 인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 도서관과 저작권

- | | | |
|----|-------------------------------|-----|
| 01 | 도서관에서의
개인 스캐너 이용 | 108 |
| 02 | 도서관 DVD 관외대출 | 109 |
| 03 | 도서관 소장 자료의
디지털 복제 | 111 |
| 04 | 도서관 내에서
자동 복사기기를 이용한
복제 | 113 |

Q

도서관에서의 개인 스캐너 이용

저작권재산권 제한사유 중에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이 있다. 그렇다면 개인이 도서관에 갈 때 본인의 스캐너를 가지고 가서 책 전체를 스캔하는 것도 위 규정의 적용을 받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까?



저작권법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을 두고 있다.⁸¹⁾ 그러나 공중의 사용에 의하여 설치된 복사기에 의한 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⁸²⁾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는 도서관 등에 비치된 복사기를 통해 도서 등을 일부 복제하는 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서관에 개인이 스캐너를 가지고 가서 책 전체를 스캔하는 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물론 스캔한 책을 복제하여 배포하거나, 온라인상에 업로드 하는 행위는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등의 침해에 해당할 것이다. 다만 개인적 소장만을 위한 스캔 행위라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도 있지만,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위 조항을 폭넓게 해석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너무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위 사례의 경우 각 도서관마다 별도 규정을 마련하여 ‘개인이 지참한 스캐너의 사용을 금지한다’ 는 등의 고지를 통해 이용을 제한해 주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81) 저작권법 제30조.

82) 저작권법 제30조 단서.

Q

도서관 DVD 관외대출

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DVD를 대여해주는 경우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스스로 배포하거나 이를 금지시킬 배타적 권리를 가지며,⁸³⁾ 배포란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⁸⁴⁾을 말한다. 다만 저작물을 적법하게 판매한 이후에도 배포권을 인정한다면, 저작물의 거래에 있어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을 초래하므로 저작권법⁸⁵⁾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1회의 판매로써 소진된다는 '권리소진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만약 도서관에서 대여용으로 제공하는 DVD가 정식으로 발매되어 유통된 것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불법 복제물이라고 한다면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어 도서관이 배포권 침해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DVD를 정식판매처를 통하여 구매한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 따라 일반 이용자들에게 대여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배포권만 제한되어 해당 DVD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을 뿐이므로 다른 형태의 저작물 이용(공연, 공중송신, 복제 등)은 저작권자의 별도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청중이나 관중에게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 즉 공연의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으므로 도서관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장 DVD를 이용하여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도서관은 시행령⁸⁶⁾ 상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영상저작물을 재생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의 주의를 요한다. 더불어 도서관이 직접 영상을 재생하여 공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용객이 도서

83) 저작권법 제20조.

84) 저작권법 제2조 제23호.

85) 저작권법 제20조 단서.

86)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

관의 시청각실을 통해 재생하는 것 역시 도서관에서 재생하여 공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용자로 하여금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DVD에 대해서는 시청각실 등 도서관 내부시설을 이용하여 재생할 수 없도록 도서관 규정을 마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Q

도서관 소장 자료의 디지털 복제

대학 도서관에서 교수나 학생들이 연구 등의 목적으로 소장 자료의 PDF 파일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소장 자료를 디지털 파일로 제공해도 문제가 없는가?



도서관은 다양한 저작물을 수집, 정리, 보존하여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술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성격상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복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요 업무가 된다. 이런 이유로 저작권법은 도서관에 대해 일정한 경우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⁸⁷⁾

첫째, 이용자의 복제 요구가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며, 그 대상은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용자의 요구가 있기도 전에 도서관이 미리 예상되는 수요를 복제하여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도서관이 미공표저작물을 소장하고 있더라도 이를 이용자에게 복제하여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저작물의 일부분을 1인 1부에 한하여 복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일부분'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다. 그러나 호주의 경우에는 총면수의 10%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주요 도서관은 내규에 따라 국회도서관은 2분의 1로, 국립중앙도서관은 3분의 1로 정해 놓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디지털 형태로는 복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경우, 이러한 디지털 파일이 온라인을 통해 쉽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87)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결국 위와 같은 요건에 따라 이용자들이 연구의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를 디지털 형태의 파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더라도, 도서관이 아날로그 형태가 아닌 디지털 형태로 자료를 복제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Q

도서관 내에서 자동 복사기기를 이용한 복제

도서관 내에 자동 복사기기가 설치되어 있어 소장 도서를 직접 복제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가?



저작권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에서의 복제의 주체는 도서관이므로, 도서관 측에 복제를 요청하지 않고 자동 복사기기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복제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저작권법은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은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것은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⁸⁸⁾ 도서관 내에 설치된 자동 복사기기를 통한 복제는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현실적으로 개별권리자와 이용자가 직접적인 복제 이용허락계약을 매번 체결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권리를 신탁 받아 행사하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통해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이 가능할 것인데, 현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자동 복사기기 운영업체가 포괄이용 허락방식을 통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체결이 이루어진 자동 복사기기에서의 복제는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88) 저작권법 제30조 단서.

○ 교육목적 이용과 저작권

- | | | |
|----|---------------------------|-----|
| 01 | 학교 교육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 116 |
| 02 | 수업목적 보상금 지급과 학교 교육목적에의 이용 | 119 |
| 03 | 수업지원 교육기관의 범위 | 122 |
| 04 | 기출문제의 이용 | 124 |

Q

학교 교육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중학교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복사하여 나눠 주고 있다. 그런데 이를 분실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학교 홈페이지 내에 있는 학습 자료실에 올리려고 한다. 수업에 도움이 될 만한 보충자료들도 같이 게시하려고 하는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로서 허용되는가?

A

학교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저작물들을 이용하게 된다. 그런데 교육기관이 일일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면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교육 자체가 위축될 우려도 있다. 이런 이유로 저작권법은 공익의 측면에서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⁸⁹⁾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를 제외하고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수업목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⁹⁰⁾

그런데 많은 교육기관들이 이 같은 규정을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라면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대해석을 하는 사례를 다수 접하게 된다. 저작권법은 그 범위를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수업의 주 내용과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복제 등이 허용된다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교내 환경미화 등에 이용하기 위해 저작물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교육목적에 속하더라도 수업목적상 필요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저작물의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라고 할지라

89)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90)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

도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복제의 부수와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 1인당 1부씩 배부되는 범위 내에서 복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업목적상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저작물을 통째로 복제하거나 여러 개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하나의 편집물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학교 등에서의 복제 행위로 현재 시판물의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장래에 저작물의 잠재적 판로를 저해하지 않는지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사례로 돌아가서, 수업시간에 수업을 하는 교사가 주체가 되어 직접적인 교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수업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저작물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따라서 수업시간에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를 인터넷상에 업로드(전송)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이때에는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⁹¹⁾

한편 수업시간 이외에도 일반인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거나, 단순히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관련 학습 자료들을 게시하는 경우라면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며, 이는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거나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저해할 염려가 큰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최근 사이버교육이 일반화됨에 따라 평생교육원과 같은 원격교육기관들을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수업목적상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한 후,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만이 위 법 규정이 적용되는 교육기관에 해당하고,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함에 따라 정식의 학위가 수여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91)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

따라서 위와 같이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원격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의 저작권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지 아니하므로, 수업목적의 교재를 제작함에 있어서는 그 이용하려는 개별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위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시가 적용되는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도 그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에 대하여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14.자 2011카합709 결정.

이 사건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제공함에 있어서,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의 지문을 그대로 칠판에 적거나 그 지문을 낭독하고 이를 설명하는 음성을 녹화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동영상 파일과 위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의 내용의 복제본을 수업자료로 활용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교육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 공연, 전송할 수 있는 주체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로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위와 같은 동영상 파일 및 수업자료를 제공한 행위 등이 각 교과서와 평가문제집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Q

수업목적 보상금 지급과 학교 교육목적에의 이용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듣자 하니 대학에서 수업목적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수업시간에 논문이나 도서, 신문기사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저작권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A

학교 또는 교육지원기관의 경우 교육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저작물을 수업 또는 지원 목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상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저작물을 이용하는 모든 경우에 일일이 이용허락을 받도록 할 경우 비용이나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교육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작권법은 학교 또는 교육지원기관이 수업 또는 지원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수업목적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⁹²⁾

대학의 경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 2014-8호)'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현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포괄적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업목적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전임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등)은 수업목적⁹³⁾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고, 수업을 받는 재학생·휴학생 제외은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여기에서 '수업목적'이란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대학의 장에 의한 관리, 감독하의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 포함)에 제공할 목적을 말하고, 대학에서 수업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일부분'은 아래와 같다.⁹⁴⁾

92)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 단서.

93) 저작권법 제25조의 제목이 제1항의 내용 때문에 '학교교육 목적'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제2항의 '수업목적에의 이용'을 훨씬 더 넓고 포괄적인 '학교교육 목적'으로 확대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94)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협의체에서 작성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2015. 6.)을 요약한 내용이다.

㉮ 저작물 유형별 수업목적 보상금 지급 기준

어문저작물

논문, 소설, 수필, 시 등과 같은 어문저작물은 그 어문저작물 전체의 1% 이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으로써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10% 미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에 의한 적법한 이용이 된다. 단,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음악저작물

음악저작물 전체의 5% 이내(최대 30초)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으로써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20% 미만(최대 5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에 의한 적법한 이용이 된다. 단,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악보 등이 절판되어 시중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악보 등을 복제, 배포하여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에 의한 적법한 이용이 된다.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 전체의 5% 이내(최대 30초)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으로써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20% 미만(최대 15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에 의한 적법한 이용이 된다. 단,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편집 등에 특정한 기술과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여 영상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하더라도 보상금 지급에 의한 적법한 이용대상이 된다.

사진·그림 등 이미지저작물

사진·그림 등과 같은 이미지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그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부를 이용하더라도 보상금 지급에 의한 적법한 이용이 된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수업목적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아니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외국저작물

외국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이상 위와 같은 유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저작물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공유저작물(Public Domain), CCL(Creative Commons License) 표시 저작물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공유저작물은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이용조건에 관한 의사를 저작물에 표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CCL표시를 한 저작물은 해당 이용조건 및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Q

수업지원 교육기관의 범위

교육기관의 수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이 제한되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되었다고 한다. 이에 해당하는 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A

저작권법은 각급 학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수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의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⁹⁵⁾

2009년 개정 이전 저작권법은 교육기관에서 실제 수업의 주체가 되어 수업을 담당하는 자만이 복제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이 교사들의 수업지원을 위해 저작물의 복제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일일이 받아야 했다. 이런 이유로 교육지원청이 직접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각 학교에 제공하려 하거나, 일선 학교 교사에 의해 만들어진 양질의 교육 자료를 여러 학교가 함께 공유하고자 하더라도, 이를 복제 등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면책규정이 없다는 점 때문에 수업지원을 위한 자료의 제작이나 공유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2009년도 개정 이전의 저작권법에 의하면 교육기관의 수업지원을 위해 자료를 제작하거나 만들어진 자료를 공유하면 저작권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반면, 이러한 결과물로 만들어진 교육 자료를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에 2009년도에 저작권법을 개정함으로써 각급 학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수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추후 보상금만 지급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으려면, 수업지원의 대상을 너무 폭넓게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수업지원 기관에 해당하는 교육지원기관의 구성원

95)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의 신분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한다. 학교나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지원센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나, 공무원 신분이 아닌 한국교육개발원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의 직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⁹⁶⁾

96)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합한 개정 저작권법 해설」, 2009, 29쪽.

Q

기출문제의 이용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과거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들을 모아서 연도별로 수록해 잡지를 발행하고자 한다. 이 같이 과거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이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까?



창작성 있는 기출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기출문제를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어야 하므로, 기출문제가 저작권법상의 보호 받는 저작물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시험문제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례는 “1993년 말 시행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의 대학입학 본고사의 입시문제가 역사적 사실이나 자연과학적인 원리에 대한 인식의 정도나 외국어의 해독능력 등을 묻는 것이고 또한 교과서, 참고서 기타 교재의 일정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그 출제한 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⁹⁷⁾

따라서 과거 출제되었던 창작성 있는 기출문제는 저작권법상 보호 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기출문제를 이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저작권법은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

97)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지 않는다.⁹⁸⁾ 따라서 교육 관련 잡지를 영리 목적으로 출판하고 있다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1고단1583 판결.

이 사건은 의사 및 간호사 국가시험 출제문제의 저작권자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복원하여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하여 기출문제집 형태로 출간하여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 사안으로, 법원은 “출제된 시험문제는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교수들이 문제은행에 저장된 문제들 중에서 선정한 후 수정·보완을 거친 것으로서,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책에 실은 문제와 실제 문제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하였다.

98) 저작권법 제32조.

○ 저작권의 보호기간

- | | | |
|----|-----------------------------------|-----|
| 01 | 오래된 영화의 이용과
저작권 보호기간 | 128 |
| 02 |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이용 | 130 |
| 03 | 생일축하노래
(Happy Birthday To You) | 131 |

Q

오래된 영화의 이용과 저작권 보호기간

유명 화가인 클림트(Gustav Klimt)의 영화 '키스'를 티셔츠에 프린트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싶다. 오래된 작품이고 저작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보호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들었다. 얼마나 연장된 것인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자동적으로 발생하지만 영구적으로 존속하는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목적의 영리성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한·EU FTA 체결 이전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간 저작권을 보호하였다. 그러나 한·EU FTA와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그 이행법안으로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 일 이전에 이미 만료된 권리는 연장하여 보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법에 의해 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된다 하더라도, 1918년 사망한 화가 클림트의 영화 '키스'는 이미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여 상품화할 수 있다. 다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자가 사망함과 동시에 소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작자 사망 후에도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⁹⁹⁾

사례로 살펴보면,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2000년 12월 5일에 저작자가 사망했거나 저작물이 창작 또는 공표되었다면 2001년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결국 해당 저작물은 2070년 12월 31일까지 보호된다.

99)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한편 구법과 현행법을 고려하여 보호기간을 쉽게 적용시켜 볼 수 있다. 즉 저작자가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하였거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여 발행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기산되는 저작물의 경우에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되었다면 2013년 7월 1일 시행된 보호기간의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 헤르만 헤세 : 1962년 사망

- 보호기간 : 1963. 1. 1. ~ 2012. 12. 31.

- 대표작품 :데미안, 유리알 유희, 수레바퀴 밑에서 등

▶ 염상섭 : 1963년 사망

- 보호기간 : 1964. 1. 1. ~ 2033. 12. 31.

- 대표작품 : 만세전, 삼대, 표본실의 청개구리 등

Q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이용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저작권은 영구적으로 그 권리가 보호되는가?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영구히 존속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지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공유저작물(Public Domain)이 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해 새로운 창작과 문화발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1957년 당시 보호기간을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30년까지로 정하고 있었으며, 법인 등의 이름으로 공표된 단체명의저작물(현 업무상저작물)에 대하여는 발행 또는 공연한 날로부터 30년간 보호하고 있었다. 그 후 1986년 저작자 사후 50년간 보호(단체명의저작물은 공표 후 50년)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는데, 1987년 저작권법 개정 당시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개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경과 규정을 두었다. 결국 이에 따라 1956년 12월 31일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하였거나, 법인의 이름으로 공표된 저작물은 현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상업적 용도를 포함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이 아닌 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웹사이트(<http://gongu.copyright.or.kr>)를 방문하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저작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한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다.

Q

생일축하노래(Happy Birthday To You)

레스토랑에서 생일을 맞은 고객을 대상으로 생일축하 파티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생일축하노래(Happy Birthday To You)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해야 하나?



생일축하노래를 부르는 것은 저작권법 상 ‘공연’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불리는 생일축하노래(Happy Birthday To You)에 대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하여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은 1893년에 Hill 자매가 작곡한 생일축하노래의 원곡 ‘굿모닝 투 올(Good morning to All)’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확인¹⁰⁰⁾하였다. 뿐만 아니라, 생일축하노래의 가사에 대해서는 1935년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¹⁰¹⁾되기 이전인 1922년에 이미 다른 가사집에서 해당 가사가 출판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등록의 추정력을 배제하면서, Warner/Chappell Music이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생일축하노래 가사는 공유저작물(Public domain)에 속하는 것¹⁰²⁾으로 마무리 지어졌다. 다만, 법원은 음악 자체가 아닌 해당 음악을 피아노로 연주한 실연에 대해서는 Warner/Chappell Music에게 인접권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해당 피아노연주 음반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해야 한다. 다만, Warner/Chappell이 항소할 경우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사안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100) *Marya v. Warner/Chappell Music, Inc.*, 2015 WL 5568497.

101) 생일축하노래의 원곡인 ‘Good Morning to All’의 출판사였던 the Summy Co.,가 1935년에 해당 곡을 출판하고 업무상저작물(A work for hire)로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하였다. 판결 이전에는 Warner/Chappell Music가 the Summy Co.,를 인수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을 주장하고 저작권료를 징수해왔다.

102) 법원은 해당 가사의 저작권자가 피고(Warner/Chappell Music)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인 생일축하노래이용자들이 피고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결과적으로는 해당 가사가 1922년에 출판된 이후에 저작권청에 등록하는 등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1951년에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 국가의 법에 따라 기산¹⁰³⁾한다. 생일축하노래를 우리나라에서 이용하는 경우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내법상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났다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할 경우 Hill 자매의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가장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가장 나중에 사망한 Patty Hill은 1946년 5월 25에 사망하였고 당시 법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30년이므로 1976년 12월 31일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이미 만료¹⁰⁴⁾하였다고 볼 수 있다.

103)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수단은 오로지 보호가 요구된 국가의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라고 하여 베른조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면 ‘침해가 일어난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와 학설의 입장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제3조에 따르면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한 것으로 본다.

104) 저작권보호기간이 2011년 개정 저작권법에 의해 기존의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지만, 부칙에 따르면 이미 개정 이전에 소멸한 권리에 대해서는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양도

- | | | |
|----|------------------------------------|-----|
| 01 | 저작물의 이용허락 계약 | 136 |
| 02 | 추후 저작권료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한 후 이용 | 138 |
| 03 | 공모전과 저작권의 양도 | 139 |
| 04 | CCL표시와 저작물의 이용 | 141 |

Q

저작물의 이용허락 계약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 저작재산권자와 이용자가 맺는 계약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법 제46 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 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허락'은 저작재산권 양도의 경우와는 달리, 저작재산 권자가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단지 허락을 받은 타인이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정당화시켜 주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다시 '단순 이용허락'과 '독점적 이용허락'으로 나눌 수 있다. 단순 이용허락이란 저작재산권자가 복수의 사람들에게 중첩적으로 이용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경우로서 이에 의하여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반면 독점적 이용허락은 저작 재산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도 단순 이용허락을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저작재산권자가 이용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해 준 경우, 다른 이용자를 상대로 직접 독자적으로 침해정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저작재산권자를 상대로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재산권자를 대위하여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는다.¹⁰⁵⁾

또한 여기서 '이용 방법 및 조건'이란 예컨대 저작물의 출판부수, 계약기간, 방송시간, 공연장소 등과 같이 저작재산권자와 이용자가 저작물 이용 형태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105)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다44138 판결.

정하는 사항을 말하는데, 이러한 계약 해석에 대하여 서로 의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이용허락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를 보호하고 저작권 관련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발표했다.¹⁰⁶⁾ 이용자와 저작재산권자가 이용허락 계약 시 이를 참고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4894 판결.

이 사건은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계약에 있어 이용허락 범위의 해석 방법이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법원은 “음반제작자와 저작재산권자 사이에 체결된 이용허락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이용허락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이용허락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이용허락 당시 해당 음악저작물의 이용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이용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해당 음악저작물의 이용방법이 기존 음반시장을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이용허락의 범위를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였다.

106)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제공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3855).

Q

추후 저작권료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한 후 이용

인터넷에서 발견한 사진을 이용하고 싶어서 저작권자를 찾으려 노력해 봤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추후 저작권자가 나타나면 보상하겠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A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저작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반면,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저작물의 권리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저작물을 게시하고 있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웹사이트에 있는 저작물을 허락받고 이용하는 것이 때로는 불가능한 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저작권은 배타적 독점권이므로 저작권법 제23조 내지 제36조에서 규정한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 이외에 저작권자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된다. 즉 추후 저작권자가 나타나면 이용료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될 수는 없다.

따라서 웹사이트에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저작권자를 찾아 허락을 받거나 혹은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권리자를 알 수 있는 다른 이미지로 대체하여 이용허락을 받아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Q

공모전과 저작권의 양도

공모전 개최 시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한다”라는 문구가 저작권법상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갖는가?



공모전 개최 시 수상작에 대한 권리 귀속 문구를 표시해 놓은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우수작에 대한 소유권은 주최 측에 귀속된다”,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귀속된다” 등과 같이 불확실한 문구를 사용하여 저작권 귀속 여부가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교적 명확하게 “저작권 (혹은 저작재산권) 일체를 귀속한다” 라고 표현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모전을 통해 주최 측이 가지는 권리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공모전을 통한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상의 현상광고에 해당한다.¹⁰⁷⁾ 특히 일정한 응모 기간을 지정한 뒤 이러한 행위를 완료한 자 가운데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우수현상광고라고 한다.¹⁰⁸⁾ 우수현상광고 시 제시된 저작권 귀속에 대한 조건에 따라 저작권은 주최 측 또는 주최 측이 지정하는 자에게 귀속되며, 주최 측은 이에 대한 대가를 수상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우수현상광고를 통해 우수작으로 선정되더라도, 이때 지급받는 상금이 일반적인 저작권 양도 대가나 저작물 이용료에 비하여 매우 낮거나, 주최 측과 응모자의 관계가 현저한 불균형 상태에 있어 응모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때에는 민법상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공모전은 여러 입상작을 뽑은 뒤 일정 순위에 따라 대가를 달리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역시 모든 응모작에 대해 동일한 권리를 귀속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 4개 기관의 건축설계경기운영지

107) 민법 제675조.

108) 민법 제678조.

침 가운데 “건축설계공모전 입상자들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라는 조항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발주기관이 설계자의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전부 양도받는 조항으로서, 그 양도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설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공모전 주최 측은 응모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있지 않은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모전에 응모하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¹⁰⁹⁾ 공모전 관련 저작권 계약 시 이를 참고한다면 응모자와 이용자 양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109)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제공 (http://www.mcst.go.kr/web/s_notice/notice/noticeView.jsp?pFlagJob=N&pSeq=9074).

Q

CCL표시와 저작물의 이용

아마추어 작곡가이다. 창작곡을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 하면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싶다. 어떻게 표시해야 효과적인가?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내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표시하는 것도 애매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CCL표시이다.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제도 중 하나인 CCL(Creative Commons License, <http://cckorea.org>)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 표시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시하고, 이용자들은 그 방법과 조건 내에서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즉 저작자의 공유의사를 간편하게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저작권자가 일정한 조건과 범위를 정해 제3자에게 허락하는 폐쇄형 방식인 반면,¹¹⁰⁾ CCL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을 허락하되 이용불가 조건을 명시하여 권리를 유보하는 개방형 방식이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CCL의 6가지 라이선스 중 원하는 라이선스를 선택한 뒤 저작물에 첨부하고, 이용자는 첨부된 라이선스를 확인 후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들 사이에 개별적인 확인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 2013년 11월 26일에는 CCL 4.0이 발표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CCL로 데이터베이스(이하, DB)에 대한 권리의 이용허락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공공데이터 등 DB에 대한 이용허락도 간편해졌다. 그러나 이용허락을 하는 저작권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DB에 대하여 CCL을 적용함으로써 DB의 복제를 허용하는 것이 된다. 즉 홈페이지 전체에 대하여 CCL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 전체를 복제하여도 무방하다는 의미가 되므로, DB에 대하여 CCL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110)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둘째, 전 세계적으로 CCL이 'CCL 4.0 국제 라이선스'라는 단일한 버전으로 통합되었다. CCL은 최초 출범 당시부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약속이었지만, 개별 국가별로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각 국가마다 자국법에 부합하는 CCL 버전을 따로 갖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번의 업그레이드를 거쳐 CCL 2.0 대한민국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CCL 4.0이 각 국가의 사정을 고려하여 전 세계의 CCL을 통합하는 형태로 출범함에 따라 이제 단일한 CCL 4.0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① 콘텐츠 이용에 필요한 한도에서 초상권, 사생활권, 저작권격권 등의 허락이 가능하도록 하고(우리나라에서는 이미 CCL 2.0만으로도 가능한 상황), ② 저작자의 표시 방식에 있어서도 콘텐츠의 저작자와 제목을 병기해야 했던 과거의 방식과는 달리, 저작자만 표시해도 무방할 뿐만 아니라 출처 표시를 한번에 몰아서 하는 크레딧 페이지 방법도 정식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③ 콘텐츠 이용자가 CCL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 이용자에게 30일의 정정기간을 부여하여 콘텐츠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며, 끝으로 ④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자가 그 성명의 표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특히 사례와 관련하여 'CC-BY-NC'라고 표기할 경우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뜻이 된다. CCL라이선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http://cckorea.org>)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라이선스	이용조건	문자표기
	저작자표시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CC BY
	저작자표시 - 비영리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CC BY-NC
	저작자표시 - 변경금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CC BY-ND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2차적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CC BY-SA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를 밝히면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2차적저작물 에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CC BY-NC-SA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CC BY-NC- ND

○ 출판과 저작권

- | | | |
|----|-------------|-----|
| 01 | 사망한 저작자의 권리 | 146 |
| 02 | 출판권 계약 | 148 |
| 03 | 배타적발행권 | 150 |

Q

사망한 저작자의 권리

저작자가 2016년 4월에 사망하였으나, 해당 도서의 1/2 이상 수정하여 새롭게 발간하고자 할 경우, 해당 개정판에 사망한 저작자의 성명표시를 해야 하는가? 더불어 개정판에 대한 저작권료를 유족들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A

출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 계약 또는 출판권 설정계약을 통하여 합법적인 출판을 가능하다. 해당 출판사에서 저작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저서를 발간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발간하고자 할 경우 이전에 체결되었던 계약 내용 및 계약 기간이 중요할 것인데, 출판권의 경우 그 설정 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¹¹⁾

저작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유족 등의 상속인은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¹¹²⁾ 따라서 생전행위의 효력대로 유지되며, 사망 전 체결한 출판권 설정계약이나 이용허락계약 내용도 상속인인 유족들에게 승계되므로, 그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판을 발간함에 있어서 기존 도서의 내용을 토대로 일부 수정하여 작성하였다면 사망한 저작자가 작성한 부분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경우 성명을 표시하여야 성명표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저작자와 출판사와의 계약이 아직 계약기간 내에 있고, 기존 도서의 1/2 이상을 수정하여 발간하는 것에 대하여 사망 전에 협의된 내용이라면 그대로 진행하여도 무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계약내용 중 저작권료의 지급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있었다면 저작권료의 수령인은 상속인이 되고, 출판사에서는 상속인인 유족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저작자와 체결된 출판권 설정계약 또는 이용허락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기존 도서의 1/2 이상을 수정하여 개정판을 발간하거나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부분이라면 유족과 다시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

111) 저작권법 제59조 제1항, 저작권법 제63조의2.

112) 민법 제997조, 민법 제1005조.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정판 제작 시 공저자가 기존 원고를 1/2이상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창작에 기여한 바가 있고, 새롭게 추가한 부분에 대하여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공저자들도 본인이 창작한 부분에 대하여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

Q

출판권 계약

A출판사와 출판권 설정계약을 맺고 원고를 출판사에 제공하였는데 1년이 지나도록 출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B출판사가 이 저작물에 관심을 보여 이곳과 계약을 맺고 출판을 진행하고 싶는데 문제가 되는가?

A

출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 계약 또는 출판권 설정계약을 통하여 합법적인 출판을 가능하다. 이는 저작권법 제63조 '출판권의 설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배타적발행권의 도입에 따라 기존 출판권이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특례로 규정되면서 배타적발행권에 관한 규정을 상당부분 준용하고 있다.¹¹³⁾

출판권 설정을 받은 출판권자는 원작을 있는 그대로 복제·배포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 받는다.¹¹⁴⁾ 따라서 원작에 대한 복제 및 배포권 침해가 있을 경우 출판권자는 독자적으로 침해자에게 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¹¹⁵⁾ 그러나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월 이내에 이를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만 하고,¹¹⁶⁾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¹¹⁷⁾ 의무가 있다. 만약 위의 두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복제권자는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¹¹⁸⁾

따라서 제시된 것과 같은 상황이라면, 9월 이내에 A출판사가 원고를 출판하지 않았으므로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을 진행되지 않는다면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한 뒤, B출판사와 출판권 설정 계약을 맺어 출판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A출판사가 원고를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

113) 저작권법 제63조의2.

114) 저작권법 제63조 제2항.

115)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도3115 판결.

116) 저작권법 제58조 제1항.

117) 저작권법 제58조 제2항.

118) 저작권법 제60조 제1항.

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면 앞서 설명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¹¹⁹⁾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도3115 판결.

일반적으로 출판이라 함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 즉 복제·배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저작권법 제54조 제2항(현 제63조 제2항)이 '출판권을 설정 받은 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 중 '원작 그대로'라고 함은 원작을 개작하거나 번역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지 않고 출판하는 것을 의미할 뿐 원작의 전부를 출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달리 원작의 전부를 복제·배포하는 것만을 출판으로 볼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침해자가 출판된 저작물을 전부 복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중 상당한 양을 복제한 경우에는 출판권자의 출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저자의 표시를 달리하였다고 하여 출판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119) 저작권법 제60조 제2항.

Q

배타적발행권

출판사와 e-book(전자책)용 출판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출판권 계약 이외에 배타적발행권은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저작물의 출판(출판권설정)과 컴퓨터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대상으로 배타적 설정행위가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아날로그 출판 이외에 전자 출판 등 다양한 저작물 이용형태의 발행에 대해서도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복제·배포 등의 발행은 물론 복제와 전송 행위까지 포괄해 설정할 수 있는 배타적발행권 규정이 도입되었다.¹²⁰⁾

이전에 출판사들은 종이책 출판에 대해서는 저작자로부터 저작권법상 준물권적 성격을 가지는 출판권 설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출판권에는 인터넷 유통과 관련한 전송권이 포함되지 않아 e-book(전자책)의 제작·유통을 위해서는 공중송신권에 관한 별도의 이용계약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도입된 배타적발행권으로 전자책과 관련한 권리도 출판권과 같이 준물권적 성격을 갖는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이중 계약의 체결을 막을 수 있고 무단전송 행위에도 직접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배타적발행권이 새롭게 도입되었다고 해서 기존에 설정 받은 출판권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비록 조문의 규정 형식은 달라졌지만 출판권 설정에 대해서는 기존 출판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배타적발행권의 도입에 따라 기존 출판권은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특례로 규정됐다. 그리고 기존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은 개정된 배타적발행권과 중복됨에 따라 법조항에서 삭제되었다.

독점적인 이용허락계약과의 차이점은, 독점계약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채권적인 효력만 발생할 뿐, 제3자에 대한 대세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에 있어 대항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가 직접 제3자의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경

¹²⁰⁾ 저작권법 제57조.

우라면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금지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반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 자(배타적발행권자)는 설정한 권리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향유하기 때문에 권리자에게 별도의 권리위임을 받지 않고도 소송 등 구제행위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다52304, 52311 판결.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의 사이에 국내에서의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이 체결되어 그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배타적발행권까지 설정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국내 독점적 사용권 등을 부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계약상 제 3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위 저작권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 및 그 대응 여부와 대응의 명의와 비용은 위 저작권자에게 그 결정이 유보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이 설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 저작권

○ 저작권접권

- 01 저작권접권 보호기간에
관한 특례 154
- 02 영상저작물 출연자의 권리 155

Q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에 관한 특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연말을 맞아 크리스마스 관련 상품과 함께 분위기 있는 음악을 틀어주고 싶다. 작곡가들이 고인이 된 지 100년이 넘는 유명 캐럴을 이용하고 싶은데 해당 음원을 업로드 해도 문제가 없을까?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 외에도, 가수·배우 등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사업자와 같은 저작물의 전달자들에게도 저작권에 준하는 저작인접권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업로드 하려고 하는 음반 안에는 작사·작곡가의 저작권과 노래를 부르거나 곡을 연주한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그것을 녹음한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캐럴의 음원을 홈페이지에 업로드, 즉 복제·전송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함께 구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캐럴을 찾아 직접 연주하여 이용을 한다면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겠지만, 만일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제작된 음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음악일지라도 저작인접권을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한다.

한편 한·미 FTA가 체결됨에 따라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도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된 때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다. 다만,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음반 시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시행까지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개정된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에 대한 규정 적용은 2013년 8월 1일부터이므로, 2012년에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음반에 대한 연장은 없다.

또한 우리 저작권법은 각각 1987년에는 20년, 1994년에는 50년을 기준으로 음반이 발매된 해에 따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달리 규정하여 그 형평성이 문제가 되어왔기에,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하여 현재 일부 소멸된 저작인접권을 회복하여 50년간 보호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였다.¹²¹⁾

121) 저작권법 부칙 제11110호 제4조 제1항.

Q

영상저작물 출연자의 권리

TV 방송사는 최근 댄스 가수들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에 주목하여 인기 가수들을 섭외하여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녹화 후 방송하여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다. 이후 국내외에서 위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자 가창 부분을 제외하고 댄스를 실연한 부분만 편집하여 판매용 DVD 제작까지 고려하고 있다. TV 방송사는 위 녹화방송된 프로그램을 편집하여 판매용 DVD 제작에 별다른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을까?



TV 방송사가 방송용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 사안에서와 같이 그 전체를 기 확하고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영상제작자¹²²⁾로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댄스 가수들도 스스로 음악을 작사·작곡하거나 안무를 짜지 않은 경우에도 저작물을 가창, 연주 또는 무용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실연자로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위와 같이 다양한 인력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제작 및 이용이 저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100조 제3항에서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에게는 방송을 위하여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는 권한도 인정된다.¹²³⁾

결국 사안의 TV 방송사는 영상제작자이자 방송사업자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참여한 실연자의 이익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연자의 권리는 사전에 실연자와의 사이에 합의된 목적으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한정되고, 방송사업자로서 저작물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는 권한도 원활한 방송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허용될 뿐이다.

122)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

123) 저작권법 제34조 제1항.

따라서 사안에서 사전에 별도의 합의가 성립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TV 방송사가 댄스 가수들의 실연을 녹화한 TV 방송용 프로그램 중 댄스 실연 부분만을 편집하여 판매용 DVD로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도2856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저작물 중에서 특정 배우들의 실연장면만을 모아 가라오케용 엘디(LD)음반을 제작하는 것은, 그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 데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영화배우들의 실연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엘디(LD)음반에 녹화하는 권리는 구 저작권법(1994. 1. 7.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에 의하여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권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다.

○ 프로그램과 저작권

- | | | |
|----|------------------------------------|-----|
| 01 | 무료폰트 | 160 |
| 02 | 프로그램 번들로 제공되는
폰트 | 162 |
| 03 | 용역개발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발주처의
소스코드 요구 | 163 |
| 04 | 중고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프로그램 | 165 |
| 05 | 정품 프로그램의
시리얼 번호를
온라인 카페에 게시 | 167 |
| 06 | 프로그램 설치 파일의 복제 | 169 |
| 07 | 프로그램코드역분석 | 170 |

Q

무료폰트

네이버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폰트를 내려 받았다. 그 폰트를 이용해 포스터를 제작한 후 블로그에 올렸더니, A법무법인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상당한 액수의 폰트패키지를 구매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합법적인 무료폰트를 내려 받아 이용했는데, 이것도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



세상에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기에 무료제공의 친절은 누구에게나 달콤한 유혹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폰트프로그램에 있어 '무료'는, 일차적으로 구매에 필요한 요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지, 이용에 있어 어떠한 조건도 필요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무료폰트 이용자들은 해당 폰트들마다 다양한 이용범위와 그에 따른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무료로 받은 기쁨은 잠시, 생각지도 못한 고가의 폰트패키지 구매나, 소송 압박에서 안절부절못하게 되는 현실 앞에 놓이게 된다.

이제 대부분의 폰트이용자들은 폰트가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임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폰트 이용범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무료폰트들을 살펴보면, 이용범위나 대상이 개인/비상업용으로 제한되어 있다. 특히 비상업적 용도의 범위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제한적이다. 이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영리 목적 행위 전반에 폰트가 이용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의에 기반하고 있다. 결국 저작권이나 라이선스 개념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개인이나 규모가 작은 영세업자들의 위반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무료폰트 이용자들은 폰트를 불법 복제하지 않았고, 서체프로그램 사용목적이나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한다면 형사상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책될 여지가 있으나, 폰트사가 정한 무료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민사상 계약위반(라이선스)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부 법무법인들이 폰트 이용범위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송압박을 가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나, 이용자들 스스로도 폰트 이용에 대해 좀더 신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통 여러 폰트사들은 라이선스를 크게 기본용과 추가용으로 구분하는데, 특히 추가 용의 경우 폰트를 구입하더라도 폰트사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하고자 하는 폰트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폰트사에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Q

프로그램 번들로 제공되는 폰트

회사 홍보를 위해 동영상을 제작할 때, 아래한글과 MS워드 정품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포함되어 제공되는 폰트를 이용하였다. 이때 자막에 이용된 폰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해당 폰트의 개발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일반적으로 문서를 작성할 때 이용되는 아래한글이나 MS워드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폰트를 이용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폰트 프로그램이 무단으로 복제·이용되었음을 이유로 해당 폰트 프로그램의 개발사로부터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대체로 아래한글 또는 MS워드 프로그램에 번들(Bundle)로 포함되어 제공되는 폰트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자동으로 운영체제인 Windows의 Fonts 폴더에 저장되고, 그 저장된 폰트들은 아래한글 또는 MS워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자동으로 제공된다.

물론 위와 같이 번들로 제공된 폰트들의 각 개발사는 아래한글 또는 MS워드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에게 해당 폰트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사실은 없지만, 우리 법원은 아래한글 또는 MS워드 프로그램의 개발자에게 폰트에 관한 라이선스를 부여한 저작권자로서 각 해당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에게도 그 폰트의 이용을 목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설사 위 이용자들이 그 문자발생기에 저장된 폰트들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해당 폰트들을 무단으로 복제·이용하여 위 개발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¹²⁴⁾

따라서 정품으로 구입한 아래한글 또는 MS워드와 같은 컴퓨터프로그램에서 번들로 제공하는 폰트들을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1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2가합535149 판결.

Q

용역개발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발주처의 소스코드 요구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제작·납품했는데, 발주처인 공공기관에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요구하고 있다. 계약내용에 없는 요구사항인데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A

계약에 의해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으나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위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분쟁이 많다.

원칙적으로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 등이 원시적으로 저작자가 될 수 있다. 한편 저작권에 관한 계약이 저작권 양도인지 또는 이용허락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며,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¹²⁵⁾ 즉 위탁계약의 경우에는 별다른 사정이나 특약이 없다면 해당 프로그램을 직접 창작한 자가 저작자로서 권리를 가질 것이며, 위탁자는 계약범위 내의 이용만이 허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저작권을 양도하였거나 소스코드를 제공하겠다는 특약이 없었다면 제작업체가 발주처에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이와 달리 위탁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려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오로지 위탁자만을 위해서 개발·납품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탁자가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자가 될 것이다.¹²⁶⁾

나아가 정부와의 사이에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와 관련된 사업,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 등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이외에도 기획재정부계약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이 적용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특히 주의

125)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50250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126)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9725 판결.

할 점은 발주기관인 정부와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공유자 일방에게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¹²⁷⁾ 그러므로 정부와의 사이에 소프트웨어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예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처가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소스코드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프로그램 임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¹²⁸⁾ 임치제도를 이용하면 제작자는 소스코드의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작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유지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127)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82호(2018.6.4.일부개정) 제56조.

128) 저작권법 제101조의7 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의2.

Q

중고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프로그램

사무실에서 이용할 컴퓨터를 중고로 구입했는데, 그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오피스용 프로그램이 불법 저작물일 경우 구입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가?

A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보고 있다.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불법적으로 복제된 프로그램이 존재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CD 자체뿐만 아니라 하드디스크에 복제되어 유통되는 것도 본 조항의 적용이 있다고 볼 수 있다.¹²⁹⁾

둘째, 불법 복제라는 것을 알면서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불법 복제물인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프로그램 설치과정과 대가의 상당성 및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해당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업무에 이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고 컴퓨터를 구입하였다면, 이미 복제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 정품 프로그램을 새로 구입하여 설치하는 것이 좋다.

129) 정성원, "중고 컴퓨터에 복제되어 있던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의 형사책임", 「저작권문화」 vol.189,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22-23쪽.



부산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9노3917 판결.

한글 프로그램 등 사무용 컴퓨터프로그램들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중고 컴퓨터를 구입하여 업무상 이용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컴퓨터에 위와 같은 컴퓨터프로그램들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정품 제품을 구입하거나 정품 제품이 설치되었음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한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해당 컴퓨터프로그램들이 불법적으로 복제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Q

정품 프로그램의 시리얼 번호를 온라인 카페에 게시

인터넷 게시판에 프로그램 시리얼 번호를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



웹사이트나 포털 등에서 프로그램의 시리얼 번호가 게시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특정 프로그램의 시리얼 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도 게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행위를 저작권법에 의해 규제할 수 있을까?

프로그램의 시리얼 번호는 정품 이용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자가 이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말한다. 우리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¹³⁰⁾ 우리 법원은 시리얼 번호에 대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수단인 기술적 보호조치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특정한 포맷으로 된 시리얼 번호가 입력되면 인스톨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지시, 명령이 표현된 프로그램에서 받아 처리하는 데이터에 불과하다”라고 판시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시리얼 번호의 게시행위 자체를 저작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시리얼 번호의 복제 또는 배포 행위는 프로그램 저작물의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경우에 따라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행위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2011년 저작권법 일부개정을 통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고, 위 판례는 해당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선고된 것이다. 즉,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 제28호 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¹³¹⁾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 하여서는 안

130)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131) 기술적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에 관한 내용으로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36조 제2항 제3의3호에서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의 내용과 시리얼 번호를 기술적 보호조치로 인정한 판례의 태도를 고려하면, 시리얼 번호의 공유 또는 생성 프로그램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¹³²⁾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2900 판결.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2011. 6. 30. 이전에 컴퓨터 관리 프로그램인 'Hypersnap-DX'의 비밀번호(시리얼 번호)를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한 이용자에 대하여, 법원은 시리얼 번호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 자체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공표·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또는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¹³²⁾ 박덕영, "판례평석 시리얼번호의 게시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계간저작권』, 봄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04, 84쪽.

Q

프로그램 설치 파일의 복제

업무상 이용하는 컴퓨터에 프로그램 설치 파일만을 다운 받고, 이를 실행하지는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



업무상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일이 많은 회사의 경우, 업무에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을 살 예산이 부족하거나 직원의 부주의 등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는 한다. 이때 프로그램 설치 파일 다운로드만 이루어졌지만 해당 파일을 실행하지는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설치 파일의 다운로드만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의 다운로드 및 설치 작업을 간편하게 하도록 돕기 위해 그 구성 파일들을 압축하여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묶어놓은 것으로서 그 내부에는 저작물인 컴퓨터프로그램이 그대로 모두 들어 있으므로 설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와 다를 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¹³³⁾

위의 판례에서 우리 법원은 이미 다운로드 된 설치 파일을 실행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구성 파일들을 배치하는 것에 불과하며, 저작권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하는 복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 족하고 이를 업무에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의 완료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하기만 하고 이를 실행하지는 않은 상태라 하여 이를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파일의 다운로드만 이루어졌고, 이 파일을 실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설치 파일에 포함된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복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1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4가합540374 판결.

Q

프로그램코드역분석

프로그램코드의 역분석 허용 조건 및 이를 통해 얻은 정보의 활용 가능 범위에 있어서 개작까지도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저작권법에서는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¹³⁴⁾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규정인 저작권법 제101조의4에서 프로그램코드의 역분석이 허용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적법한 행위자, 상호운용성¹³⁵⁾에 필요한 정보 획득의 비용이성,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불가피성, 상호운용성에 필요한 부분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01조의4 규정에 의한 역분석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로 라이선스 계약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이거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구매한 자로 해커나 불법 복제물의 소지자는 역분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역분석이 허용되는 범위는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되며,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 역분석이 가능하다. 즉, 상호운용성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서 쉽게 이용 가능한 경우가 아니어야 하고, 비록 정보가 일부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운용성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으며, 다른 방법들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여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저작권법 제101조의4 제2항은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의 이용에 관하여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직접 이용하는 경우와 이 정보를

134) 저작권법 제2조 제34호.

135) ‘상호운용성’이란 컴퓨터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및 사용자들과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상호연결과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것을 말한다.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경우든 상호운용성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그리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의 개발·제작·판매하는 것과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이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한편 우리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은,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제3호) 및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제4호)을 동일성유지권의 제한사유로 들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컴퓨터 내에서 PC OS 환경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을 원활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개작은 허용될 수 있을지라도 대외적 사용에 있어서의 개작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과 동일성유지권의 예외는 별개의 문제로 동일성유지권의 예외사항에 해당된다고 하여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저작재산권 문제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므로 각각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저작권 침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 인터넷과 저작권

- | | | |
|----|----------------------------|-----|
| 01 | 웹하드와 P2P | 174 |
| 02 |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의 이용 | 176 |
| 03 | 인터넷상의 사진이미지 이용 | 179 |
| 04 | 불펌과 저작권 침해 | 181 |
| 05 | 링크와 저작권 | 183 |
| 06 | UCC 제작 시 음원 이용과
저작권의 문제 | 185 |
| 07 | 유튜브 동영상의 이용 | 187 |
| 08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의 책임 | 189 |

Q

웹하드와 P2P

영화나 드라마 등을 다시 보기 위해 웹하드나 P2P(Peer to Peer)를 통해 내려 받는 사람들이 많다. 얼마 전 유명가수 k씨가 영화 <테이큰3>를 내려 받아 저작권 침해 논란이 있었다. 이런 경우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일까?



과학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생활화로 지난 영화나 드라마 또는 감명 깊었던 소설, 어린 시절 즐겨보던 애니메이션 등을 웹하드나 P2P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웹하드나 P2P를 통해 내려 받아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한다. 복제권은 저작권자의 권리¹³⁶⁾이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내려 받는 복제는 사적 복제¹³⁷⁾에 해당될 수 있지만, 웹하드와 P2P의 경우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된 웹하드와 P2P에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콘텐츠를 내려 받을 수 있다. 일명 ‘제휴 콘텐츠’¹³⁸⁾라고 하는 콘텐츠의 경우, 해당 콘텐츠의 저작자와 제휴 계약을 체결해 저작권자에게 일정 비용이 지급된다. 따라서 제휴 콘텐츠를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사적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휴되지 않은 콘텐츠의 경우 불법 유통되는 저작물일 가능성이 높아 저작권 침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다만, P2P의 경우 주의할 점이 있다. P2P는 공유 폴더가 형성되어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뤄지는 특성이 있다. 업로드는 ‘공중송신’에 해당하는데, 이 또한 저작권자의 권리¹³⁹⁾ 중 하나다.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P2P를 이용하거나 제휴 콘텐츠가 아닌 저작물을 내려 받는 것은 ‘공중송신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우리 법원은 ‘소리바다’ 사건에서 “P2P 프로그램의 이용을 통한 음악 파일의 공유 행위는 대부분 정당한 허락 없는 음악 파일의 복제라는 결과...”라고 판시해¹⁴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136) 저작권법 제16조.

137) 저작권법 제30조.

138)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하지 않는 대신 해당 콘텐츠를 내려 받은 경우 사이트 수익의 일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콘텐츠를 말한다.

139) 저작권법 제18조.

140)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못 할 것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탓에 타인의 저작물을 무분별하게 이용해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자주 침해되고 있고, 이용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 침해자가 되기도 한다. 이용하고자 하는 콘텐츠에 대한 합법적 이용 통로를 정확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태도가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P2P(Peer to Peer)방식으로 공유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된 일명 '소리바다 사건'에서 법원은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행위가 대부분 정당한 허락 없는 음악파일의 복제임을 예견하면서도 MP3 파일 공유를 위한 P2P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무료로 널리 제공하였으며, 그 서버를 설치·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접속정보를 서버에 보관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음악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 공유폴더에 담아 둘 수 있게 하고, 소리바다 서비스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경고와 서비스 중단 요청을 받고도 이를 계속한 경우,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의 행위는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하여 P2P를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Q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의 이용

웹하드 보다 속도도 빠르고 자료도 많아서 토렌트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자료를 다운 받아서 다른 곳에 공유하거나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장만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안 되는가?



토렌트¹⁴¹⁾는 인터넷상에서 빠른 속도로 원하는 파일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식으로, 이용자 사이에 직접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공유하는 프로토콜 또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¹⁴²⁾ 파일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토렌트 방식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파일 서버를 가동하지 않아도 토렌트 이용자들이 서로에게 파일을 주고받으면서 파일을 확산시키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이 있다.

토렌트 이용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인증이나 결제 없이도 다운 받고자 하는 파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시드(seed) 파일이나 마그넷 주소(magnet link)만 있으면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어 편리한 측면이 있고, 공유자가 많을수록 전송 속도가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 때문에 불법 저작물이나 음란물 등이 토렌트 방식으로 무분별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것은 편리함에 따르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가정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¹⁴³⁾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나중에 읽는다거나, 소장 중인 음악 CD를 스마트폰에서 듣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mp3 파일로 변환하는 등의 복제 행위는 사적복제로써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어떠한 파일을 다운 받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므로 사적복제에서 허용하고 있는 ‘복제’

141) 이 글에서는 비트 토렌트(Bit Torrent)를 토렌트로 약칭하였다.

142)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기술 용어집 2014』, 2014, 83쪽.

143) 저작권법 제30조,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4호.

행위뿐만 아니라 '전송' 행위도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할 때에는 저작권 침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무분별한 불법 다운로드는 불법 저작물의 확산에도 기여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 크나큰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지양해야겠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가 급증하자, 저작권자들이 토렌트 프로그램 이용자들을 무더기로 고소한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 저작물의 공유(혹은 다운로드)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여러 저작물이 하나의 파일로 압축되어 있는 압축 파일의 일부를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다운 받은 사건에서 연달아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¹⁴⁴⁾

두 사례의 저작권자는 자신의 소설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유되고 있는 화면을 캡처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소설 작품들이 하나의 파일로 압축되어 공유되는 경우,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공유되는 파일을 무작위로 조각내서 업로드를 한다는 점에서 특정 시점의 캡처 화면만으로는 피고인(토렌트 이용자)이 고소인(저작권자)의 소설에 대한 패킷을 업로드 했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즉, 압축 파일에 포함된 다른 소설에 대한 패킷을 업로드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저작권자 역시 저작권 침해의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고소권의 남용이나 기획 소송 등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자 2008카합968 결정.

법원은 업로드 되어 있는 영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인 경우까지 이를 원본으로 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운로드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14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8. 12. 선고 2015고정1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고정858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8. 12. 선고 2015고정11 판결.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토렌트 프로그램은 다수 공유자로부터 무작위로 파일 조각을 다운로드 및 업로드하기 때문에 특정 파일에 대한 업로드 여부는 해당 캡처 자료로는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캡처한 출력물만으로 해당 씨드 파일 내의 파일 목록 중 특정 파일인 '나스트 골▽' 파일을 해당 IP 사용자가 업로드 하였는지는 특정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과 캡처한 출력물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저작물인 소설 '나스트 골▽'을 업로드 하였다고 선뜻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고정858 판결.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위 공유자 IP 캡처 화면만으로는 특정 파일에 대한 업로드 여부를 특정할 수 없고, 고소인이 전체 '소설 모음' 중 이 사건 저작물을 검색어로 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공유자들로부터 다운로드를 받은 용량이 이 사건 저작물의 전체 용량인 약 486MB를 초과한 약 500MB이었던 것을 보면, 고소인이 다운로드의 범위를 이 사건 저작물로 제한하였다 하더라도 고소인이 다운로드 받은 용량 중 15MB 가량은 이 사건 저작물이 아닌 다른 저작물 또는 다른 내용의 파일 조각으로 보이는데,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파일 조각의 최대 용량은 8.65MB로 이를 넘지 않아,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파일 조각이 이 사건 저작물의 파일 조각이 아닐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Q

인터넷상의 사진이미지 이용

인터넷에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진이미지 제공 사이트들이 있다. 정말 그런 사이트의 사진이미지를 이용해도 문제가 없을까?

A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이미지를 무단으로 이용하다 저작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사진이미지를 특정 조건 하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한 사이트들이 있다. 이러한 사진이미지 제공 사이트들의 경우 저작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올린다면, 여전히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남을 수 있지만, 저작권자가 직접 사진이미지를 올린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그러한 사이트의 사진이미지들은 저작권자들이 수정, 배포, 전송, 상업적 이용을 허락한 저작물이다. 심지어 출처명시 의무¹⁴⁵⁾마저도 없는 경우도 있다.¹⁴⁶⁾ 이러한 작업을 하는 저작권자들은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 사람에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¹⁴⁷⁾ 자기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어떤 형태로든 인터넷에서 타인의 사진이미지를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데,¹⁴⁸⁾ 이러한 사이트들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사진을 이용할 수 있기에 이용자에게 무척 반가운 일이다.

다만, 이러한 사이트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주 화면에 나온 라이선스(이용약관)를 클릭해 반드시 읽어보고, 이용하려는 사진이미지 바로 아래나 옆에 있는 개별 라이선스도 확인해야 한다. 둘째, 혹시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사진이미지와 라이선스를 같이 캡처하여 두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사이트 주소, 저작권자 이름(혹은 아이디)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5) 저작권법 제37조.

146) 사이트에서 CC0(Creative Commons Zero)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음.

147) 소위 저작권의 영어 표현인 카피라이트에 대비하여 카피레프트라고 불림.

148) 저작권법 제46조.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사진이미지들의 경우도 이용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유마당을 비롯하여 각 사이트마다 반드시 이용약관을 해석하고 이를 지켜 이용한다면, 타인의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Q

불평과 저작권 침해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불평¹⁴⁹⁾하여 자신의 것처럼 올려놓는 '불평족'이 많아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불평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대해서도 콘텐츠 창작자(이하 '저작자')들이 워터마크 형태로 이름을 표시하거나 '불평 금지'라는 문구를 새겨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불평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다른 이름으로 저장' 기능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작자들은 자신의 블로그 등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차단하는 기능을 넣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우클릭 차단기능은 '마우스 우클릭 차단 해제 프로그램'으로 너무나 쉽게 무력화 되고, 또 굳이 우클릭 차단기능을 해제하지 않더라도 화면캡처 프로그램이나 Print Screen 키를 이용하여 불평 차단기능을 우회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불평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다.

게다가 최근 페이스북 이용자가 많아져 구독자 수가 많은 페이스북 페이지의 영향력이 커지자,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불평하여 올려놓고 방문자 수를 늘려 수익을 얻는 이른바 '페북파리'¹⁵⁰⁾라고 일컬어지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다수 등장하기도 하였다.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마구 불평한 불평행위자들은 콘텐츠를 창작한 저작자는 물론, 콘텐츠의 공정이용을 위해 출처표기, 링크 이용 등 자정노력을 해왔던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의 공분을 사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불평 행위는 비난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저작권 침해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난 2013년 트위터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언

149) 인터넷상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를 그대로 가져오거나 가져가는 일박용찬, 『2004년 신어』, 국립국어원, 2004, 201쪽, 발행등록번호 2004-1-12).

150) '페이스북'과 '파리'의 합성어로서 자극적이거나 재미있는 사진, 영상 등을 업로드 하여 구독자를 끌어들이 뒤 광고를 노출한 뒤 수익을 얻는 일부 페이스북 이용자를 말한다. 온라인상에서 사용하는 유사한 용어로서 블로그, 페이스북에서의 영향력을 앞세워 업체나 가게를 홍보해 주겠다고며 접근하여 부당하게 할인이나 서비스를 요구하고, 할인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악평을 남기겠다고 협박을 일삼는 경우에는 '파워블로거지', '페북거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론사와 이미지 회사에 무려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¹⁵¹⁾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불펌행위자들은 위 만화에서처럼 원저작자 표시를 삭제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덧씌우는 경우도 많고, 또 저작물의 불펌 행위 자체가 타인의 저작권을 복제·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기도 하여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생각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다만 이용을 하여야만 할 때에는 사이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스크랩’이나 ‘공유하기’ 기능 등을 이용하거나 그러한 기능이 없을 때에는 콘텐츠가 게시된 웹페이지의 링크 주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151) "트위터 사진 '불펌'한 언론사, 12억 배상금 철폐", <이버즈>, 2013. 11. 24. <<http://www.nextdaily.co.kr/news/article.html?id=20131124800003>>[2016. 11. 30. 방문].

Q

링크와 저작권

최근 친구로부터 A양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얼마 전 본 영화 뿐만 아니라 최신 영화 목록이 있는 링크였다. 그 링크는 한 사이트로 연결되어 누르기만 하면 스마트폰에서 영상이 재생되게 되어 있었다. 이처럼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서 최신 영화를 볼 수 있는 링크 주소를 공유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저작권이 문제 되지 않을까?



링크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려면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http://www.copyright.or.kr'이라는 긴 주소를 직접 입력해야 하지만, 링크가 연결되어 있다면 클릭 한 번으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¹⁵²⁾ 이렇게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을 시켜주는 링크를 단순링크 또는 심층링크로 분류하고, 이러한 링크는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한다고 해서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이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모든 링크가 위 판결의 설명과 같은 단순·심층링크인 것은 아니다. 링크의 기능에 따라 프레임 링크, 임베디드 링크 등으로 나뉘기도 하는데, 이러한 링크의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성명표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거나, 저작권 침해는 아니더라도 불법행위·상표권 침해행위 등 다른 법률의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링크에 관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연결하려는 저작물이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예를 들어 신문사 홈페이지의 뉴스기사, 사진작가 블로그의 사진 등)이지, 불법 복제된 저작물을 링크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즉 다른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불법 복제물(최신 영화라면 불법 복제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링크 주소를 공유한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타인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행위로 보아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 손해배

152)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상책임도 발생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방조행위를 부정한 판례¹⁵³⁾가 있는 하나, 불법 복제된 영화나 드라마 등을 무료로 볼 수 있는 링크 주소를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상 배치될 수 있는 행위로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분	설명	예시
단순링크 (Simple Link)	홈페이지 메인 화면으로 연결하는 링크	신문사 홈페이지 첫 화면 예) http://www.news.com
심층링크 (Deep Link)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하위 페이지로 직접 연결하는 링크	구체적인 신문 기사 페이지 예) http://www.news.com/article/2014/07/18/topic.html
프레이밍 링크 (Framing Link)	화면을 분할해서 한 쪽에는 자신의 홈페이지가, 다른 쪽에는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가 보이도록 하는 링크	포털 사이트에서 사고 싶은 물건을 검색한 후 링크를 클릭하여 쇼핑몰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화면 상단에는 포털 사이트 표시가 나오고 그 아랫부분에는 쇼핑몰 홈페이지의 내용이 보이는 것
임베디드 링크 (Embedded Link)	다른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음악, 동영상 등을 내 홈페이지에서 바로 재생하는 링크	유튜브에서 공유 버튼을 클릭하고 소스 코드를 복사한 후, 내 블로그에 붙여 넣어 내 블로그에서도 유튜브 동영상이 재생되도록 하는 것

<링크의 기능별 분류>

153)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Q

UCC 제작 시 음원 이용과 저작권의 문제

UCC를 제작하다보면 음악을 삽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UCC에 배경음악을 넣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30초의 짧은 음악만 삽입하거나 직접 노래를 부르고 녹음하여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A

인터넷에서 UCC(User Created Contents)를 제작하거나 보고 즐기는 것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제작된 UCC를 자세히 살펴보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상 음원에는 저작권자(작사·작곡가)와 저작권인접권자로서 실연자(연주자·가수)와 음반제작자, 이렇게 세 권리주체가 존재한다. 인터넷에서 음원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세 권리주체의 허락을 각각 얻어야 한다.

다만 일일이 이용허락을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권리자들이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하여 해당기관을 통해 손쉽게 이용허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리자에 따라 작사·작곡가의 경우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실연자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음반제작자는 한국음반산업협회가 각각 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UCC 제작에 음원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된다. 가령 UCC의 배경음악으로 음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모두의 허락이 필요하다. 인터넷에 흔히 퍼져 있는 “30초 이내는 허용된다”, “10초 이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등의 주장은 근거 없는 말에 불과하다.

이용자들이 크게 잘못 알고 있는 음원 이용에 대한 다른 오해 중 하나는 자신이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하여 업로드 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또한 해당 가수의 이용허락만 얻는다면, 음악 공연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이용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내가 직접 노래를 부르고 녹음하는 경우에는 실연자나 음반을 이용하지 않으므로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이용허락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나, 곡과 가사는 이용하게 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로 가수의 공연을 촬영한 뒤 실연자인 가수의 이용허락은 얻었다 할지라도 저작권자인 작사·작곡가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촬영된 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이처럼 음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와 같은 세 권리주체를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다.

Q

유튜브 동영상의 이용

유튜브(YOUTUBE)에 업로드 되어 있는 동영상 소스코드를 퍼와서 홈페이지에서 보여줘도 되는지?



인터넷상에서 여러 참신한 동영상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동영상을 제공하는 플랫폼 유튜브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유튜브는 동영상 서비스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이용량을 자랑하는데, 이에 따라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 침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재미있게 본 영상을 블로그나 SNS에서 공유하고자 할 때 해당 영상의 주소를 링크하거나 소스코드를 가져와 동영상을 직접 게시글에 첨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링크를 공유하거나 소스코드를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일까?

우선, 동영상의 링크(URL)를 공유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동영상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찾아가는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아이프레임(iframe) 소스코드를 게시글에 첨부하여 유튜브 플레이어로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유튜브 약관상 허용되어 있다.

**유튜브 이용약관 제4조 A항**

A. 귀하(유튜브 서비스 이용자)는 YouTube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서비스 또는 콘텐츠의 어느 부분이라도 그리고 이를 어떤 매체로도 배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단, YouTube가 본 서비스에서 제공된 기능(예를 들어, Embeddable Player)을 통하여 그러한 배포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유튜브 이용약관 제6조 C항**

C. 귀하는 귀하의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전부를 보유함을 명확히 합니다. 그러나, YouTube에 콘텐츠를 제출함으로써~, ~본 서비스의 모든 이용자에게, 본 서

비스를 통하여 귀하의 콘텐츠에 접속하고, 본 약관 및 본 서비스의 기능을 통하여 허용되는, 그 콘텐츠의 이용, 복제, 배포, 전시, 발표, 온라인에 제공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송하고, 공연할 수 있는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본 서비스의 모든 이용자에게 허여합니다.

그렇다면 유튜브 영상을 특정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운 받거나 다른 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영상을 업로드 하는 것은 가능할까? 유튜브 영상을 다운 받는 행위는 유튜브나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사람(유튜버)이 직접적으로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주지 않는 한 금지된다. 또한 영상을 다운 받아 다른 사이트에 업로드 한다면 이는 우리 저작권 법상 유튜버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 중 복제권, 공중송신권(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므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유튜브 이용약관 제5조 B항

B. 콘텐츠는 있는 그대로 귀하에게 제공됩니다. 귀하는 본 서비스의 제공된 기능을 통하여 의도한 대로, 그리고 본 약관에 의해 허용된 대로 참고 목적 또는 개인적인 목적에 한하여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해당 콘텐츠에 대하여 본 서비스에서 YouTube가 표시한 “다운로드” 또는 그와 유사한 링크를 발견하지 않는 한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면 안 됩니다.

Q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 수가 많다 보니 모든 게시물을 일일이 점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이트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 저작물을 업로드 한 경우, 운영자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가?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대량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저작권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저작물의 불법 복제·전송을 규제하고자 한다.

이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 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또는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¹⁵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는 네트워크 통신 사업자인 '인터넷 접속 서비스업자', 송신된 저작물을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캐싱(Caching) 서비스업자', 카페·블로그·웹하드 등 저작물을 온라인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팅(Hosting) 서비스업자',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검색 서비스업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직접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용자의 게시물을 일일이 감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책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타인의 저작물이 불법으로 복제·전송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

154) 저작권법 제2조 제30호.

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불법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그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⁵⁵⁾

한편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불법으로 복제·전송되고 있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그 사실을 침해자와 권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¹⁵⁶⁾ 이처럼 저작권자의 요청에 의해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 역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책임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 등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정도로 관여를 함으로써 교사자 또는 방조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 등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권리자로부터 권리침해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를 방치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435 판결.

이 사건은 온라인서비스이용자들이 저작재산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다수의 영화 파일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함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 방조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판단한 사례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전송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는 정범(온라인서비스이용자)의 복제권·전송권 침해 행위 중에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침해 행위에 착수하기 전에도 장래의 침해 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도 성립이 가능하다. 또한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총

155) 저작권법 제102조.

156) 저작권법 제103조 제2항.

분하고,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 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도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이 의하여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영화 파일들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업로드를 유인하거나 다운로드를 용이하게 해주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은 경우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그 사이트 이용자들의 복제권·전송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의 방조책임을 인정하였다.

○ 저작권 등록

01	저작권 등록의 효과	194
02	저작권 등록의 종류	196
03	권리등록과 권리변동등록의 차이	198
04	저작권재산권 양도등록의 효력	200

Q

저작권 등록의 효과

저작권을 등록하면 내 저작물에 대한 완전한 보호가 될까?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확대되면서 자신의 저작물을 등록관청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신청하여 법적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저작권법은 음악·미술·문학작품과 같은 문예적 저작물로부터 각종 설계도에서 컴퓨터프로그램 등 기능적 저작물에 이르는 다양한 창작물들을 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다.¹⁵⁷⁾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지만,¹⁵⁸⁾ 저작자는 저작권 등록을 통하여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고 창작일과 최초 공표일 등 등록사항에 대한 추정력¹⁵⁹⁾도 부여받게 되는 등 실제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입증책임의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저작물 등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선부른 기대를 하고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등록신청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등록의 효과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등록관청에 저작권 등록을 함으로써 내 저작물이 저작물성을 갖추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저작권 등록신청서 등 등록요건에 대한 형식적 심사권 한만을 가진 등록관청(한국저작권위원회)은 ‘법률상 명백히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를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데 그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결국 저작권으로 등록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실제적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 저작물성 여부와 저작권의 보호범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157)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158)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159) 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다음으로 살펴볼 오해의 하나는 저작권 등록이 완료되면 자신의 저작물 창작 과정에서 발생된 무단 복제 등 타인의 저작권 침해행위는 치유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 본인의 저작물에 대한 등록신청 및 등록완료는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전혀 감면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저작권법상의 민·형사적 책임을 별도로 지게 된다.

또한 외국인의 저작물도 대한민국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는 별도로 우리 등록관청에 등록 완료된 사실을 가지고 외국에서도 우리 저작권법이 보장하는 저작권등록의 법률효과를 동일하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외국에서 등록에 따른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해당 국가의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Q

저작권 등록의 종류

이번에 책을 발간하는 저자인데, 저작권 일반등록,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등록 등 종류별로 모두 등록할 수 있는 것인지?



저작권의 발생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등록, 납본, 기탁 등 일체의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¹⁶⁰⁾ 따라서 저작물이 창작만 되었다면 등록이라는 별도의 특별한 절차 없이도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저작권을 등록하는 이유는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 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등록사이트(www.cros.or.kr)를 보면 상당히 많은 메뉴가 있고,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엇을 등록하는 것인지 정확히 아는 경우가 많지 않기에 다수의 등록을 선택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만이 가능하고, 배타적발행권의 경우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배타적발행권자)가 할 수 있으며, 출판권은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출판권자)가 할 수 있다. 배타적발행권은 단순한 채권적 권리를 의미하는 이용허락과는 달리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이다. 배타적발행권자는 다른 사람이 그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이 직접 그러한 이용에 대해 민·형사상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저작자와 배타적발행권자 또는 출판권자는 1인 출판의 경우 동일인 일수도 있으나, 저작권법의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의 규정을 살펴보면, 저작자와 배타적발행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저작자가 배타적발

¹⁶⁰⁾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행권자 또는 출판권자이기도 한 경우에는 굳이 배타적발행권 내지 출판권을 내세워 주장하기보다 저작권을 통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 크게 배타적발행권 내지 출판권을 등록하여 법률상 추정을 받는 효력은 크게 의미가 있지 않다.

따라서 저작자인 경우, 등록의 효과를 원한다면 보통 저작권 일반등록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가장 유의미한 등록이 될 수 있다.

Q

권리등록과 권리변동등록의 차이

저작재산권의 양수인인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하려 한다. 결국 내게 권리가 있으므로 권리변동등록이 아닌 수수료도 저렴한 일반 권리등록을 해도 되지 않는지?



저작권법 제53조의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로 한정된다. 저작자는 아니지만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자인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54조의 권리변동등록을 하여야 한다. 만일 저작재산권의 양수인이 저작권법 제53조의 등록을 하는 경우 허위등록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또한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저작권 등록을 한 다음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하여 상속인임을 증명하면 저작재산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고, 저작권법 제54조의 등록을 할 수는 없다.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양수인이 저작자로 등록이 되면, 저작물을 창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저작자만이 가지는 저작인격권까지 갖게 된다. 저작권 법상의 등록은 하나의 공시제도로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위 처럼 잘못된 추정을 받게 되면, 거래의 안전을 해하므로, 저작권법 제53조와 제54조의 등록을 사실관계에 맞게 하지 않는 경우, 결론적으로 권리자라도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허위등록죄에 해당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재산권의 양도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양도인의 협조를 받지 못하여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저작권법 제54조 권리변동등록을 할 수 없고, 저작재산권 양도 내지 변동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이미 발생하고 있으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게 된다.

저작권법

제53조(저작권의 등록) ①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의 실명·이명·국적·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년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Q

저작권재산권 양도등록의 효력

저작권재산권의 양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양도등록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가?



저작권재산권의 양도란 권리의 이전을 말하며, 저작권재산권의 양도를 하는데 있어 형식상의 제한이 없다. 즉, 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구두로 양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일어나면, 계약은 구두로도 즉시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재산권의 양도일은 당사자가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일과 같게 할 수도, 다르게 할 수도 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구두계약의 경우 증명에 불리함이 있어, 서면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서는 당사자의 합의 사항대로 쓰면 되고,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저작권재산권의 양도계약서에 대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가 가능하다.

저작권재산권 양도등록의 경우 저작권재산권의 양수인이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재산권의 변동에 관하여 등록을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재산권이 양도 등의 사유로 변동된 경우 등록을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변동의 효력은 발생하나 단지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예를 들어 저작권재산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등록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수도 있다. 여기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제3자에게 저작권재산권의 변동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저작권재산권의 이전 등의 권리변동은 양도인과 양수인 등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고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권리변동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 등록을 하지 않으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는 권리변동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3381 판결.**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외국 작가의 저작물의 번역을 완성함으로써 그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 자가 그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갑에게 양도하였으나 갑이 이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이에, 그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을 모르는 을이 그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저작물을 일부 수정, 가필하여 다시 출판하기로 하는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록까지 마쳤다면, 갑은 그 저작권의 양수로서 을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저작권 침해와 구제

01	저작권 침해의 구제 방안	204
02	저작물의 무단이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206
03	저작권 침해와 친고죄	208
0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의 작성의무	210
05	표절과 저작권 침해	212
06	동일한 소재의 두 드라마	214
07	유명 캐릭터의 나노 블록 상품화	216
08	방송드라마나 영화에서의 소품	218
09	게임저작권 침해	221
10	'Be The Reds!' 의 글자도안	224
11	병행수입과 저작권	226
12	공개된 특허공보 내용의 제3자 이용	228
13	공익목적으로 비석에 새긴 시(詩)	229
14	해외기사를 이용한 교재 제작	230
15	국외에서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의 준거법	232

Q

저작권 침해의 구제 방안

다른 사람이 내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방법을 취할 수 있다.

우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뒤, 내용증명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침해자에게 침해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침해의 정지와 손해배상 등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이후 상대방과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합의 의사는 있지만 구체적인 합의 조건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 및 조정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별도의 법적 구제 수단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물론 당사자 간의 합의는 필수절차가 아니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구제방법이 있다.

먼저 형사구제 방안으로 수사기관에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 행위는 대부분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저작권자는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를 해야만 한다.¹⁶¹⁾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자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¹⁶²⁾

161) 형사소송법 제230조.

162) 저작권법 제140조.

다음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방법으로는 권리자가 침해자에게 침해의 정지 및 침해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도 있다.¹⁶³⁾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또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¹⁶⁴⁾

163) 저작권법 제123조.

164) 민법 제766조.

Q

저작물의 무단이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나의 사진작품들을 홍보하기 위하여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에 작품들을 게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우연히 나의 블로그에 있던 작품들 중의 일부가 다른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나의 사진작품들을 무단 게시한 사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지만, 나는 아마추어 사진작가로서 사진작품에 대한 거래경험이 전무하여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막막한데, 이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

A

직접 촬영한 사진작품들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고, 이와 같은 작품들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상에 게시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그 침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도 있지만, 그 주장과 입증의 결고 쉽지만은 않다.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저작권법에 손해액 추정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가장 자주 이용되는 방법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것이다.¹⁶⁵⁾ 이것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의미한다. 그래서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사례에서는 저작권자가 아마추어 사진작가로서 사진작품을 거래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하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법원은 일단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이용료를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므로,¹⁶⁶⁾ 저작권자가 속한 업계에 일반화되어 있는 관행을 조사함으로써 적절한 손해액을 주장·입증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자에게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취지에서 저작권자의 과실도 참작되므로,

165)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166)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6733 판결.

저작권 침해행위가 성행하여 저작권자도 그 침해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이와 같은 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6733 판결.

자신의 웹사이트에 이미지파일로 만들어 게시한 사진작품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이미지파일 수집 과정에서 무단 복제·전송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고, 저작권자가 그와 같은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일단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이용료를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Q

저작권 침해와 친고죄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는가?



저작권 침해 행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 행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저작권이 저작권자의 인격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형식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피해가 미미하여 저작권자에게 피해가 없거나, 저작물의 이용행위로 인하여 홍보효과가 발생하는 등 저작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침해 행위를 비친고죄로 규정하는 것은 자칫하면 수사 인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인터넷 상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대규모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산업적 피해가 심각하다. 그러나 저작권자인 개인이 그 침해 사실을 일일이 찾아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습적이거나 영리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 비친고죄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허위등록죄, 업 또는 영리목적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신고나 허가 없이 대리중개업이나 신탁관리업을 하는 경우 등이다.

최근 저작권 침해 행위가 모두 비친고죄로 개정되었다는 잘못된 정보가 널리 퍼진 것 같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거나 허위로 저작권 등록을 한 경우 등 법으로 규정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저작권 침해 행위는 기본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한다.

다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인 줄 알면서도 이

를 업무상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¹⁶⁷⁾

167) 저작권법 제140조.

Q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의 작성의무

신인 그림작가로서 중견 출판사와 동화책 삽화를 그리는 작업을 하기로 구두계약만 체결한 상태이다. 그런데 해당 출판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지 않아 불안하면서도, 혹여나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면 어렵게 잡은 기회를 놓치게 될까봐 선뜻 출판사에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출판사에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A

인간관계에서 정(情)과 믿음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계약서 작성문화가 널리 정착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계약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다가도 당사자 일방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상대방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서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난색을 표시하여 계약협상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더욱이 사례에서와 같이 계약당사자 관계가 경험이 부족한 신인 그림작가와 중견 출판사의 경우와 같이 대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을 시정하여 공정한 창작환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 5. 4.부터 시행된 개정 「예술인복지법」에서는 저작권법의 적용분야 중 큰 축에 해당하는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와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는,¹⁶⁸⁾ 서면계약의 체결을 의무화하였다. 특히 문화예술용역을 수행하는 문화예술인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계약 금액, 계약의 변경, 용역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제재수단도 마련되어 있어 법적인 실효성이 보장되어 있다.¹⁶⁹⁾

한편, 이와 같은 의무는 국가가 문화예술 분야에 관하여 개발·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으므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168)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

169) 예술인복지법 제17조 제1항 제1의2호.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3(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 ①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이하 "문화예술용역"이라 한다)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금액
 2. 계약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 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Q

표절과 저작권 침해

다른 학우가 내 논문을 표절했다. 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다양한 저작물 사이에서 표절과 관련된 의혹이나 분쟁은 끊임없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표절’이라는 용어에 대해 명백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 간에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 폭넓게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판례에서는 표절에 대해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창작한 것인 것처럼 전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① 타인의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였지만 인용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② 타인의 저작물 또는 저작물 일부를 인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자신이 한 것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③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창작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저작물을 새로운 창작물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등을 명시하고 있다.¹⁷⁰⁾

이러한 표절은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한편 저작권 침해는 창작적인 표현을 비교 대상으로 하여, 침해저작물이 피침해저작물을 보고 베꼈다는 의거성이 인정되고, 두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할 경우에 성립한다.

즉 비교하는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이 유사한 경우까지 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고 창작성 있는 구체적인 표현만을 보호하는 저작권 침해와는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논문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넘어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과, 기존의 작품에 의거해서 창작되었다는 점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자기표절과 관련하여서는 자신이 과거 창작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

¹⁷⁰⁾ 서울고등법원 2009. 11. 17. 선고 2009누15076 판결.

창작하는 저작물에 다시 이용하면서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키기는 하나, 저작권법상 저작자 자신의 저작물을 본인이 이용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Q

동일한 소재의 두 드라마

다중인격 장애를 소재로 한 두 드라마가 동시에 안방 전파를 타면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다. 과연 드라마에서 같은 소재를 사용한 것을 두고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 있을까?



다중인격 장애라는 동일한 소재를 다룬 두 드라마가 동시에 방영되면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같은 논란은 처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별에서 온 그대> 역시 K 작가의 <설희>와 유사하다는 구설수에 휘말린 적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주제, 소재를 가지고 있으면 저작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저작권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라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표현’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저작권이 아이디어까지 보호한다면, 인간의 자유로운 생각까지 제한한다고 볼 수 있으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조될 수 있는 수많은 표현들이 나오기 힘들 것이다.

드라마 대본과 같은 문예적 어문저작물에 있어서 작품의 주제나 기본적인 배경, 구성, 캐릭터들은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적 도구들로서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표현적 요소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혹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건들 역시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¹⁷¹⁾의 입장이다

다만 세부적인 에피소드, 등장인물 및 그들 사이의 갈등 관계와 그 갈등의 해소 과정 등에 있어서 동일·유사성이 인정되며, 전체적인 줄거리는 물론이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줄거리에도 상당한 정도의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 드라마 <연인>은 검사 및 변호사로 나오는 주인공들이 처리하는 사건의 사건번호 및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사건내용이 주거침입절도죄로 동일하다는 점 등 구체적, 사실적 표현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사실이 인정¹⁷²⁾되었고 드라마 <

1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0.자 2012카합1315 결정.

172)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49639 판결.

여우와 솜사탕>에서는 남·여주인공 및 주변 인물들의 성격, 인물 간 갈등의 구조 및 전개방식, 구체적인 줄거리나 전개과정에 있어서의 유사성 등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¹⁷³⁾되었다.

서울고등법원 1995. 10. 19. 선고 95나18736 판결.

이 사건은 소설 '하얀나라 까만나라' 작가가 자신의 소설과 유사한 방송드라마 '연인'의 작가와 방송사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사안으로,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소설에 나오는 강동현 변호사가 맡게 되는 첫 사건과 위 피고의 대본상의 주인공인 이건우 변호사가 맡게 되는 첫 사건, 원고의 이 사건 소설에 나오는 강동현 검사와 위 피고의 대본상의 주인공인 한상훈 검사기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사건 내용이 각 주거침입절도죄로 동일하고 그 처분을 하게 되는 경위도 동일하며, 이 사건 소설에서 나오는 "77고합1024호 강도치사"의 사건번호를 위 피고의 대본에서 그대로 이용하는 등 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소설에 나오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 및 표현을 그대로 또는 다소의 변경을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의 '연인'이라는 연속극의 대본의 일부는 원고의 이 사건 소설의 존재를 알고 이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원고의 이 사건 소설의 일부라고 할지라도 그 본질적인 부분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고 이른바 통상적인 아이디어(idea)의 영역을 넘어서 위 소설의 경험적, 구체적 표현을 무단이용하였다고 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17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3. 18. 선고 2002가합4017 판결.

Q

유명 캐릭터의 나노 블록 상품화

언젠가부터 팬시점 등에서 유명한 캐릭터를 모델로 하는 나노 블록이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나노 블록을 조립하여 해당 캐릭터를 형상화할 수 있는 상품은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을까?



영상저작물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구체적으로 시각적인 이미지로 형상화된 것
이므로,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미술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하다. 우리 법원도 캐
릭터의 경우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¹⁷⁴⁾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¹⁷⁵⁾ 따
라서 캐릭터에 대한 이용허락(라이선스)을 받아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용
허락 없이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으로 판단한다. 유명한 캐릭터라면 접근가능성이 인정되어
'의거성'이 충족될 수 있고, 나노 블록을 조립하여 해당 캐릭터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형상을 만드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먼저 저작재산권 측면에서는 나노 블록을 조립한 결과(상품)가 캐릭터와 비교하여 실
질적으로 유사하다면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나아가 상품의 고유한 특성으로 새
로운 창작성이 부가되는 경우 2차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발생될 수도 있다. 또한 상품
판매를 위해 시각적 이미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시권, 공중송신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저작인격권 측면에서는 공표된 영상저작물 등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를 이용
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명의 표시가 생략되고, 캐릭터의 이미지가
변형될 수 있으므로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174)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10.자 2012카합534 결정.

175)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큼 반가운 상품이지만 정당한 이용허락이 수반되지 않는 행위
는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Q

방송드라마나 영화에서의 소품

방송드라마나 영화 제작에 유명 영상물이나, 건축물, 미술작품,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을 소품으로 이용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인가?



방송드라마나 영화에 다양한 소품들을 이용하면서 저작권법상의 문제는 없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드라마 세트의 벽에 이용된 유명 작가의 그림이나, 디자이너의 의자(각주 Woods.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920 F. Supp. 62 (1966)가 작품 속 소품으로 등장하면서 저작권 분쟁사안이 된 바가 있다. 또한 영화 <HANGOVER II>에서 권투선수 '마이크 타이슨(Mike Tyson)'에게 새겨준 문신과 동일한 문신이 이용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된 바 있고,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¹⁷⁶⁾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경 영화 '해피 에로 크리스마스'에 1999년경 개봉된 이와이순지 감독, 나카야마미호 주연의 영화 '러브레터'의 주요 장면 일부가, 영화 속 등장인물이 비디오로 제작된 피인용영화를 시청하는 장면으로 삽입되어 저작권 분쟁¹⁷⁷⁾에 휘말린 경우가 있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무조건 저작권침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더불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한 문화의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입법 목적을 감안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특성, 이용한 분량, 내용,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결정' 해야 한다고 보았다.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살펴보면, 등장인물이 비디오로 피인용영화를 보는 내용에 대해 '인용부분의 표현형식상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은 명료하게 구분되어

176) S. Victor Whitmill v. Warner Bros. Entertainment Inc., 11-cv-00752 (E.D.M.O. April 28, 2011).

1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3. 18.자 2004카합344 결정.

그것들이 별개의 저작물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총 상영시간 110분 중에서 불과 30초 가량으로서 극히 일부이며, 인용영화의 가장 유명한 대사(‘오갱끼데스까, 와다시와 오갱끼데스’) 역시 공중의 영역에 근접해 있다고 보여지는 점, ...피인용영화는 개봉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인용영화로 인하여 피인용영화의 현 또는 잠재적인 시장에서의 가치가 감소된다거나 인용영화가 피인용영화의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인용 부분은 고전에 속하는 다른 영화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그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인용영화가 독자적인 존재 의의를 상실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라고 보지 않았다.

한편 위 판결과는 달리,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한 사례도 있다. SBS TV <신동엽의 있다!없다!>의 스타의 숨은 이야기를 발굴하는 코너에서 ‘스타 UCC’편에서 연기자 이순재가 이 사건 영화에 출연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에서 영화 <대괴수 용가리>의 영화중 일부 장면을 3분간 방영한 사건¹⁷⁸⁾에서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영화의 일부인용이 저작권법 제28조의 정당한 인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지상파 방송사의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 허용되는 범위는 상당히 좁아지며, 피고인의 영화의 인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점, 공정이용 법리 가운데, 저작물 전체에서 사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과 중요성의 관점에서도 3분이라는 시간은 저작물 전체에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침해를 인정했던 것이다.

이렇듯 저작물을 창작함에 있어서는 많은 적든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이용하게 된다.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용을 해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저작권법상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지만, 법 규정상 이용의 기준이 공식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사례들처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되도록 이용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을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저작권법의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이라는 궁극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 함에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타인의 저작물 이용 시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¹⁷⁹⁾

178) 서울남부지법 2008. 6. 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

179)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과 저작권법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¹⁸⁰⁾ 규정에 되도록 부합될 수 있는지 위 판례의 해석과 더불어 주의를 기울여 봐야할 것이다.

180) 저작권법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Q

게임저작권 침해

온라인 게임을 개발 중인데, 이미 시중에 유사 게임 방식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어디까지 유사해야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게임 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하나의 사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국제게임전시회인 지스타(G-Star)는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위상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다보니 게임 관련 저작권 분쟁은 국내를 비롯, 게임 카피를 일삼는 중국과의 국제적인 분쟁 등으로 골머리를 앓아야 하는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온라인 게임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의 영역과 시각적저작물이면서 동시에 개개의 사건들, 캐릭터, 주제등과 같은 극적이고 어문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의 소스코드 사안은 별론으로 하고, 게임의 내재적 표현들이 문제된 사안으로서, 일명 ‘봄버맨’¹⁸¹⁾ 사건(일본회사가 저작권 가지고 있는 ‘봄버맨’이라는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우리나라 게임회사가 개발한 ‘BnB’ 게임이 침해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을 통해 게임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의 보호범위 및 침해 판단 기준을 살펴보자.

우선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권법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보호하는 것이고 아이디어나 사상, 기능 및 감정 자체는 그것이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추상적인 게임의 장르, 기본적인 게임의 배경,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게임의 단계변화 등은 게임의 개념·방식·해법·창작도구로서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나아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 방법만 있거나, 하나 이상의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또는 개념적인 제약 때문에 표현 방법에 한계가 있는 경우나, 아이디어를 게임화 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A 게임과 B 게임에서 유사한 점들은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각종 설정, 아이템의 기능 등으로서,

1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

직사각형의 플레이필드 내에서 폭탄을 터뜨려 상대방 캐릭터를 제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게임이고, 이는 아이디어의 차원을 넘어 저작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다양한 표현의 여지가 없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내재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아이디어를 제외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어서, 게임화면상의 플레이필드 및 맵과 블록의 구체적인 구성과 형태, 캐릭터의 형태, 폭탄 및 화염의 형태, 각종 아이템의 형태 등의 구체적인 표현부분을 대비한 결과, A 게임과 B 게임은 전체적인 색채 및 형태는 물론 느낌과 미감에서 확연한 차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을 인정하기 어려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①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구체적으로 표현된 '창작성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②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사이에 구체적 표현에 있어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등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위 '봄버맨' 사건의 경우는 이러한 침해의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아 침해가 부정되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두 게임의 대비 내용 중 일부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I. 캐릭터의 경우,



<A 게임 캐릭터>



<B 게임 캐릭터>

- 1) A 게임과 B 게임의 캐릭터는 머리가 몸체에 비해서 크고 2등신에 가까우며, 얼굴에서 눈이 가장 부각되고, 손과 발이 짧으며, 모자 또는 헬멧, 벨트를 착용하고 있다는 유사점이 있으나, 이러한 유사점 중 신체의 특징은 귀여운 캐

- 릭터라는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귀엽다는 점을 적절히 표현하기 위하여 머리의 크기를 과장하고, 눈을 크게 하며, 다른 신체 부위인 손과 발을 단순하고 작게 표현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널리 채택되는 형태라 할 것이며,
- 2) 또한 게임의 용량과 캐릭터의 신속한 이동 등을 고려하여 캐릭터를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고, 게임 이용자의 몰입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 신체부위만으로 눈에 잘 띄게 하도록 하는 등의 기술적, 현실적 제약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 3) 모자 또는 헬멧이나 벨트를 착용한 캐릭터 역시 전형적으로 채택되는 캐릭터 형태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헬멧과 벨트의 형태, 캐릭터의 묘사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유사점만으로는 각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제시하였다.

II. 빌리지 맵의 경우,



<A 게임의 빌리지 맵>



<B 게임의 빌리지 맵>

- 1) A 게임과 B 게임은 노랑·파랑·빨강의 삼각지붕을 가진 집들과 4단으로 된 소나무가 하드블록을 이루고, 잔디밭, 횡단보도가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으나, 마을을 배경으로 한 것은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 2) 마을을 묘사함에 있어 잔디밭이나 횡단보도는 통상 수반되는 장면이라 할 것이며,
- 3)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구체적인 표현들을 볼 때 집들의 구체적인 배치와 방향, 창문의 형태, 굴뚝의 존재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고,
- 4) B 게임은 레고블록을 모방한 주황, 빨강의 블록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전체적인 느낌과 미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Q

‘Be The Reds!’ 의 글자도안

글자로 구성된 문구가 개성 있게 표현된 글자도안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글자체는 기본적으로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월드컵 당시 이용된 ‘Be The Reds!’ 도안은 그러한 글자체를 이용하여 제작된 도안임에도 저작권 침해 분쟁이 있었다고 들었다. 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



2002년 월드컵 응원열기 속에서 ‘Be The Reds!’가 새겨진 붉은 티셔츠는 대한민국의 상징처럼 대중에게 인기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해당 도안이 새겨진 티셔츠나 관련 상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월드컵 당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집단적으로 널리 이용되다보니, 해당 도안에 대해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중의 영역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몇 해 전, 해당 도안이 들어간 옷을 입은 모델을 찍은 사진이 영리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가 도안 저작권 침해로 문제가 되었다. 해당 사건의 핵심은, ‘Be The Reds!’ 도안이 포함된 사진 저작물을 포토 라이브러리업체에 위탁하여 배포한 행위와, 해당 사진을 양도받아 홈페이지에 무단 게시하여 중개업을 한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였다.

일반적으로 서체(글자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서체(글자체) 도안들은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저작물이 될 수 없으며, 그러한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하였다.¹⁸²⁾

반면 서예전에 출품된 ‘춘향가’의 도록에서 ‘축’자와 ‘제’자를 집자하여 영화 제목으로 이용된 영화 <축제>와의 저작권 침해 사안에서는, ‘춘향가의 서체는, 서예가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지적 문화적 정신활동의 소산으로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과 가치를 가지는 창작물’로 보았다.¹⁸³⁾

즉 저작물성에 대한 판단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정의에 따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

18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183) 서울고등법원 1997. 9. 24. 선고 97나15236 판결.

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

결국 'Be The Reds!' 도안의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대법원은,¹⁸⁴⁾

- 1) 해당 도안은 전통적인 붓글씨체를 사용하여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응원 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도안으로서 그 성격상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의 발휘에 따른 미적 표현이 드러나 있는 미술저작물의 일종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였고(해당 도안의 창작 배경으로 일부 알려진 바로는, 알파벳 첫 글자 'R'이 숫자 '12'로서, '국민 모두가 12번째 선수가 되어, 열정적으로 응원하자'라는 의미가 도안에 반영되었다고도 한다),
- 2) 이 사건 침해사진들의 성질, 내용, 전체적인 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월드컵 분위기를 형상화하고자하는 위 사진들 속에서 주된 표현력을 발휘하는 중심적인 촬영의 대상으로서, 사진의 개성과 창조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아 침해를 인정하였다.
- 3) 나아가, 해당 도안을 찍은 사진에 대한 배포 행위 및 홈페이지 무단 게시는 모두 영리적인 목적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 4) 이 사건 침해 사진들의 경우 월드컵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하여 월드컵의 응원문화를 상징하는 해당 도안을 특별한 변형 없이 촬영하여, 해당 도안의 저작물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양적으로 질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 5) 월드컵 분위기를 형상화한 사진의 수요자들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하면 결국 시장에서 해당 도안 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허락에 따른 이용료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침해를 부정했던 하급심 판례를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결국 침해 관련 분쟁의 주된 쟁점은 저작물성 여부를 비롯, 원저작물에 대한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나아가 이용목적이나 방법,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원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 공정한 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184)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77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Q

병행수입과 저작권

D사가 중국의 공식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는 캐릭터 인형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하고자 한다.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지?



병행수입이란 해외에서 저작자가 직접 내지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고 제조·판매된 상품이 정식으로 수입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정식 수입처를 통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정식제품을 구매하여 국내에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병행수입은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식제품 판매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자가 해당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배포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법 제20조 단서는 이른 바 ‘권리소진의 원칙’을 통해 배포권을 제한하고 있다. 즉,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 만들어진 복제물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구입한 이후에는 구매자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동조 단서에 따른 배포권 제한 범위를 국내로 한정할 것인지 내지는 국외까지 미치게 할 것인지에 대해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나 판례가 없어 명확히 병행수입이 저작권법상 허용되고 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우리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1호는 침해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인지 다른 국가에서 적법하게 제작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¹⁸⁵⁾ 저작권자에게 수입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¹⁸⁶⁾등을 근거로 우리나라는 배포권의 국제소진을 인정하는 견해가 다수이며, 이러한 다수설의 입장에 따르면 병행수입 자체가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병행수입은 저작권과 별개로 상표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법원¹⁸⁷⁾은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185) 최경수, 저작권법개론, 254쪽.

186) 오승중, 저작권법, 578쪽.

187)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당연히 허용될 것인 바, 병행수입업자가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표권의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Q

공개된 특허공보 내용의 제3자 이용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명세서와 도면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산업재산권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공보를 통하여 출원명세서 및 도면을 해당 사이트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개된 명세서 및 도면의 일부 이미지를 제3자가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일까?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이러한 일반원칙을 근거한다면 산업재산권인 특허나 디자인 출원시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명세서나 도면 등에도 창작한 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면 '저작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허청장은 기술발명 및 연구의 촉진과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특허공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명세서 및 도면 등의 출원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¹⁸⁸⁾ 특허공보에는 출원인에 관한 성명, 주소 등 일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명세서 및 도면, 요약서 등 출원인이 제출한 문서를 모두 게재하도록 되어 있다. 발행된 특허공보는 특허청 홈페이지 및 지식재산정보 검색사이트인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를 통하여 공개 및 열람 제공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명세서 및 도면 등이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명세서 및 도면을 작성한 자가 저작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특허법에 의해 공개된 명세서 및 도면을 제3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복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보아야 하는가이다.

저작권재산권 제한사유 중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에 해당한다면 보도·비평·교육·연구 목적으로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으며,¹⁸⁹⁾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에 해당한다면 동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¹⁹⁰⁾ 그러나 이러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특허법에 의해 공개된 명세서 및 도면이라 할지라도, 저작자의 이용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것이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188)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제221조(특허공보).

189) 저작권법 제28조.

190) 저작권법 제35조의3.

Q

공익목적으로 비석에 새긴 시(詩)

우리 고장에서 활동하다가 고인이 된 유명한 시인의 시 한 편을 비석에 새겨 관광지 입구에 전시하였다. 비영리정부기관으로서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해당 작품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시인의 상속인이 우리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이용료를 요구하고 있다. 공익목적으로 시를 비석에 새긴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A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물권에 유사한 배타적인 권리의 속성이 있다. 즉, 소유권자의 허락 없이 물건을 이용하면 영리적이건 비영리적이건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용자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¹⁹¹⁾가 아닌 한, 설사 영리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¹⁹²⁾

물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이해관계와 일반 이용자들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저작물의 자유 이용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외 조항 중 단순히 공익적인 목적 혹은 비영리적인 목적만 충족되었다고 하여 자유이용이 가능한 경우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고인이 된 시인의 삶을 기리고 외부인들에게 지역의 인재를 홍보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 해당 시인의 작품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191) 저작권법 제23조 내지 제35조의3.

192)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Q

해외 기사를 이용한 교재 제작

해외 언론 기사를 편집하여 학원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가?



우리 사회의 외국어 학습 열풍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인터넷과 매스미디어의 발전은 외국어 교육매체에도 큰 변화를 가져와서 주요 해외 언론사의 기사를 학습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언론사의 공공적 성격과 대중적 접근의 용이성 때문에 흔히들 언론사가 보도하는 내용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¹⁹³⁾하여 보호하고 있고, 대부분의 외국 저작물들은 우리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다.¹⁹⁴⁾

따라서 외국어 교육을 영업으로 하는 기관 등에서 해외 언론 기사 등을 복제·편집한 교재를 만들어 수강생들에게 배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언론사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¹⁹⁵⁾ 그 출처 또한 명시하여야 한다.¹⁹⁶⁾ 더 나아가 해당 기사 등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강의를 하게 되더라도 이는 저작권자의 공연권¹⁹⁷⁾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우리 법원은 영국의 모 시사주간지가 한국의 한 외국어 학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교재를 발행·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은 물론, 해당 제작물 일체를

193)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194)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168개국이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가입되어 있고, 협약 동맹국들은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따라 다른 동맹국 국민(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167개 베른협약 동맹국 국민(외국인)의 저작물이 우리나라에서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195) 저작권법 제46조.

196) 저작권법 제37조.

197) 저작권법 제17조.

폐기하고 해당 행위를 금지할 것을 명한 바 있다.¹⁹⁸⁾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해당 학원관계자 등은 저작권법 위반죄로 벌금형까지 선고받았다.¹⁹⁹⁾

이처럼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해외 언론 기사들을 활용하여 교재를 제작·배포·전송하거나 강의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용자들의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가합505395 판결.

영국 시사주간지 발간사인 원고가 국내 모 어학원의 원장과 직원 등을 피고로 하여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해당 주간지를 교재화하여 복제, 판매, 강의한 사실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였고 해당 저작물을 이용한 각종 제품들과 파일, 광고물 등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19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가합505395 판결.

19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약17870.

Q

국외에서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의 준거법

해외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경우에는 어느 국가의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국제적인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 준거법 결정의 기본 원칙 중 ‘보호국법주의’ 또는 ‘속지주의’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저작물의 본국이 어디이든 상관없이 그 저작권의 보호가 요구된 국가의 저작권법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침해가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미국 저작권법에 의한 구제를 요청해야 하고, 중국에서 침해가 발생했다면 중국 저작권법을 따르게 된다.

이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따른다”라는 베른협약²⁰⁰⁾의 규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베른협약은 보호국법주의 및 그것을 전제로 하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후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에 관련된 국제협약들도 모두 이러한 원칙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국제협약의 회원국 내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저작권자는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저작물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의 준거법은 그 침해 행위가 발생한 국가의 저작권법이 된다.



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2나24622 판결.

중국에서 설립된 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법인을 피고로 하여 중국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재산권에 기초하여 자신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국제사법에 우선하여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다음, 대한민국과 중국은 모두 베른협약의 가입국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중국 어문저작물은 베른협약에 따라 문학적·예

200) 베른협약 제5조 제2항.

술적 저작물에 해당하며, 베른협약에서는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수단은 오로지 보호가 요구된 국가의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호가 요구된 국가'라 함은 '그 영토 내에서의 보호가 요구되고 있는 국가', 즉 '보호국'을 의미하며, 특히 저작재산권의 침해 문제에 관련해서는 '그 영토 내에서의 침해 행위에 대하여 보호가 요구되고 있는 국가', 즉 '침해지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전제에서, 결국 이 사건에서 적용될 준거법은 보호국법이자 침해지국법인 대한민국 법률이라고 판시하였다.

○ 퍼블리시티권

- 01 광고에 이용하는 유행어 236
- 02 드라마 캐릭터를 이용한 광고 238
- 03 인물사진의 홍보목적 이용 240

Q

광고에 이용하는 유행어

광고를 만들면서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연예인의 유행어를 이용하려고 한다.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가?



유명한 개그맨의 유행어나 독특한 동작 및 특징 있는 억양이나 어투를 따라 하는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

유행어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해당 표현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 우리 법원은 단순히 단어 몇 개를 조합한 것 혹은 간략한 문장 등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저작물성을 대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독창적인 유행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는 적은 수의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져 표현의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까지만 저작권법의 보호를 부여한다면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까지 지나친 제약을 가하여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²⁰¹⁾

한편 특정인의 독특한 동작이나 행동을 모방하는 것 또는 상대모사가 저작물이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실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연을 제3자가 따라하는 것은 실연자의 실연을 복제²⁰²⁾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인접권 침해로도 볼 수 없다.

그러나 특정인의 독특한 동작이나 행동을 모방하거나 상대모사를 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정될 여지는 있으므로 이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

201) 예를 들어, '아이고 의미 없다'와 같은 일상적인 언어, '호로록'과 같은 한 단어.

202) TV 방송 목소리를 그대로 녹음하여 광고에 삽입하는 행위 등.

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말한다. 다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퍼블리시티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의 태도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9. 선고 2006가단250396 판결.

코미디프로그램 '웃찾사'의 '따라와' 코너에 출연하는 개그맨들의 얼굴을 모방한 캐릭터를 이용하고, 유행어 "도토리 따라와!", "참여만 해도 도토리 다 주는 거, 너무 친절한 거 아니에요?", "어머 그르네" 등을 이용하여 이벤트 홍보 화면을 제작한 통신회사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 소속 개그맨들이 TV프로그램인 '웃찾사'에서 '따라와' 코너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 개인의 용모, 동작, 실연 스타일 등 총체적 인성에 대한 상품적 가치인 퍼블리시티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원고의 동의 없이 연기자들의 실제 캐릭터를 이용해 '따라와' 코너를 패러디한 광고를 내보낸 것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

가수, 배우 등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甲' 등의 초상,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키워드 검색광고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었다. 광고주들은 甲 등의 성명과 상품명 등을 조합한 문구를 키워드로 이용하였다. 이에 甲 등은 퍼블리시티권 또는 성명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우리 법상 성명이나 초상, 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인정할 수 없고, 키워드 검색광고를 통해 甲 등의 성명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물권과 유사한 독점적/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연예인 등의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직업의 특성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인격적 이익의 보호 범위는 일반인에 비하여 제한된다. 그러므로 연예인 등이 자기의 성명과 초상이 권한 없이 이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이용이 방법, 태양,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연예인 등에 대한 평가, 명성, 인상을 훼손·저하시키는 경우이거나, 그 밖에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상품선전 등에 이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Q

드라마 캐릭터를 이용한 광고

TV 드라마나 만화가 인기를 끌면서 등장인물이나 원작 만화의 캐릭터를 이용한 광고들이 다양하게 제작된다. 그런데 이런 광고를 제작하는 경우 해당 드라마나 원작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까?



만화 캐릭터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인 만화작가에 대한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만화로도 많은 인기를 끌고, 드라마로도 대중에게 이슈가 된 <미생>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원화 그대로 따라 그리는 트레이싱 작업 등을 통해 지면광고에 활용한다면 이는 캐릭터를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또한 드라마에 등장하는 배우를 표현한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배우의 '퍼블리시티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개인의 성명, 초상, 용모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 내지 재산적 가치를 얻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미국과 같이 일찍이 광고 산업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 법은 퍼블리시티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최근 이에 대한 권리자들의 의식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법원도 광고에 드라마 '임꺽정'의 주인공으로 분장한 배우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그린 삽화를 이용하여 문제가 된 사건에서, 이 사건의 인물화는 배우의 실제 모습과 다르고 수염 등 세부적 묘사도 배우의 모습과 서로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드라마 주인공으로 분장한 배우의 특징적 부분들이 대부분 표현되어 있어서 드라마를 보았거나 배우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사건 인물화를 보고 드라마 속 임꺽정으로 분장한 배우의 모습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는 등²⁰³⁾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판례가 다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법원에서는 판례를 통해 적은 수의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진 표어, 슬로건, 제호나 캐릭터 이름 등을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캐릭터

203) 서울고등법원 1998. 10. 13. 선고 97나43323 판결.

의 이름 자체만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극중 캐릭터와 이름이 같을 뿐 극중에 등장한 특정 이미지를 상기시키지 않고 스스로 독창적인 캐릭터를 창작하여 이용한다면 저작권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Q

인물사진의 홍보목적 이용

매년 열리는 지역축제를 홍보하기 위하여 작년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사진을 편집하여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한다. 당시 준비기획단에서 직접 찍은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A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사진을 촬영한 사람 내지는 전체적으로 행사를 기획한 행사기획단에게 귀속될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에 대한 권리이므로 저작권과는 별개로 해당 사진에 사람들의 얼굴이나 신체 등이 찍힌 경우에는 초상권이 문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며,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²⁰⁴⁾할 수 있다.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판례²⁰⁵⁾에 비추어보면, 참가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 내지는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 등 공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들로부터 사진 및 동영상 촬영에 대한 동의와 함께 그 이용과 관련된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관련하여 지역 축제에 원고의 얼굴과 상체의 일부분이 촬영된 모습이 포함된 포스터가 문제된 사안²⁰⁶⁾에서 법원은 “해당 축제는 해마다 외국인을 포함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역축제로서 설사 이 사건 포스터로 인하여 원고의 초상권이 다소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그 초상의 내용, 게재 목적 등에 비추어 그로써 원고의 평

204)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205)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2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가단5096557 판결.

가, 명성, 인상 등이 훼손 또는 저하되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포스터를 게재하여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데 대한 어떠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기존과는 다소 배치된 판례도 존재한다.

부록

I.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244
II. 폰트 저작권 바로 알기	250
III. 상업용 음반 바로 알기	256
IV.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 안내 ('18.8.23. 시행)	266

I.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I.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저작물 관련 공모전(이하 “공모전”이라 한다)에서 저작자로서의 응모자와 이용자로서의 공모전 주최 사이의 권리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양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공모전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적용 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공모전에 출품되는 응모작에 적용되며, 공모전의 주최는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는 내용보다 응모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더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 저작물의 정의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

◆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 소설 · 시 · 논문 · 강연 · 연설 ·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 및 무용 ·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 회화 · 서예 · 조각 · 판화 · 공예 ·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건축물 ·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
- 영상저작물
- 지도 · 도표 · 설계도 · 약도 · 도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예를 들어, 납본이나 기탁 또는 등록 등)을 요구하지 아니함

III. 근거

- ①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에 있어, 지식재산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2조 제2호]

- ② 정부는 지식재산을 창출한 개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19조)

IV. 공모전에서의 권리 관계 설정

1. 저작권 귀속 관련

- ①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 즉, 저작권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저작권법 제10조]

◇ 예시

-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출품자(창작자)에게 있다.

- ②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따라서 공모전의 주최가 응모작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정되므로, 그 용어를 저작재산권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 저작인격권은 사전에 양도될 수 없으나, 공모전의 주최는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의 예외*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공모전의 주최가 저작물을 창작적으로 변형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허락받아야 한다.

* 저작권법 제11조 제2항에서의 공표 동의 추정, 동법 제12조 제2항 단서의 성명표시의 예외, 동법 제13조 제2항에서의 변경에 대한 권리

◇ 잘못된 예

-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됨
-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주최 측에 있다.

- ③ 공모전의 주최는 응모작들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으며,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없다.

※ 주최는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을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 전에 저작자가 저작물의 반환을 요구할 시 저작자에게 반환하되, 반환과 관련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에게 부담할 수 있다.

I.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 잘못된 예

- 접수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재산권은 주최 측에 귀속됨
- 수상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출품작의 저작권재산권은 주최 측에 귀속됨
- 당선작품에 대한 저작권재산권 등 지적재산권은 주최 측이 소유함

- 4 공모전의 주최가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재산권 전체나 일부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입상작에 대한 발표 후 해당 응모자와의 별도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 때, 공모전의 주최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하여 해당 저작권재산권을 양수할 수 있으나, 해당 응모자에게 거래관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만 한다.

◆ 예시

- 주최 측은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재산권을 합당한 보상을 전제로 우선적으로 양수할 수 있다. 이 때, 양도 여부, 범위 및 그 대가에 대해서는 추후 입상자(저작권자)와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 주최 측은 입상작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당한 보상을 전제로 저작권재산권을 우선적으로 양수할 수 있다. 이 때, 양도 여부, 범위 및 그 대가에 대해서는 추후 입상자(저작권자)와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 5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재산권이 공모전의 주최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예시

- 저작권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만으로는 저작물의 완전한 이용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 ▶ 건축저작물의 경우, 그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복제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재산권의 이용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요구되는 경우
 - ▶ 캐릭터의 경우, 오랜 기간 사용되고, 변화될 필요성이 있음
- 하나의 저작물에 여러 사람의 저작권이 관련되어 그 행사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영상제작물의 시나리오 공모전과 같은 경우, 권리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저작권재산권의 양도가 필요함

2. 저작물 이용 허락 관련

- 1 공모전에서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 공모전 주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응모작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 공모전 주최는 저작권자인 응모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예시

- 입상자(저작권자)는 주최 측이 동 건 저작물을 공모전의 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복제 및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 2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의 범위·방법은 공모전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기간·장소·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예시

- 건축 공모전에서 주최 측은 입상작의 설계도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건축물을 제작할 수 있다.
- 주최 측은 입상작에 대하여 입상작에 대한 발표일로부터 1년간 복제 및 전송할 수 있다.
- 주최 측은 선정된 작품을 주최 측의 홈페이지와 과월호 잡지에 게재할 수 있다.

- 3 또한, 이용허락을 결정하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그 이용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거래 관행 및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주최가 공모전에 투자한 비용과 응모자가 공모전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점들을 참조하여야 한다.

※ 공모전의 주최는 이용허락에 대한 대가로서 보상금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관행 및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금액이 이용허락 범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경우에는 이용허락의 부분이 무효화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 4 본 가이드라인에서 공모전 주최에게 부여되는 권리 범위를 초과하여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 특

I.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히,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 예시

- 주최 측은 입상작을 복제 및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주최 측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별도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 ⑤ 공모전 주최는 위와 같은 권리의 변동을 결정하여 공고하는 경우,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잘못된 예 → 정정

- 저작권은 주최에게 귀속된다. → 저작재산권
- 판권은 주최에게 있다. → 배타적 발행권 또는 출판권
(다만, 계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수정 필요)

3. 분쟁해결

- ① 공모전의 주최가 권리 변동을 결정하여 고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문언의 내용·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 ② 공모전의 주최가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한 것보다 응모자에게 더욱 불리하게 권리 귀속과 변동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
- ③ 공모전에서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나 주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주최는 응모자가 공모전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이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절차 및 창구를 제공해야 한다.

◆ 예시

- 입상작의 저작권 변동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저작자는 다음의 절차와 방법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 그 외의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저작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주최는 공모전의 응모자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저작권 준수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 예시

-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예시 >

000 000 000을 위한 '000 공모전'

- 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 응시대상 : 000 000 000
- 주최/주관 : 000000000/000000000
- 유의사항/기타 :

- 응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000은 수상작에 한하여 년 동안 할 수 있다. (* 예 : 1년 동안 복제 · 배포할 수 있다.)
- 향후, 000은 필요한 경우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재산권 중 일부를 양수하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저작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 000은 동 건 저작물을 변형하거나 이용할 경우 응모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 000은 수상작 외에 제출된 응모작에 대한 유출방지 등 주의의무를 다한다.
-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000은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을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한다. 다만, 응모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00일 이내에 반환하며, 반환을 위한 비용은 반환을 요구한 응모자가 부담한다.

II. 폰트 저작권 바로 알기

I. 배경 및 목적

- 최근 인터넷에서 불법 공유되는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가 아닌 사안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의 명목으로 패키지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 발생.
- 또한 포털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폰트 프로그램 및 한/글, MS OFFICE 프로그램 등 설치 시 번들로 제공되는 폰트 프로그램의 이용범위나 방법 등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음.
- 2013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제작·배포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에 소개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개하고 관련 분쟁의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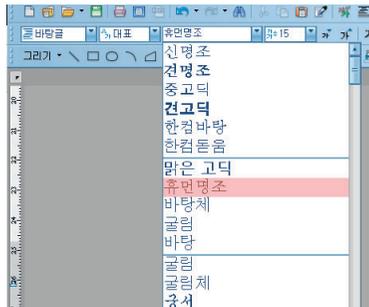
II. 폰트 도안 및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 폰트의 개요

- '폰트(font) 도안'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스타일의 크기와 모양을 갖춘 글꼴 한 벌 전체를 의미하며, 서체·글자체·글꼴 등으로 표현하기도 함.
 - '폰트 프로그램'이란 컴퓨터나 프린터 등의 기기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폰트 도안을 디지털화하여 화면에 표시·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인 데이터 파일을 의미함.
- ※ Windows OS를 사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C:\Windows\Fonts 폴더 내에 '폰트프로그램 명.ttf', '폰트프로그램명.otf' 등의 형태로 설치되어 있음.



Windows의 Fonts 폴더에
폰트 프로그램이 설치된 모습



한/글 2007에서
폰트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모습

- 우리 법원에서는 폰트 도안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¹⁾ 폰트 프로그램은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음.²⁾
- 따라서 폰트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민·형사상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저작권 침해와 이용계약 위반

구분	저작권 침해	이용계약 위반
형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자의 권리(인격권, 재산권)를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정한 이용범위 및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용계약 위반 사례 발생 가능
원인	- 인격권의 경우 무단으로 공표하거나 저작자의 성명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허락 없는 수정·변경으로 발생 - 재산권의 경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2차적저작물작성, 대여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	이용계약·라이선스 등에서 정한 이용범위 및 조건 등에 맞지 않게 이용하여 발생
책임	민·형사상 책임	민사상 책임
사례	- 폰트 프로그램을 비영리 개인에게만 다운로드 받도록 허락했는데 영리 목적의 개인이나 기업이 다운로드 받아 이용한 경우 - 프로그램을 1대의 컴퓨터에서 1명의 사람만이 이용하도록 허락했는데 여러 대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이용한 경우 - 다운로드 받기 후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진 사람이 인터넷에 전송한 경우	- 비영리 개인에게 무료로 허락한 프로그램을 개인 소유의 노트북에 설치하여 이용하다가 노트북을 회사에 가져와서 업무에 이용한 경우 - 프로그램을 1대의 컴퓨터에서 1명의 사람만이 이용하도록 허락했는데 컴퓨터를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사용한 경우 - 인쇄만 가능한 폰트 프로그램을 구매 후 e-book 제작에 이용한 경우

1) 서울고등법원 1994. 4. 6. 선고 93구25075 판결.
폰트도안은 일부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고 문자의 실용성에 부수하여 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그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의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그 자체가 ...[중략]...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 내지 미술저작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폰트 파일의 소스코드는 ...[중략]... 컴퓨터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폰트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중략]...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되어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고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

II. 폰트 저작권 바로 알기

III. 폰트 저작권 관련 주요 상담유형³⁾

1.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는 유형

[예1] 인터넷(카페, 블로그 등)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유되는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여 이용한 경우

- ▶ 폰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복제, 배포, 전송 등)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예2] 학교에서 환경미화, 가정통신문, 시험지 작성 등의 목적으로 불법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여 이용한 경우

- ▶ 학교 교육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폰트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고 교사·교직원 등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환경미화나 가정통신문 작성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폰트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이용하여야 함.
- 참고로 수업목적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폰트 프로그램의 이용이란, 폰트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또는 목적코드 등을 교사가 직접 복제하여 수업시간에 교육 자료로써 이용하는 경우 등을 말함.

2. 외주 업체가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 하여 제작한 결과물만을 이용하는 유형

[예] 외주 업체에 홍보전단, 포스터 등의 제작을 의뢰하여 완성된 결과물(이미지 등)만을 이용하였는데, 외주 업체에서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 또는 이용허락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 ▶ 일반적으로 외주 제작의 경우 위탁·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재량에 의하여 저작물을 창작하므로 결과물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수급인(외주제작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외주 제작을 의뢰한 도급인(의뢰자)은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물인 이미지(도안)만을 이용하였으므로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음.

3. 유·무료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허락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유형

[예1] 비영리 목적의 개인에게만 다운로드가 허용된 무료 폰트 프로그램을 기업 또는 영리목적의 개인이 이용한 경우

3) 4, 5유형이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상담유형이다.

- ▶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 이용만 허용한 폰트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 전에 반드시 이용 가능 범위 확인 필요함.

[예2] 인쇄 목적용 폰트 프로그램을 구매 후 전자출판, 영상 자막, CD·DVD 제작 등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 ▶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용허락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음.

4. 특정 소프트웨어에서 번들(bundle)로 제공된 폰트 프로그램을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이용하는 유형

[예] 특정 프로그램 구매 시 제공된 번들 폰트 프로그램을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이용하지 않고 타 프로그램(예 : MS OFFICE, AutoCAD 등) 등에서도 이용한 경우

- ▶ 정품으로 구매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번들 폰트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불러와 이용한 경우,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 등의 행위가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 다만, 최근에는 번들 폰트 프로그램의 이용범위를 제품사용 설명서 및 약관 등에 기재하여 해당 제품의 사용에만 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타 프로그램에서의 이용 등의 경우에는 정확한 라이선스를 확인 후 정당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임.
 - 참고로, 법원 하급심에서는 한/글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폰트 프로그램이 C:\Windows\Fonts 폴더에 자동으로 설치되고, 이 폴더에 저장된 폰트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도 자동으로 인식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폰트 프로그램에 관한 라이선스를 부여한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한/글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다른 프로그램에서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수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음.⁴⁾

5. 한/글 프로그램 구매 시 제공된 번들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 작성한 문서를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e-book 전용 파일로 변환하여 이용하는 유형

[예1]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 작성 후 해당 문서를 PDF 파일 또는 e-book 전용 파일로 변환시켜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 ▶ 한/글 프로그램에 번들로 제공된 폰트 프로그램은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 자유롭게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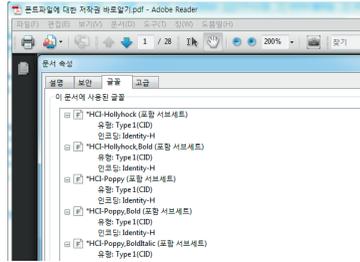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2가합535149 판결.

II. 폰트 저작권 바로 알기

용이 가능하므로, 예컨대 한/글 문서를 한컴PDF 기능을 통하여 PDF문서로 저장한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음.

[예2] 외주 업체가 작성한 PDF 파일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 ▶ PDF 문서가 이미지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폰트 프로그램이 PDF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음.
-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PDF 문서 내에 폰트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 지, 아니면 문서가 단순 이미지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음.



IV. 무료 폰트 프로그램 소개

- 아래에서 소개하는 폰트 프로그램은 기업·공공기관 등 단체 및 개인 모두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무료이나, 경우에 따라 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판매·재배포 금지 등)가 있으므로 이용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을 권장함.

폰트 프로그램명	저작권자 (개발·서비스주체)	라이선스
문화체육관광부 바탕체 한글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누구나 자유이용 가능 - 유료 판매 금지 - 이용 시 출처 표기
문화체육관광부 돌음체 한글		
문화체육관광부 궁체 흘림체		
문화체육관광부 제목 돌음체		
문화체육관광부 제목 바탕체		
문화체육관광부 쓰기 흘림체		
문화체육관광부 궁체 정자체		
문화체육관광부 쓰기 정체		
나눔고딕	NHN, 네이버문화재단	- 누구나 자유이용 가능 - 수정 및 재배포 가능 - 유료 판매 금지 - 라이선스 포함 번들 판매 가능 - 이용 시 출처 표기
나눔명조		
나눔손글씨		
나눔바른펜		
나눔바른고딕		
가는 나눔바른고딕		

나눔글꼴예코	NHN, 네이버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나 자유이용 가능 -수정 및 재배포 가능 -유료 판매 금지 -라이선스 포함 번들·판매 가능 -이용 시 출처표기
KoPub 바탕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나 자유이용 가능 -유료 판매 금지
KoPub 돋움체		
한겨레결체	한겨레신문사, 태시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나 자유이용 가능 -유료 판매 금지 -수정 금지 -이용 시 출처표기
THE정고딕 7종	한국전자출판협회, 더폰트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사업적 자유이용 가능 -상업적 인쇄출판/전자출판 가능 -유료 판매 금지
제주하라산체	제주특별자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나 자유이용 가능 -유료 판매 금지
제주고딕체		
제주명조체		
청소년체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나 자유이용 가능 -수정·변경 금지 -유료 판매 금지
서울한강체	서울특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나 자유이용 가능 -유료 판매 금지
서울남산체		
서울한강 장체		
서울남산 장체		
부산체	부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나 자유이용 가능 -유료 판매 금지
성동고딕	서울 성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나 자유이용 가능 -수정·변경 금지 -유료 판매 금지
성동명조		
배달의민족 한나체	우아한형제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나 자유이용 가능 -수정·재배포 가능
배달의민족 주아체		
배달의민족 도현체		
함초롬돋움체	한글과컴퓨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나 자유이용 가능 -유료 판매 금지 -이용 시 출처표기
함초롬바탕체		
KCC 김훈체	한국저작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나 자유이용 가능 -폰트 명칭 변경 금지
KCC 은영체		

Ⅲ. 상업용 음반 바로 알기

I. 종전 저작권법 개요 및 취지

1. 개요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실연자·음반제작자에게 금전적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나, '판매용 음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지 않아 이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제2항)

**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제75조/제82조), 판매용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제76조의2/제83조의2)

2. '판매용 음반'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공연(제29조제2항) 취지>

- 저작권법은 반대급부 없이 이루어지는 판매용 음반의 공연(제29조제2항)의 경우 일정 시설(시행령 제11조)을 제외하고는 권리자 허락 없이 공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986년 도입)
- 이는 저작권자의 보호만이 아니라 국민의 편의와 공공적인 이용 측면을 고려¹⁾하기 위한 것으로,
 - 음반의 공연으로 해당 음반이 대중에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의 간접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판매용 음반' 공연보상청구권(제76조의2 및 제83조의2) 취지>

-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가수·연주자 등), 음반제작자(음반을 기획하여 제작한 자)에게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2009년 도입)
- 이는 판매용 음반이 공연에 이용되는 경우 공연 기회 상실 및 음반 판매의 감소로 실연자·음반제작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²⁾으로,

1) 국회 문화보호위원회 회의록, 제131회 제9차(1986), 44쪽.

2)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김창수 의원 대표 발의안, 2008.11.14.)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1961년 「로마협약」 및 1996년 「WIPO 실연·음반 조약」 등 국제 조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보상청구권을 이행한 것³⁾이다.

※ 「로마협약」 및 「WIPO 실연·음반 조약」의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의 취지를 반영하여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판매용 음반'으로 규정

<판매용 음반' 방송 보상청구권(제75조 및 제82조) 취지>

-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가수·연주자 등), 음반제작자(음반을 기획하여 제작한 자)에게 '판매용 음반'의 방송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1986년 도입)
- 실연자는 자신의 음반이 방송되는 경우 실황 공연을 보려는 관중이 줄어드는 만큼 실연의 기회가 감소하고, 음반제작자도 음반이 방송에서 사용됨에 따라 판매량이 줄어들 우려가 있어
 - 실연자·음반제작자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방송사업자 사이의 이익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용 음반의 방송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II. 개정 배경 및 내용

1. 개정 배경

- 종전 저작권법에서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음반으로 정의하고, '판매용 음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무엇이 '판매용 음반'인지 논란이 있었다.
- 기술변화 등으로 음악의 유통 및 이용방식이 변화(예 : CD, 테이프 구매 → 디지털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됨에도 불구하고, '음반'을 CD 등 유형의 매체에 한정해서 해석하거나,
 - '판매용'의 범위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서로 엇갈리는 등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3)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김창수 의원 대표 발의안, 2008.11.14.) 제인이유에서 "음반의 공연권은 1961년 「로마협약」 제12조 및 1996년 「WIPO 실연 조약」 제15조제1항 등 국제 조약에서 인정된 이후, 현재 123개 국가에서 음반제작자 및 실연자의 공연권 내지 공연보상청구권이 인정" 되고 있고,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에게 공연보상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국제적인 수준에 비해 매우 열악한 우리나라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로 인한 이익이 새로운 음반제작에 재투자 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든 콘텐츠의 근간이자 한류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음악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고 밝히고 있다.

Ⅲ. 상업용 음반 바로 알기

대법원 판례

- ① 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다87474 판결.[스타벅스 판결]
저작권법 제29조제2항과 관련하여, '음반'을 음이 고정된 유형물인 CD 자체로 보면서, '판매용 음반'이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
- ②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현대백화점 판결]
저작권법 제76조의2와 관련하여, '판매용 음반'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
- ③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하이마트 판결]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과 관련하여, 스타벅스 판결을 인용하여 '판매용 음반'이란 함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

2. 개정 내용('16.3.2. 국회 통과/9.23. 시행)

- 음악 산업이 유형의 매체 구매에서 다운로드·스트리밍 서비스로 재편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 '음반'의 범위에 디지털음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으며,⁴⁾
- '판매용 음반'의 해석에 대한 시장에서의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국제조약과의 정합성을 기하기 위하여⁵⁾
 - '판매용 음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으로 개정하였다.

4)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2013.12.9.) 회의록, 35쪽에서도 같은 취지.

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23회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14.4.16.) 회의록, 40쪽, 제337회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15.11.26.) 회의록, 46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7쪽 이하 참조.

Ⅲ. 국제조약상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에 대한 해석

1. 국제조약

「로마협약」⁶⁾ 및 「WIPO 실연·음반 조약」⁷⁾ 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phonogram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이 방송 또는 공중예의 전달⁸⁾에 사용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WIPO 실연·음반조약에서 디지털음반도 음반에 포함하며, CD와 같이 유형물 형태로 배포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것도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에 포함

- 여기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phonogram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이란 음반을 일반 공중에게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시장에 제공된 것으로 해석되며,⁹⁾
- '상업적 목적(commercial purposes)'이란 음반을 판매하거나 음반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료로 배포하는 등 직·간접적인 이익이나 그 밖에 상업적인 이득(advantage)을 얻는 것으로 해석¹⁰⁾되고 있다.

2. WTO 패널 보고서(WT/DS362/R)

중국 저작권법의 TRIPS협정 제61조 위반이 문제된 분쟁에서 WTO 패널은 상업적(commercial)이라는 표현은 '매매(buying and selling)나 상품 또는 서비스 교환'으로 정의될 수 있는 용어「상업(commerce)」을 포함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상업적"이란 기본적으로 매매에 관여하거나, 관련되어 있거나, 그러한 형태를 띠는 것¹¹⁾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6) 로마협약 제12조.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 또는 그러한 음반의 복제물이 방송 또는 공중예의 전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단일의 공정한 보수가 사용자에게 의하여 실연자나 음반제작자 또는 이들 양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법으로 이 보상금의 배분조건을 정할 수 있다.

7) WPPT 제15조 [방송과 공중전달에 대한 보상청구권]

(1)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이 방송이나 공중전달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공정한 단일 보상에 대한 권리를 향유한다.

[2] - [3] 생략

(4) 이 조의 목적상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음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선이나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음반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8) '공중예의 전달'은 우리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함.

9) Silke von Lewinski, International Copyright Law and Policy, 2008, Oxford University Press, para. 6.51.

10) Jörg Reinbothe&Silke von Lewinski, The WIPO Treaties 1996, 2002, Butterworths, 383page.

11) engaged in buying and selling, or pertaining to, or bearing on, buying and selling.

Ⅲ. 상업용 음반 바로 알기

IV. 개정 저작권법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의 의미

[상업적 목적] 우리 저작권법상의 입법 취지 및 개정 취지, 국제조약 등의 해석을 종합해 보면,

- '상업적 목적'이란 공중에게 음반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하거나, 해당 음반의 판매와 관련된 간접적 이익*을 얻고자 의도하는 것을 말한다.

* 간접적인 이익이란 해당 음반의 광고·홍보 등을 통해 음반 자체의 판매를 촉진시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함

◆ 예시

- i) 음반의 홍보를 위해 무료로 CD를 배포하는 경우, 음반 자체의 판매 촉진을 통한 간접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어 상업적 목적이 있음
- ii) 기업의 홍보나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자체 제작한 곡을 매장에서 트는 경우, 음반 자체에 대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공표] 저작권법상 '공표'란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것으로, 음반을 온라인에 공개하거나 CD등의 형태로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 예시

단순 기록의 목적 또는 특정 대상만을 위해 제작하는 음반, 예를 들어 국악 연주모임, 재즈동호회 등 사교모임이나 동호회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음반의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에 해당하지 않음

[음반] 저작권법상 '음반'이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카세트테이프, CD, 디지털 저장장치 등 매체를 불문하고 고정된 음 자체를 의미한다.

- 즉, 음반의 개념이 CD 등 유형적 매체가 아니라, 디지털 음원을 포함한 음 그 자체이다.

◆ 예시

카세트테이프, CD 등으로 발매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다운로드·스트리밍 형태로 서비스되는 음악저작물 그 자체가 음반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란 '공중에게 음반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하거나, 해당 음반의 판매와 관련된 간접적인 이익을 얻는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을 의미한다.

- '상업용 음반'을 구입해서 이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거나 편집하여 다른 매체에 저장하더라도 '상업용 음반'으로서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V. 상업용 · 비상업용 음반의 예시

항목	분류	구분	비고
일반 음반	정규/싱글 앨범의 경우	상업용 음반	가수 〇〇〇 3집 앨범, 가수 △△△ 디지털 싱글 등
	영화/드라마의 OST의 경우	상업용 음반	드라마 〇〇 OST 음악, 영화 △△△ OST 음악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작한 경우	상업용 음반	슈퍼스타K, 복면가왕, 불후의 명곡, K-POP STAR 등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작된 음악
	음반 홍보를 위해 무료로 배부된 경우	상업용 음반	가수 〇〇〇의 앨범을 홍보하기 위하여 비매 홍보용으로 나눠주는 CD 등
	공연 실황을 녹음한 경우	상업용 음반	가수 〇〇〇 25주년 기념 Live 앨범, 가수 △△△ 콘서트 라이브 CD 등
주제-배경-시그널 음반	기존 상업용 음반을 주제-배경-시그널 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업용 음반	대중가수의 정규/싱글, OST 등의 음반을 활용하여 서비스하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님
	음반 제작 업체가 사전에 제작한 주제-배경-시그널 음악을 방송국 또는 영상제작자 등이 선택하여 사용하는 경우	상업용 음반	다수의 주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작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목적에 해당함
	방송사업자가 자기의 방송을 위하여 주제-배경-시그널 음악을 자체 제작 또는 주문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상업용 음반	프로그램 홍보 진행 등의 목적으로만 들어졌기 때문에 음반 자체의 상업적 목적이 없음
영업장에서 재생되는 음반	기존 상업용 음반을 이용해서 CD 등을 제작하여 제공되거나, 음악 서비스 사업자가 스트리밍 등의 방법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	상업용 음반	대중가수의 정규/싱글, OST 등의 음반을 활용하여 서비스하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님

Ⅲ. 상업용 음반 바로 알기

영업장에서 재생되는 음반	음반 제작 업체에서 사전에 제작된 음악 중에서 선택하여 매장에서 홍보 등 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업용 음반	다수의 주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작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목적에 해당함
	매장에서 재생하기 위해 음악을 새로 직접 또는 주문 제작하는 경우	비상업용 음반	회사의 홍보를 통한 상품 판촉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음반 자체의 상업적 목적이 없음
광고 음반	기존 상업용 음반을 이용해서 매체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	상업용 음반	대중가수의 정규/싱글, OST 등의 음반을 활용하여 서비스하기 때문 에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님
	음반 제작 업체가 사전에 제작한 음악 중에서 선택하여 매체 광고에 삽입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업용 음반	다수의 주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작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는 상업적 목적에 해당함
	매체 광고에 삽입할 목적으로 음악을 새로 직접 또는 주문 제작하는 경우	비상업용 음반	회사의 홍보를 통한 상품 판촉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음반 자체의 상업적 목적이 없음
기타	단순 기록 목적 또는 내부 활용 등을 위한 목적 으로 제작된 음반	비상업용 음반	국악연주모임, 재즈동호회 등 사교 모임이나 동호회에서 활용하기 위 하여 제작하는 음반 등

별첨 Q&A

Q '판매용 음반'이 '상업용 음반'으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대법원 판결(2010다87474 '스타벅스 판결')에 따르면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에 한정되지만, "상업용 음반"은 '공중에게 음반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 공하거나 해당 음반의 판매와 관련된 간접적인 이익을 얻으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을 의미하므로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시판용음반이 아니더라도 '상업용 음반'에 해당하는 경우, 편의점 · 치킨집 · 김밥집 등에서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틀 수 있습니다.

Q 편의점 · 치킨집 · 김밥집 등에서 인터넷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음악을 틀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저작권료를 내야 하나요? 매장음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어떠한가요?

A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음악, 매장음악서비스 모두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상업용 음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편의점 · 치킨집 · 김밥집 모두 공연과 관련한 저작권료(공연사용료 및 공연보상금) 지급 없이 음악을 틀 수 있습니다.

Q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CD를 트는 경우와 달리 플랜티넷 · 샵캐스트 · KT뮤직 등과 같은 매장음악을 이용할 경우는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매장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상업용 음반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공연과 관련한 별도의 저작권료(공연사용료 및 공연보상금) 지급 없이 호프집 등 소규모 매장에서 틀 수 있습니다.

Q 어떤 음원을 트는 경우 권리자 허락 없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A 일반적인 대중음악은 CD·다운로드·스트리밍 등 이용방법과 상관없이 '상업용 음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연과 관련한 저작권료(공연사용료 및 공연보상금) 지급 없이 틀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대형마트 · 백화점 · 호텔 등)는 제외됩니다.

Q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매장이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대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단란주점, 골프장, 호텔, 대형마트, 백화점 등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매장에서는 공연과 관련한 저작권료(공연사용료 및 공연보상금)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1800-5455, call@copyright.or.kr)

Q 대형마트에서 자체 제작 음반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대형마트에서 기존 음반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제작한 경우(기업로그송 등)비상업용 음반에 해당됩니다. 대형마트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연과 관련한 별도의 저작권료(공연사용료 및 공연보상금)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Q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등은 종전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저작권료를 내고 있습니다. '판매용음반'이 '상업용 음반'으로 개정되면 공연과 관련한 저작권료(공연사용료 및 공연보상금)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등은 '상업용 음반' 여부와 상관없이 공연과 관련한 저작권료(공연사용료 및 공연보상금)를 지급해야 하므로, 종전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료를 지급하던 곳은 개정된 이후에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Q 개정 저작권법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A 개정 저작권법은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음반이 다양하게 제작·유통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CD·테이프 등 유형물뿐만 아니라 mp3와 같은 디지털음원도 '음반'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용 음반'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해석으로 시장의 혼란이 발생하여, '판매용 음반'을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용 음반'으로 개정하여 권리행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판매용 음반'의 공연과 관련하여, 그동안 시장에서 발생한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상업용 음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A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저작권 관련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음반'에 대한 모든 궁금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800-5455, call@copyright.or.kr)

IV.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 안내

1. 공연권이란?

- 공연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로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 여기에는 그러한 공연물을 녹음 또는 녹화한 것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도 포함됨(저작권법 제2조 제3호)

참고		공연 저작권료의 구성	
· 공연 저작권료는 ①공연 사용료(저작권자에게 지불)와 ②공연 보상금(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지불)으로 구성되며,			
구 성	공연 사용료	공연 보상금	공연 보상금
지 급 대상	저작권자 (작사·작곡·편곡자 등)	실연자 (가수, 연주자 등)	음반제작자 (기획사, 제작사 등)
결 정 방법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되, 협의 불성립 시 문체부 장관이 고시 (공연 사용료의 50% 수준에서 결정)	좌동
· 통상 총 공연 보상금액은 공연 사용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			

2. 공연권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이유는?

- 세계무역기구-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WTO-TRIPS),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예외적 제한” 국제규범과 달리 우리는 반대급부 없는 상업용 음반재생 공연권의 원칙적 제한, 일부시설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이에, 국내 학계와 권리자단체 등은 현행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공연권 행사범위를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 유럽연합(EU) 측도 우리 공연권 제한 규정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분쟁절차 개시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국제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온바, 창작자의 권익보장과 국제조약 이행 등을 위해 공연권 행사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것임.

3. 공연 저작권료 부과대상은?

- 현행 저작권법 규정에 따르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시설에서만 권리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기존에도 단란주점, 스키장, 에어로빅장, 대형마트 등에서는 공연권료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설(업종)을 확대한 것임.
- 음악의 중요도가 높은 '커피 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을 포함하고,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3,000㎡ 이상)' 중 기존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를 추가하였음(전통시장은 제외).

(공연권 범위 확대 업종)

분류(시행령 제11조)	기존 공연 저작권료 징수 대상	공연권 확대 신규 업종
1. 식품위생법	△단란주점 △유흥주점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
2. 한국마사회법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골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학원 △전문체육시설	△체력단련장
4. 항공법, 해운법, 철도사업법	△여객용 항공기 △해상여객운송 △사업용 선박 △여객용 열차	
5. 관광진흥법	△호텔 △휴양콘도 △카지노 △유원시설	
6.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제외)

4. 추가되는 공연권 행사 대상시설(업종)은 어떻게 선정했는지?

- 주요 업종의 음악사용 실태조사 및 경제적 분석('16. 10.~'17. 2.) 결과*를 반영하여 음악이 영업과 밀접한 업종과,
 - ※ 음악사용률 : 비알코올 음료업점 97.5%, 기타 주점업 81.8%, 스포츠시설 운영업 76.7%
- 공연권 제한으로 저작권자 이익 침해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개정안을 마련하고,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음.

5. '18. 8. 23.부터 공연권이 확대되는 음료 및 주점업, 체력단련장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및 보상은 얼마인지?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18. 3. 개정)을 보면 해당 업종의 공연사용료를 알 수 있음.
- 음료 및 주점업(카페, 호프집 등의 경우 50㎡ 이상의 경우에만 면적별로 월 2,000원에서 10,000원까지 차등해서 공연사용료가 부과됨. 따라서 약 15명 미만의 소형 가게들은 여전히 징수대상에서 제외될 것임.
- 다만, 동 징수규정상 의 요율은 공연 사용료(작사·작곡가 등 저작권자에게 지불)에 해당하며 공연 보상금(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지불)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를 통해 별도로 청구될 예정이며, 통상 총 공연 보상금액은 공연 사용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됨.

※ 공연권 확대('18.8.23. 시행)에 따른 저작권료 징수예상 금액

① 음료점 및 주점업 (최저 월정액 4,000원부터 최고 20,000원)

등급	영업허가면적	총액(월)	사용료(월)	보상금(월)	비고
-	50㎡미만	면제			·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 (1등급 제외)
1	50㎡ ~ 100㎡미만	4,000	2,000	2,000	
2	100㎡ ~ 200㎡미만	7,200	3,600	3,600	
3	200㎡ ~ 300㎡미만	9,800	4,900	4,900	
4	300㎡ ~ 500㎡미만	12,400	6,200	6,200	
5	500㎡ ~ 1,000㎡미만	15,600	7,800	7,800	
6	1,000㎡이상	20,000	10,000	10,000	

② 체력단련장 (11,400원 ~ 59,600원)

등급	영업허가면적	총액(월)	사용료(월)	보상금(월)	비고
-	50㎡미만	면제			
1	50㎡~ 100㎡미만	11,400	5,700	5,700	·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 (1등급 제외)
2	100㎡~ 200㎡미만	22,000	11,000	11,000	
3	200㎡~ 300㎡미만	28,800	14,400	14,400	
4	300㎡~ 500㎡미만	37,000	18,500	18,500	
5	500㎡~ 1,000㎡미만	46,400	23,200	23,200	
6	1,000㎡이상	59,600	29,800	29,800	

③ 복합쇼핑몰 · 기타 대규모점포

- 기존 대규모점포(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에 적용하던 징수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최저 월징액(사용료) 80,000원(영업장 면적 3,000㎡ 이상 5,000㎡ 미만), 다만 전통시장은 규모와 상관없이 제외

6.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 CD 또는 디지털음원을 구매하여 그 음원을 매장에 트는 것은 소유권 등에 근거한 권리 행사로서 정당하지 않은가 (공연권료 징수가 이중부담 아닌지)?

-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로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이 있으며, 이러한 권리들은 개별적으로 행사가 가능하기에 저작권자는 복제권 또는 전송권만을 허락할 수 있음.
- 권리자는 CD 판매를 위해 복제, 배포를 허락하거나 음원서비스사업자에게 복제, 전송(또는 디지털음성송신) 권한만을 부여했을 뿐이지 매장에서 그 음원을 트는 행위(공연권, 저작권법에서는 이처럼 음원을 재생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공연으로 정의)에 대하여는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매장에서 음원을 트는 것은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임.
- 따라서, 서비스비용과 별도로 권리자에게 공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이중 징수가 아닌 지금까지 보장받지 못했던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임.

(참고 : 음악저작권의 종류)

복제권	음악을 복제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리
공연권	음악을 공연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리
공중송신권	방송, 스트리밍 등을 통해 음악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
배포·대여권	원본 혹은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및 대여할 수 있는 권리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7. 매장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것은 음악 홍보효과로 인하여 오히려 저작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닌지?

- 음원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권리(공연권)를 저작권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상으로 음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음반 판매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저작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임.

8.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보호하는 한편,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보호하는 한편, 상업용 음반에 대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두어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균형을 고려하고 있음.
- 저작권법 제29조제2항의 해석상 영업장에서 배경음악으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점포 이용객들은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 즉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것이 가능함.
- 다만, 저작권법 제29조제2항에는 이러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에 대한 예외를 두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보호하는 단서조항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열거되어있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경마장,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등의 업종에서는 상업용 음반 재생은 제한되며, 이에 따라 신탁관리단체는 징수규정을 두고 공연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음.

- 또한, '17. 8. 22.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가 개정되어 공연권이 확대됨에 따라 '18. 8. 23.부터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음악 저작권자가 공연권 행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음.

9. 자영업자에 대한 부담증가에 대한 대책은?

- 공연권 확대 시행에 따른 시장 부담 증가 등 충격 완화를 위해 50㎡(약 15평) 미만 영업장은 공연권 확대 대상에서 제외한다,
- 국내 음료·주점업의 경우 약 40%가 50㎡ 미만 영업장에 해당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예상

※ 국내 음료·주점업 면적 기준 사업체수

	총 사업체수	30㎡ 미만	50㎡ 미만	66㎡ 미만
비알코올음료점업	55,693개 (100%)	9,749개 (17.5%)	24,891개 (44.6%)	31,592개 (56.7%)
주점업	98,040개 (100%)	10,128개 (10.3%)	42,913개 (43.7%)	56,565개 (56.7%)

[출처 : 통계청 서비스산업총조사, 2014]

- 또한, 4개 음악 분야 신탁관리단체와 합의하여 제도 초기임을 고려하여 유사업종에 적용되는 징수 요율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였음.

10. 문체부가 승인한 공연사용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 지난해 공연권 범위 확대에 따른 공연사용료 책정은 ▲업종별 음악사용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 수렴, ▲한국 저작권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
-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권리자 단체와 합의*한 사항 중 하나임.
- ※ ▲소규모(50㎡미만) 영업장 징수 제외, ▲기존보다 낮은 저작권료 책정, ▲통합징수, ▲1년 유예기간 등

11. 이번 공연권 확대 시행 관련 준비사항은?

-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저작권단체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공연권료 납부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제도가 시행 초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음.
- 특히, 공연권료 납부 신규 영업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연권료 납부 의무 및 방식 등에 대한 안내 리플릿을 영업장에 단계적으로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9. 3., 1차 설명회 개최, 한국저작권위원회)
- 영업장에서 납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각 단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안내창구를 마련하였음.
※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거래스 홈페이지(18.8.23.부터 개재)

12. 클래식만 트는 경우에도 저작권료를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 보호기간이 연장된 개정 저작권법 시행일인 2013. 7. 1. 이전에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이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하므로, 일반적으로 1962년 이전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클래식 음악을 연주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는 작곡가 등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저작권과 별도로 저작권접권이 부여되므로 공연보상금 납부를 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음.

13. 비신탁 음악을 재생하면 저작권료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 비신탁 음악*의 경우 저작권료가 면제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 권리자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함.

※ 문체부가 허가한 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하지 않은 음악을 의미

- 다만, CCL(Creative Commons License)* 관리규약을 적용한 음악 등일 경우 공연사용료 및 공연보상금 징수대상이 아닐 수 있음.

※ CCL : 저작권자가 저작물 사용조건을 미리 제시해 사용자가 저작권자에게 따로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오픈 라이선스를 의미하며, 주요한 사용조건으로는 ▲저작자 표시, ▲비영리, ▲2차 변경금지, ▲동일조건 변경 허락 등이 있음.

14. 외국곡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료를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 국내 신탁관리단체에서는 해외 저작권단체와 상호관리계약 체결을 통해 외국곡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음.

15. 업장에서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의 음악이 아닌 멜론 등 음악 사이트의 음악을 사용하면 불법인 것인지?

- 멜론 등 개인용 음악서비스를 사용하는 영업장이 다수 있으나 해당 음악 사이트의 서비스 이용약관상 '서비스 내에서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을 통해 제공받은 음원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 공공장소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 매장 등에서 재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는 영업장에 영업장 분위기에 맞는 맞춤형 음악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자로 매장음악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공연사용료·보상금 징수, 사용내역 확인 등이 용이하여 사용료 징수·분배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 영업장 분위기에 맞는 맞춤형 음악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자를 의미

16. 업장에서 이용내역을 저작권단체에게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 원칙적으로 저작물 이용자는 그 이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나, 이는 계약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음. 해당 이용내역은 권리자에 대한 투명한 분배를 위하여 사용되며, 참고로 매장음악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된 음악로그 기록으로 이용내역을 대신할 수 있음.

17. 공연권료 납부 방식은?

- 권리에 대한 이용계약은 각 신탁관리단체별**로 진행되지만, 납부는 유형별 통합징수 단체를 통해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작곡·작사·편곡가 등),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작곡·작사·편곡가 등),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수, 연주자 등), 한국음반산업협회(제작사)
- 우리 부는 '17년부터「저작권법」제106조에 따라 저작권료 납부 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최대 4개*의 신탁관리단체에 각각 납부하던 저작권료(공연사용료·공연보상금)를 1개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징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18. 문체부에서 지정한 통합 징수 주체란 어느 단체인지?

- 「저작권법 시행령」제11조 상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업종은 매장음악서비스 사용 여부에 따라 2개 유형으로 구분이 됨.
- 매장음악서비스가 사용되지 않는 업종(제1유형 :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통합징수단체이며,
- 매장음악서비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업종(제2유형 : 호텔·콘도미니엄, 백화점, 대형마트, 커피전문점, 생맥전문점 등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지정한 매장음악서비스 사업자*(매장음악서비스 사용 영업장 혹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서비스 미사용 영업장)가 통합징수단체임.

※ (주)브랜드라디오, (주)삼캐스트, (주)씨에스비, (주)에이디엔노프, (주)원트리즈뮤직, (주)위프엔터
테인먼트, (주)이노크리에이션, (주)이스트비트, (주)토마토뮤직, (주)펄프스테이션, (주)플랜티넷,
(주)엠텍크루, (주)씨제이파워캐스트

19.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가 자신의 매장에서 음악 재생 시 본사가 책임을 지는지? 프랜차이즈 매장일 경우에는 누가 내야 하는지?

- 해당 업체 운영방식 등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통상 직영점일 경우는 본사에서, 가맹점일 경우는 업장별로 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즉, 원칙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해당 매장의 사업주가 내야 하지만, 계약을 통해 본사가 매장 음악 저작권을 책임지기로 한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납부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임.

20. 이번에 대규모점포 중 복합쇼핑몰 등이 공연권 대상이 확대가 되었는데 만약 임차점포에서 음악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료 지급 주체는 대규모점포인지, 아니면 임차점포인지?

- 임차점포에서 음악을 틀었을 때 그 음악이 해당 매장에만 올려 퍼질 수 있을 정도로 대규모점포 내 다른 공간과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료의 지급주체가 대규모점포 또는 임차점포로 달라질 수 있으며,
- 지급주체가 임차점포일 경우 실제 저작권료 등의 지급여부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 11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임.

21. 커피 전문점에서 베이커리를 겸하고, 생맥주 전문점에서 치킨을 판매하는 등 업종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금번 공연권 확대업종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커피전문점, 생맥주 전문점에 포함되는지?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사업체에서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동시에 여러 가지 산업 활동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경우에는 주된 산업 활동(주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에 의하여 산업을 결정하고 있음.
-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 시 실제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계청 홈페이지→통계분류 포털→한국표준산업 분류>를 통하여도 자세한 분류기준을 확인할 수 있음.

22. 공연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법률상 저작권침해로 민형사상 분쟁의 소지가 있음. 즉, 「저작권법」에서는 타인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저작권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제123조, 제125조 내지 제126조) 및 형사고소(제136조 내지 제138조, 제140조)를 통해 구제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23.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공연사용료 소급 징수 관련, 지금까지 징수규정이 없어서 내지 않았던 공연사용료에 대해 소급해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160여 개 프랜차이즈업체에 지난 5~7년간의 공연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문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는, 2016년 8월 하이마트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간 소송에서 당시 공연사용료의 징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으로 제기가 되었고, 하이마트가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틀었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5년(2009~2014년)간의 공연사용료 9억4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근거로 한 것임.

24. 공연사용료 및 보상금 관련 계약, 납부방식 등에 대한 문의처는?

신탁관리단체	사무실 번호	누리집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사용료)	02-2660-0532~4	www.komca.or.kr
(사)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사용료)	02-333-8766	www.koscap.or.kr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보상금)	02-2659-6947	www.ikmp.kr
(사)한국음반산업협회(보상금)	02-3270-5956	www.riak.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법정기관으로서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 그리고 저작권산업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저작권 전문 기관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제도에 대한 심의와 저작권 분쟁 조정, 정책 및 법제 연구, 저작권 교육·홍보 기능과 함께 저작권 등록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고, 저작권산업의 중요성 확대와 함께 우리 저작권의 해외 진출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주 본원 주소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LH공사 1/3/5 층



서울 사무소 주소 | 04323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게이트웨이타워 5/16층



해외저작권센터

- 중국** | 북경 저작권센터
- 베트남** | 하노이 저작권센터
- 필리핀** | 마닐라 저작권센터
- 태국** | 방콕 저작권센터

Q&A로 알아보는 저작권 상담사례

- 펴낸날** 2016년 12월
- 기획·집필**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김기홍 김주희 김지수 류지연 박재원 박지원 신창환 윤대원 이정아 정혜진)
- 감수자** 이철남(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펴낸곳** 한국저작권위원회
[우: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LH공사 1,3,5층)
[우:04323]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게이트웨이타워 5,16층)
- 전화** 1800-5455(대표)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opyright.or.kr>
- 디자인** 사단법인한국장애인 문인복지후원회
- 등록번호** ISBN 978-89-6120-332-6
ISBN 978-89-6120-038-7 (세트)

* 이 인쇄물(표지·본문)은 포천 오성과 한음체를 사용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